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

2019년판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

2019년판



##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이하 ‘연합’으로 총칭)은 운영 기관, 학술 기관, 정책 결정자, 원조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본 연합은 난민 발생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 상황에서 양질의 효과적인 아동 보호 개입을 위해 노력하는 인도적 지원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사명으로 삼고, 주로 아동 보호에 관한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기술적 기준과 도구를 개발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연합은 모든 인도주의 환경에서 아동이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https://alliancecpha.org>

---

본 핸드북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이 2019년에 발간한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영문판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국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한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한국어판입니다.

This is a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edition of 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by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published in 2019. This Korean edition of 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is published by Save the Children Korea.

**1차 초판** 2023년 11월 27일

**I S B N** 종이책 978-89-6724-109-4(90330)

전자책 978-89-6724-108-7(95330)

**번역** 양미래

**감수자**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인도적지원팀

권정화 월드비전 국제구호/취약지역사업팀 팀장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전화** 02-6900-4400

**팩스** 02-6900-4499

**홈페이지** [www.sc.or.kr](http://www.sc.or.kr)



# 목차

<b>감사의 글</b>	<b>11</b>
<b>『CPMS』에 사용된 아이콘</b>	<b>13</b>
<b>두문자어 및 약어</b>	<b>17</b>
<b>도입</b>	<b>19</b>
도입	21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란?	21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이 필요한 이유는?	22
각 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22
기준의 활용 주체는?	23
최소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근거는 무엇인가?	23
‘최소’기준의 의미는?	24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25
본 기준이 다른 인도적 기준과 연결되는 방식은?	25
맥락에 따른 『CPMS』 활용 방법은?	28
『CPMS』 2019년판	29
‘아동’의 의미는?	30
기준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범분야 이슈는?	31
<b>원칙</b>	<b>39</b>
원칙	41
<b>원칙 1:</b> 생존과 발달	41
<b>원칙 2:</b> 비차별과 포괄	41
<b>원칙 3:</b> 아동의 참여	42
<b>원칙 4:</b> 아동 최선의 이익	43
<b>원칙 5:</b> 안전, 존엄성, 권리 보장 및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노출 방지	44

<b>원칙 6:</b>	수요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한 인도적 지원 접근성 보장	<b>46</b>
<b>원칙 7:</b>	폭력 위협이나 실제 폭력, 강압, 고의적 착취에 따른 정신·심리적 영향으로부터 회복 지원	<b>47</b>
<b>원칙 8:</b>	권리 주장 지원(『Sphere』 핸드북)	<b>47</b>
<b>원칙 9:</b>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b>48</b>
<b>원칙 10:</b>	인도적 지원 시 아동의 회복력 강화	<b>49</b>

### 기둥 1: 양질의 아동 보호 대응을 보장하는 기준

<b>기준 1:</b>	조정	<b>55</b>
<b>기준 2:</b>	인적 자원	<b>64</b>
<b>기준 3:</b>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b>73</b>
<b>기준 4:</b>	프로그램 주기 관리	<b>81</b>
<b>기준 5:</b>	정보 관리	<b>89</b>
<b>기준 6:</b>	아동 보호 모니터링	<b>96</b>

### 기둥 2: 아동 보호 위협에 관한 기준

	기둥 2 소개: 아동 보호 위협에 관한 기준	<b>107</b>
<b>기준 7:</b>	신체적 위협과 상해	<b>109</b>
<b>기준 8:</b>	신체·정서적 학대	<b>118</b>
<b>기준 9:</b>	성 및 젠더기반폭력	<b>125</b>
<b>기준 10:</b>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b>133</b>
<b>기준 11:</b>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	<b>141</b>
<b>기준 12:</b>	아동 노동	<b>150</b>
<b>기준 13:</b>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b>156</b>

### 기둥 3: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기둥 3 소개: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b>167</b>
<b>기준 14:</b>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b>170</b>
<b>기준 15:</b>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b>178</b>
<b>기준 16:</b>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b>186</b>
<b>기준 17:</b>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b>193</b>
<b>기준 18:</b>	사례 관리	<b>200</b>
<b>기준 19:</b>	대안적 돌봄	<b>209</b>



**기둥 4: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

	기둥 4 소개: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	227
<b>기준 21:</b>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236
<b>기준 22:</b>	생계와 아동 보호	243
<b>기준 23:</b>	교육과 아동 보호	251
<b>기준 24:</b>	보건과 아동 보호	262
<b>기준 25:</b>	영양과 아동 보호	270
<b>기준 26:</b>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과 아동 보호	279
<b>기준 27:</b>	쉼터, 정착지와 아동 보호	287
<b>기준 28:</b>	캠프 관리와 아동 보호	295

**부록 1: 용어** 304

**부록 2: 관련 법률 문서** 323

**부록 3: 범분야 이슈를 위한 핵심 자료** 327



# 서문

오늘날 아동의 4명 중 1명은 분쟁이나 재난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아동들은 매일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미래에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 발달 장애, 심지어는 조기 사망과 같은 일들이 아동기에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및 폭력에 대한 노출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도주의 환경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웰빙 및 건강한 발달이 심각한 위협에 처합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인도주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시급한 우선순위는 아동을 폭력, 학대, 착취,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모든 분야의 활동 주체가 위기에 처한 여아와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취약성을 예방하고, 이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노력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신속하며, 잘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 아동과 가족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인도적 활동은 권리에 기반하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긴급 대응이 끝난 후에도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요건은 기관 간 협력의 산물인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2012년에 발표된 이래, 아동 보호 분야 전문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아동 보호 및 기타 전문가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활용되면서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인도적 기준 파트너십(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을 구성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했습니다.

본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최소기준』 제2판은 85개 기관과 82개국에서 참여한 1,900여 명의 노력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기관 간 및 분야 간 협력의 진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본 기준의 개정판은 원칙, 증거, 예방에 더 중점을 두며, 국내 실황 및 난민 발생 맥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각 분야를 더욱 전문화하고 현장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정밀함과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본 기준을 이행하고 증진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Henrietta H. Fore  
UNICEF 총재



Filippo Grandi  
UNHCR



Christine Knudsen  
Sphere 삼일 이사



# 감사의 글

---

본 연함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2019년 개정판 제작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글 전문과 기타 추가 자료는 『CPMS』 온라인 버전([https://alliancecpha.org/en/CPMS\\_home](https://alliancecpha.org/en/CPMS_ho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준 아래 기관과 개인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CPMS 실무그룹 회원 단체

BIFERD	ISLAMIC RELIEF WORLDWIDE
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NIRENGI ASSOCIATION
CHILD PROTECTION IN CRISIS LEARNING NETWORK	OFFICE OF THE SRSG FOR CHILDREN AND
CHILDFUND	ARMED CONFLICT
DANISH REFUGEE COUNCIL, DRC	PLAN INTERNATIONAL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SAVE THE CHILDREN
CHILDREN	TERRE DES HOMM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UNHC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RED CRESCENT SOCIETIES	UNICE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VI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AR CHILD HOLLAND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VISION INTERNATIONAL

---

자문 워크숍을 주최한 다음 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Save the Children Afghanistan; 아르메니아: Children's Support Center, Fund for Armenian Relief; 방글라데시/콕스바자르: Child Protection Sub-Sector; 캐나다: International Child Protection Network of Canada; Colombia: Corporación Infancia y Desarrollo; 콩고민주공화국: BIFERD/DRC; 이라크: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UNICEF, UNHCR, Mission East, Save the Children's Fund Kurdistan 지원); 케냐: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UNICEF, Save the Children 지원);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권역(Latin America & Caribbean Region, LAC Region): UNICEF LACRO; 미얀마: Child Protection Sub-Cluster; 나이지리아: Center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HAD) and Terre des hommes; 파푸아뉴기니: World Vision; 소말리아: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정보 공유 프로토콜, UNICEF, 소말리아 정부 지원); 남수단: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supported by UNICEF and Save the Children); 수단: Global Aid Hand, UNICEF; 시리아: Hurras Network/ Syria; 튀르키예: Nirengi Association; 시리아: Children of One World Association (BR DÜNYA ÇOCUK); 우간다: Child Protection Sub-Cluster.

세이버더칠드런과 테르데좁므<sup>Terre des hommes</sup>는 최소기준 준비과정의 조율과 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기관과 참여해주신 Minja Peuschel, Susan Wisniewski, 그리고 Susanna Davies와 Joanna Wedge(2019년 7~8월)께도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감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며, 격려가 되어 주는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편집:** Proteknôn Consulting Group, LLC., 주관: Hannah Thompson and Kristen Castarato.

**그래픽 디자인:** Tiery Fresneau.

**레이아웃:** River Valley Technologies.

**온라인 자문 관리:** Markus Forsberg and Kim Morral of PHAP.

**재정 지원:** 본 출판물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해외재난지원국(Office of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OFDA), 인구난민이주국(Bureau for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BPRM),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용 시 표기:**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2019년판, 2019.

본 출판물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나 제안**이 있을 경우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 CPMS 실무그룹([cpms.wg@alliancecpha.org](mailto:cpms.wg@alliancecpha.org))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PMS』에 사용된 아이콘

## 『CPMS』고유 아이콘



청소년: 9~17세의 모든 아동



사례 관리



실향: 비호신청자, 난민, 국내 실향민을 포함해 정상시의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개인



유아기: 0~8세의 모든 아동



지표



전염병 발생



아동 보호 위험 예방



세이프가딩(Safeguarding)

## INSPIRE 아이콘



법률의 시행 및 집행



규범 및 가치



안전한 환경



부모 및 돌봄제공자 지원



소득 및 경제력 강화



대응 및 지원 서비스



교육 및 생활 기술

### 다분야에 걸친 아동 보호 통합적 접근과 관련된 아이콘



모든 분야에 걸친 통합



식량안보 분야와의 통합



생계 분야와의 통합



교육 분야와의 통합



보건 분야와의 통합



영양 분야와의 통합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분야와의 통합



쉼터 및 정착지 분야와의 통합



캠프 관리 분야와의 통합



# 약어와 두문자어

---

<b>3/4/5Ws</b>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에서(Where), 언제(When), 무엇을 위해(Whom)
<b>AAP</b>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
<b>ACE</b>	Alternative care in emergencies, 긴급 상황 시 대안적 돌봄
<b>BID</b>	Best interests determination, 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
<b>CAAFAG</b>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
<b>CBCP</b>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보호
<b>CCW</b>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특정 재래식 무기
<b>CDC</b>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
<b>CEFM</b>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조혼 및 강제 결혼
<b>CFS</b>	Child-friendly spaces, 아동 친화 공간
<b>CHH</b>	Child-headed household, 아동가장 가구
<b>CHS</b>	Core Humanitarian Standards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관한 핵심 기준
<b>CM</b>	Case management, 사례 관리
<b>CMTF</b>	Case Management Task Force, 사례 관리 작업반
<b>CTFMR</b>	Country Task Force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국가 모니터링 및 보고 작업반 (중대 아동 권리 침해 관련)
<b>CP</b>	Child protection, 아동 보호
<b>CP AoR</b>	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아동 보호 책임 영역
<b>PCPM</b>	Child protection case management, 아동 보호 사례 관리
<b>CP(i)HA</b>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
<b>CPIMS</b>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아동 보호 정보 관리 시스템
<b>CVA</b>	Cash and voucher assistance, 현금 및 바우처 지원
<b>DRR</b>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위험경감
<b>ECD</b>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아기 발달
<b>ERW</b>	Explosive remnants of war, 전쟁잔류폭발물
<b>EO</b>	Explosive ordnance, 폭발물
<b>FTR</b>	Family tracing and reunification, 가족 추적 및 재결합
<b>GBV</b>	Gender-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
<b>GBVIMS</b>	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젠더기반폭력 정보 관리 시스템
<b>IASC</b>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

<b>ICRC</b>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Crescent, 국제적십자위원회
<b>IDTR</b>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tracing and reunification, 신원 확인, 문서화, 가족 추적, 재결합
<b>IDO</b>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전염병 발생
<b>IDP</b>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
<b>IED</b>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사제폭발물
<b>ILO</b>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b>IM</b>	Information Management / Manager, 정보관리/관리자
<b>INEE</b>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비상사태 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
<b>IOM</b>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b>IPV</b>	Intimate partner violence,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b>iSP</b>	Information-sharing protocol, 정보 공유 프로토콜
<b>IYCF</b>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영유아 수유·급식
<b>LGBTI</b>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b>MHPSS</b>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b>MRM</b>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무장 분쟁 상황에서의 중대 아동 권리 침해 관련)
<b>NGO</b>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b>OCHA</b>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도지원조정실
<b>PCM</b>	Programme cycle management, 프로그램 주기 관리
<b>PDNA</b>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재난 후 현지 수요 조사
<b>PFA</b>	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적 응급처치
<b>PIM</b>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보호 정보 관리
<b>PSEA</b>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b>RFL</b>	Restoring family links, 가족 찾기 활동
<b>SGBV</b>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성 및 젠더기반폭력
<b>SMART</b>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levant, time-bound,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연관성 있으며, 기한이 있음
<b>SOP</b>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표준운영절차
<b>UASC</b>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b>UN</b>	United Nations, 유엔
<b>UNHCR</b>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b>UNICEF</b>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b>WASH</b>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b>WFCL</b>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최악의 아동 노동
<b>WHO</b>	World Health Organisation, 세계보건기구

도입



# 도입

##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란?

아동 보호는 ‘아동 학대, 방임, 착취,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의미한다.

인도적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재난 발생 시와 그 이후에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

인도적 위기는 분쟁이나 민간 소요사태처럼 인재로 발생할 수도 있고,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 재해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적 위기는 아동의 삶에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인도적 위기를 겪으면서 가족과의 분리, 군대 또는 무장 단체로의 징집, 신체 또는 성적 학대, 심리사회적 고통이나 정신 장애, 경제적 착취, 부상, 심지어는 사망 등 여러 종류의 아동보호 리스크와 마주하게 되며, 이런 위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긴급 상황의 성격과 규모
- 인도적 위기에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
- 사회문화적 규범
- 기존에 존재하던 아동 보호 위험 요소
- 커뮤니티 차원의 대비
- 인도적 위기 발생 이전 혹은 발생 기간에 해당 국가가 가진 안정성과 역량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개입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아동 보호는 기존의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강화한다. 인도적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시의 적절한 개입은 아동과 가족 및 커뮤니티의 신체·정서적 건강과 존엄성, 웰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 시 진행되는 아동 보호 활동에는 현지, 국가 및 국제적 단위의 아동 보호 전문 활동 주체들이 수행하는 특정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타 분야 활동 주체들이 진행하는 아동 보호 주류화 혹은 아동보호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인도주의 환경 속 아동 대상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노력 역시 포함된다.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는 아동의 웰빙과 건강한 발달을 증진하고 생명을 구한다.

#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이 필요한 이유는?

『CPMS』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도주의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아동 보호 활동 주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원칙 수립
- 인도적 지원 주체 간의 협력 강화
-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질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제고
-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책무성 제고
-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전문 분야 규정
- 현재까지의 모범 사례와 교훈을 종합적으로 전수
- 아동 보호 관련 위험, 수요, 대응에 대한 옹호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 각 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CPMS』에 포함된 각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 **소개:** 해당 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 **‘기준’:** 인도적 지원 시 충분한 아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요약한 문장
- **핵심 활동:** 대비, 예방 및 대응의 각 단계에서 『CPMS』 기준 충족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제안한다. 인도적 위기 발생 이전에 대비 단계의 핵심 활동이 진행된 바가 없다면, 대응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비 활동 섹션에서 언급한 조치는 대응 섹션에서 반복하지 않았다. 예방 활동은 대비 및 대응 단계 전반에 걸쳐 수행될 수도 있다. 핵심 활동은 아이콘으로 강조하여 표기하였다. 모든 핵심 활동이 모든 맥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전부 이행해야 한다.
- **측정:** 기준 전체의 진척 상황(부진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가 제공된다. 특정 핵심 활동과 연관된 추가 지표는 『CPMS』 온라인 버전의 부록 4: 추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최소한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아동 보호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요인이며, 모든 인구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고려해야 한다. (부록 4: 추가 지표 및 기준 5 참고) 맥락에 따라 지리적 위치나 실황 상태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추가 세분화를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 **지침:** 해당 기준과 관련된 우선순위 문제, 윤리적 고려사항, 지식 격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와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 **참고자료:** 해당 기준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실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핵심 지침 문서와 도구. 『CPMS』 온라인 버전의 부록 5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각 기준 이행 시 필요한 추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 2에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국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 **아이콘:** 실황, 전염병 발생, 셰이프가딩 같은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상징

## 기준의 활용 주체는?

본 기준은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 특히 아동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아동, 가정,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기준 활용 주체에는 커뮤니티 그룹, 비정부기구, 정부 관계자, 정책 결정자, 국제기구, 원조기관, 인적 자원 담당자, 옹호활동이나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 기준은 사법체계 종사자에서부터 국경 및 이주 당국, 보안 인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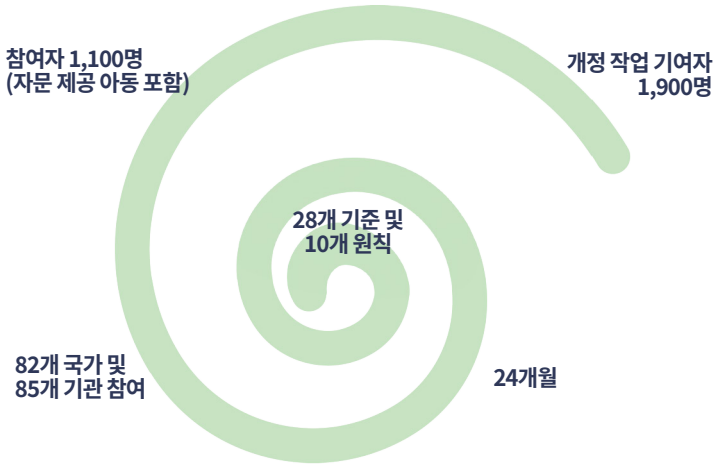
『CPMS』는 대비 단계에서부터 비상 대책 계획, 대응, 조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적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CPMS』는 (1) 인도적 지원의 질적 측면에서 기대 및 옹호해야 하는 수준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제시하고, (2)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의 이행을 촉진하여, 인도적 지원 주체와 피해인구 간 책무성을 도모한다.

## 최소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근거는 무엇인가?

『CPMS』 초판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 전반에 걸쳐 양질의 기준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2년에 출간되었다. 본 2019년 개정판은 증거 자료에 기반한 자료인 『인스파이어: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7가지 전략』(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을 포함한 최신 연구와 전문 지식, 모범 사례를 통해 기존 핸드북을 업데이트한 결과물이다. 2019년 개정판은 상당한 개선

을 이루었으나, 아동 보호 활동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여전히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기준은 다양한 맥락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경험도 앞서 설명한 자료들과 동등한 무게로 반영하였다.

본 기준은 아동 보호 실무자와 기타 인도적 지원 주체들을 통해 수차례 초안을 검토하는 등 24개월에 걸친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17개국에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자문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준 자체는 관련 주제나 특정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50여 명의 실무자가 작성했으며, 총 1,900여 명이 개정 작업 전반에 기여했다.



## ‘최소’기준의 의미는?

본 기준은 인도주의 상황에서 적합한 양질의 아동 보호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통의 합의를 제시한다. 실제로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 피해인구가 가진 접근성
- 유관 당국의 협력 수준
- 현지 상황의 불안정 수준
- 재난 발생 이전 시기의 관련 시스템 존재 여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역량과 자원이 제한적이고,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아동 보호 수요가 급

변하는 경우에는 기준 충족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법은 보편적이고 합의된 벤치마크로 적용되거나, 아동 보호를 위한 장기 목표를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본 기준을 통해 아동 보호 대응의 범위와 질에 존재하는 간극과 그러한 간극을 메우는 데 어떤 방식의 자원 투입이나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CPMS』는 자국민 및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는 국제법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국제법 체계에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이 포함된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CPMS』의 근거가 되는 주요 국제법적 인권 문서다. (부록 2: 관련 법률 문서 참고) 인도주의 환경에서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자신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받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국제법은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에게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본 기준이 다른 인도적 기준과 연결되는 방식은?

『CPMS』는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기준으로, 인도적 기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기준들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 인도적 기준 파트너십(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 HSP) 과 Sphere 기준

인도주의 헌장, 보호 원칙,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 『Sphere 핸드북』의 기반 분야(Foundation chapters)는 인도주의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활동을 이루는 기반이며, 『CPMS』 전반에 통합되어 있다. 『CPMS』에 제시된 10가지 원칙에는 『Sphere 핸드북』의 4가지 보호 원칙,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원칙, 그리고 『CPMS』만의 2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CPMS』는 Sphere 기준의 동료 기준(Companion standards)이며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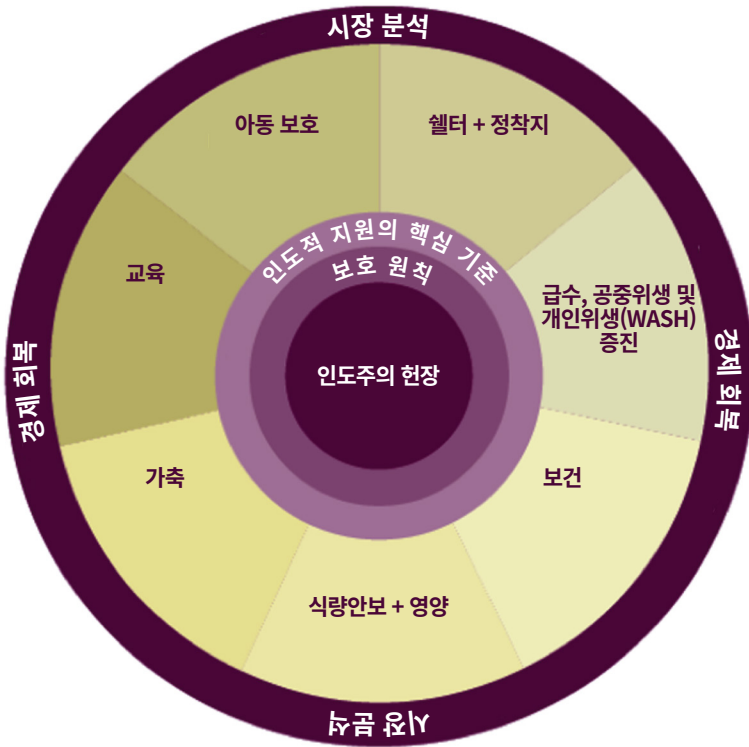
『CPMS』는 HSP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다른 인도적 기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HSP를 구성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을 포함한 『Sphere 핸드북』: Sphere
- 비상사태에서의 가축 관리 지침과 기준(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 비상사태에서의 가축 관리 지침과 기준(LEGS)
- 교육을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대비, 대응, 복구(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비상사태 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
- 경제회복 최소기준(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 MERS) : 소기업 교육 및 증진(Small Enterprise Education Promotion, SEEP) 네트워크
- 시장분석을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for Market Analysis, MISMA) : 현금 학습 파트너십(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 : 고령·장애 컨소시엄(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ge and Disability Consortium)

『CPMS』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침과 행위 주체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들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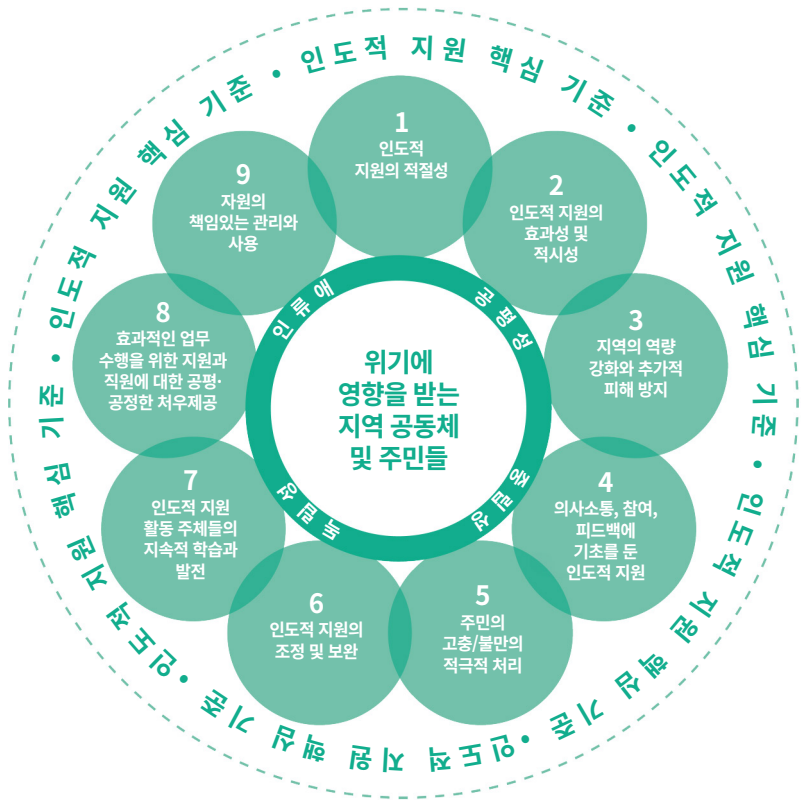
- 인도주의 환경에서의 젠더기반폭력 개입을 위한 지침: 비상사태 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중심(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Focusing on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IASC
-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가이드라인』(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IASC
-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 약속(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Commitments),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AAP)/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ESA) 담당 IASC 태스크 팀
- 보호 업무를 위한 전문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for Protection Work), ICRC
- UNHCR 비상 핸드북(UNHCR Emergency Handbook), UNHCR
-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

『CPMS』에서도 특히 기등 4: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은 광범위한 보호 주류화(Protection Mainstreaming) 활동의 일부이며 보호 주류화 활동을 수행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 업무를 위한 전문 기준과 UNHCR 비상 핸드북도 『CPMS』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시 보호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

『CHS』는 인도적 대응에 관여하는 기관과 개인이 지원의 활동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서약을 제시한다. 또한 재난에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와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도모한다. 각 서약에는 각 주체가 진행하는 인도적 지원의 분야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활동과 기관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핵심 활동과 기관의 책임 부분은 연령대와 취약성을 더 특정하여 다루지만, 기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접근할 때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CHS 검증 프레임워크(CHS Verification Framework)에는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수는 기관이 (1) 아동 친화적인 상담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보장하며 (2) 인도적 지원 인력에 의한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다. 『CHS』는 『CPMS』에서도 기동 1: 양질의 아동 보호 대응을 보장하는 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CPMS』와 같은 적절한 기술적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CHS』 핵심 활동 2.4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 맥락<sup>Context</sup>에 따른 『CPMS』 활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CPMS』는 기관 차원 혹은 기관 간 차원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인도적 개입 계획 및 비용 책정
- 아동 보호 서비스의 범위와 질에 대한 공통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대치 설정
- 아동 보호 조정 메커니즘 내부 등 다양한 활동 주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 원칙 수립
- 인도적 개입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자금 배분 관련 가이드 제공 및 평가
- 새로운 직원이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자기 학습 도구 및 참고 자료로 활용
- 대비 계획 수립
-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한 옹호활동 진행
- 의사결정권자에게 아동 보호 원칙 및 우선순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공
- 아동보호 이외의 인도주의 분야 대상 아동 보호 역량 강화

『CPMS』는 관련 맥락에 맞게 조정하거나 ‘맥락화<sup>contextualise</sup>’해야 한다. 단 ‘기준’이라는 단어 자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핵심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새로운 핵심 활동을 추가하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핵심 활동을 삭제할 수는 있다.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CPMS』에 제시된 전반적인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시적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항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CPMS』목표나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 해야 한다. 기준을 맥락화하는 과정은 아동 보호 활동 주체의 역량을 구축하고 주어진 맥락에서의 아동 보호 수요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 웹사이트*에서 *CPMS 맥락화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도록 한다.

『CPMS』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하며, 홍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양한 기관, 집단, 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 내에서 『CPMS』 소개 및 논의
- 다른 인도주의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준을 각자의 프로세스에 적용 및 도입
- 『CPMS』를 적절한 현지 언어로 번역
- 『CPMS』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진행
- 『CPMS』를 바탕으로 아동 및 커뮤니티 친화적이며, 포괄적인 자료와 메시지 제작
- 주어진 상황에서 『CPMS』에 대한 인식과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혹은 체계적인 검토 실시

## 『CPMS』 2019년판

『CPMS』 2019년판은 2012년에 출간된 초판을 개선한 개정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었다.

- 인도적 지원 시 아동을 보호하는 현지 활동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확대

- 최신 증거 자료와 모범 사례 포함
- 분야 간 협력 유형 확대
- 사회생태학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에 집중
- 난민, 실항민, 이주민이 존재하는 맥락과의 연관성 확대
- 전염병 상황과의 연관성 확대
-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예방에 대한 초점 강화
-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과 같은 핵심 범분야 이슈의 추가적인 통합
- 이전보다 개선되고, 더욱 측정 가능하며, 더욱 현실적인 우선순위 지표 마련 (온라인에서 추가 지표 제공)

본 개정판은 가능한 한 초판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했다.

## ‘아동’의 의미는?

『CPMS』에서 ‘아동’은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인구 중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젠더,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포괄을 증진하고 아동의 변화하는 역량과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아동’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된다.

- 유아기(Early childhood), 아동기(Middle childhood), 청소년기(Adolescence)에 속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
- 다양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표현,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특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
- 실항민이 된 사람
- 모든 종류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 다양한 돌봄 환경에 사는 사람

『CPMS』에서 ‘아동’이나 ‘위기 아동’이 언급되면, 그때마다 해당 인구 중에서 아동 보호 예방 또는 대응 프로그램에 적절히 포함되기 위해 특별한 개입이나 아웃리치가 필요한 아동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피해인구는 그 정의상 재난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한 다양한 수



준의 취약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아동은 추가적이고 더 특정한 위험에 직면한다.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아동 집단을 식별하는 활동은 기준 4: 프로그램 주기 관리(Programme Cycle Management, PCM)의 조사 섹션에서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아동이 처한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방법은 기준 18: 사례 관리에 제시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항상 다음과 같은 아동의 웰빙 수준을 조사해야 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 지적 및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
- 기혼이거나 자녀를 가진 아동
- 가장인 아동
- 성폭력 생존자인 아동
-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징집되거나 연루된 경험이 있는 아동
-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거나 자신을 그러하다고 밝힌 아동
-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아동

## 기준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범분야 이슈는?

본 핸드북에 제시된 각 기준에는 공통의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는 특별히 핸드북 전반에 걸쳐 의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인도적 지원 시 모든 아동 보호 개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범분야 이슈가 제시되어 있다. 부록 3: 범분야 이슈를 위한 핵심 자료에서도 아래 주제와 관련된 아동보호 중점 핵심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청소년



『CPMS』에서 ‘청소년’은 9~17세 아동을 가리킨다. 이 연령 집단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 **청소년 전기(Pre-adolescence):** 9~10세
-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 10~14세
- **청소년 중기(Middle adolescence):** 15~17세

청소년기는 두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안전한 환경은 아동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겪은 역경이 끼친 영향을 경감할 수도 있다. 맥락에 따라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에 ‘청소년 후기<sup>Late adolescence</sup>’라고 불리는 18~24세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CPMS』가 바탕을 두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기준에서는 이보다 연령대가 높은 이들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웃리치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청소년이 가진 구체적인 관점과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나 커뮤니티 차원의 집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항상 청소년에게 도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은 ‘아동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수 있는 한편, 성인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이나 보다 광범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거나 성장했다고는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청소년의 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역량과 인도적 대응에 대한 기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은 더 많은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나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등 특정 연령층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

CVA는 인도적 지원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근거 기반은 아직 정립되고 있는 중이지만 CVA는 아동 보호 위험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CVA는 가족이나 커뮤니티가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고, 착취나 학교 중퇴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을 설계할 때에는 CVA가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웰빙과 보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CVA는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생 신고나 기타 신분 증명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잠재적 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험 조사도 실시되어야 한다. 특정 아동 보호 분야에서 CVA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 아동 인신매매

아동은 가난, 제한된 생계 기회, 교육 부족, 차별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 악화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신매매범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더욱 쉽게 착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돌봄제공자를 유도하여 아동을 착취적이고 인신매매에 준하는 행위에 동원되도록 할 수도 있다. 아동은 일부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인신매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인신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처벌을 받는 대신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아동에게 가족 및 커뮤니티 차원 지원을 통해 인신매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신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보통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 인신

매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특정한 위험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적 착취, 아동 노동, 군대나 무장 단체로의 아동 징집을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준을 구성하여 다루는 대신 여러 관련 기준에 통합되어 있다.

## 장애 아동

유엔은 전 세계 아동의 10%가 일정 형태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추산한다. ‘장애 아동’에는 장기적인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적, 감각적(시각적 및 청각적) 손상<sup>impairments</sup>을 가진 아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손상은 동등한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신체적, 의사소통적,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인도주의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은 모든 아동과 동일한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주체는 장애 아동이 물자, 서비스, 공간,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위험과 장벽을 식별하고 다루어야 한다. 각종 시설과 서비스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이나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프로그램 주기를 통틀어 장애와 여타 위험 요소(여성 장애 아동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 등)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 아동은 모든 맥락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에 따른 개별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분리해서 수집하는 것은 언제나 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 아동 등록

아동 보호 및 기타 인도적 지원 분야의 활동 주체는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 협력하면서 주민 등록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 등록은 아동 보호 위험을 경감하고 구체적인 아동 보호 사례에 대한 대응과 기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 등록에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기록하여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요한 인구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출생 등록은 특히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인데, 이는 출생 등록이 아동의 신원을 문서화하고, 인도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연령을 확인하여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아기



유아기는 아동의 급속한 두뇌 발달과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유아기 경험은 두뇌의 발달 및 환경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평생에 걸쳐 학습, 회복력,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에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연령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려 사항을 항상 아동 보호 개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아기는 다음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영유아:** 0~2세
- **취학 전 연령:** 3~5세
- **취학 초기 연령:** 6~8세

관련 인도적 개입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아동과 부모 또는 정기적인 돌봄제공자 사이의 돌봄 상호작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학교를 통한 개입으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인도적 개입이 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환경 관련 고려사항

아동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들의 건강과 웰빙 및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재난, 기후 변화, 소음 공해, 대기 오염은 강제 이주, 젠더 불평등, 생계 불안,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과 아동의 가족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인도주의 활동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 보호 프로그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운송, 조달 과정, 부지 선정, 자원 선정 등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프로그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 보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환경 문제에 대한 아동, 가족,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
- 기후 위기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아동 주도 또는 아동 중심의 옹호활동 지원
- 잠재된 또는 실제 환경 환경 위기에 대한 아동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사회적 활동 제공

## 젠더

젠더는 가정과 커뮤니티 내에서 아동이 대우받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의 젠더 규범은 여아와 남아가 가진 서로 다른 경험과 잠재력 그리고 각종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젠더화된 규범’은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로 정체화하는 아동을 포함해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젠더 정체성이나 성 특성을 가진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젠더 불평등은 인도적 위기 기간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아는 조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남아는 강제 징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트랜스젠더 아동은 편견, 낙인, 폭력을 경험하거나 인도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젠더와 관련된 아동의 위험과 회복력에 대한 분석은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젠더는 가족 역할관계와 돌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 젠더 차별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민감하게 반영
- 젠더화된 권력 관계를 강화하거나 지속하지 않음
- 가능한 한 젠더 평등 지지

## 전염병 발생



콜레라나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 아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 아동은 전염에 특히 취약함
-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호 환경이 악화(예: 부모를 잃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될 수 있음
- 질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동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음

아동 보호 및 기타 인도적 지원 분야 활동 주체는 전염병 발생이 아동, 가족, 커뮤니티의 웰빙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격리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염병 발생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개입에 필요한 추가 조치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관련 기준도 본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다.

## 이동식 프로그램(Mobile Programming)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접근해야 하거나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대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동식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이동식 서비스는 난민 아동, 이주 중인 아동, 기타 이동 중인 인구에게 특히 적합할 수 있다.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환경 참고) 인도적 지원에서 이동식 아동보호 활동은 독립적인 팀을 통해 제공되거나, 다분야에 걸친 이동식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가장 취약한 아동의 식별
- 아동 등록
- 전문 분야로의 이관(Referral, 예: 보건 또는 영양)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위한 서류 상 등록 및 가족 추적
- 긴급 대안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및 심리사회적 지원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이동식 활동
- 직접적인 지원과 배분

또한 이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은 난민, 국내 실항민, 이주민에게 그들이 가진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보호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예방

예방 조치는 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대응 조치는 이미 피해를 입은 아동의 수요를 다룬다. 두 유형의 조치 모두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예방 조치는 인도적 활동의 대비 및 대응 단계 모두에서 시행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일부 조치는 예방과 대응(예: 육아 기술 지원)을 동시에 다룬다.

예방은 위험 요소를 경감 또는 제거하고, 개인과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보호 요인을 증진하며, 학대와 방임, 착취, 폭력을 감소시킨다. 예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1차 예방:** 인구 내에서 아동 보호 위험의 근본 원인 해결
- **2차 예방:** 개별 아동이 가진 위험 또는 취약성의 특정 원인 해결
- **3차 예방:** 피해의 장기적인 영향과 이미 학대나 방임, 착취,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그러한 피해를 다시 입을 가능성 축소

증거 자료에 따르면 대응보다는 예방이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예방은 인도적 대응에서 간과될 때가 있지만, 학대와 방임, 착취,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예방적 개입은 아동의 수요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른 분야와 협력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기준을 준수하면서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핵심 활동은 예방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다.



## 난민, 국내 실항민, 이주민 환경

난민, 국내 실항민, 이주민, 또는 무국적 아동은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높으며, 이는 인도적 지원 주체의 더 특별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난민, 국내 실항민, 이주민,

또는 무국적 아동은 모든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모든 아동을 그들의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법적, 정책적, 실제적 장벽도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또는 무국적 아동이 (1)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2) 이민,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외국인 혐오, 배제 등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대응 시에는 별도로 특정 법 체계와 권리, 인도적 수요가 있다. (부록 1: 용어에서 정의 참고)

난민 위기에는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1951년 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과 이에 관한 1967년 의정서를 포함한 난민법이 적용된다. 난민이 되면 출신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강제송환금지 원칙)를 포함해 여러 가지 난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보호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에게도 적용된다.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난민은 '귀환민'이라고 하며, 이들에겐 재통합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난민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할 때에는 조정, 정부 및 법 체계와의 협력, 데이터 수집, 정보 관리, 등록 절차, 난민 지위 결정, 지속 가능한 해결책 등 특정한 법 체계와 고려사항 및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UNHCR에서 제공하는 별도 지침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실향민을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보호를 보장할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무국적' 아동은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

집을 떠난 일부 아동은 집을 떠나기 이전이나 집을 떠나는 도중에 혹은 그 이후에 보호자 미동반 상태가 되거나 가족과 분리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과 이주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주체는 국경을 넘나들며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본 기준에는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 인구 또는 이러한 요소가 혼합된 인구 집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통합되어 있다. (『CPMS』에서는 '이동 중인 아동'(Children on the mov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동 중인 아동' 대상 프로그램 관련 기존 지침과 증거는 변함없이 연관성을 갖는다.)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 아동은 모두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항구적')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 실향민 아동의 경우, 자신의 실향 상태와 관련해 더 이상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실향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을 때 항구적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된다. 무국적 아동의 경우, 국적을 획득하고 국적을 이유로 차별 받는 일 없이 해당 국가 시민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항구적 해결이 완수되었다고 본다. 모든 아동은 각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

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 도시 맥락

도시 지역에는 보통 아동 보호 서비스와 기본적인 서비스가 많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정보 및 재정 자원의 부족과 소외, 차별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도시 맥락에서는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조사, 데이터 수집,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모든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예상수치 산출을 위해 창의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가구<sup>household</sup>’가 항상 단일한 가족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 내 각각의 아동을 집계해야 한다. 도시 맥락에서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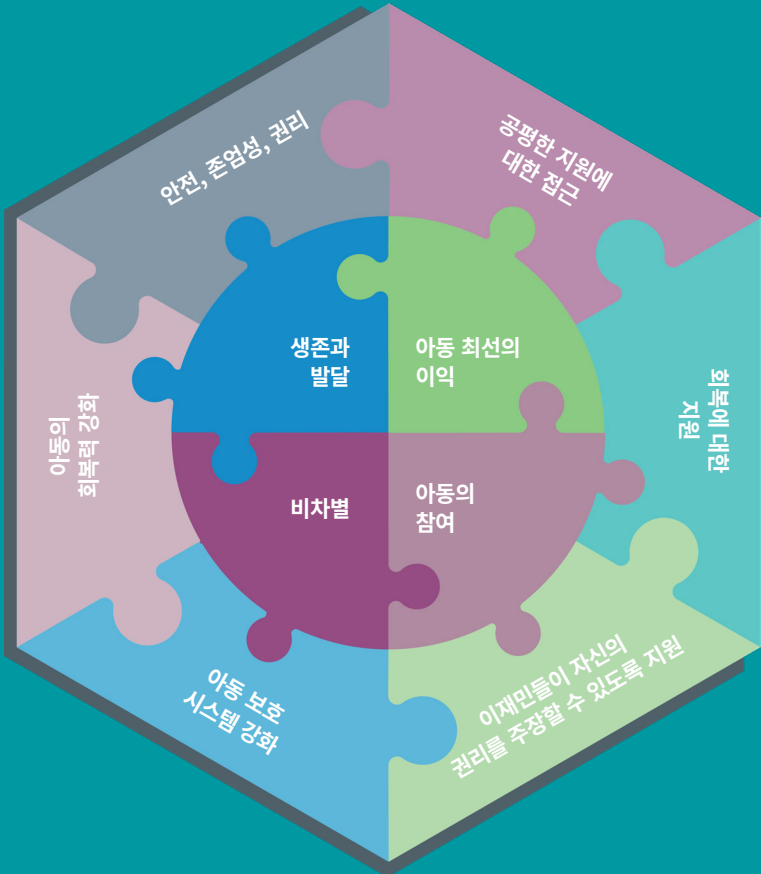
- 정보, 신원 확인, 이관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 지원
- 다양한 수와 유형의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 이행
- 현지 당국 및 다분야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



# 원칙

# 원칙

이번 장에서는 최소 기준의 적용과 달성에 있어 핵심이 되는 원칙을 제공한다. 본 원칙은 항상 기준과 함께 활용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원칙 1~4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제시된 핵심 원칙으로, 모든 인도적 활동에 적용된다. 원칙 5~8은 2018년 『Sphere』 핸드북의 보호 원칙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여 본 지면에 다시 명시한 것이다. 원칙 9~10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 원칙

## 원칙 1: 생존과 발달

예측 가능한 양육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애착은 유아기 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긴급 상황과 인도적 지원이 (1) 아동의 생존권 실현과 (2)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sup>spiritual</sup>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생존과 발달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동이 각자의 강점과 회복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원칙 2: 비차별과 포괄<sup>Inclusion</sup>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각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실제적인 불평등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모든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아동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은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여부, 국적, 이주 신분 또는 기타 이유를 바탕으로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 및 아동과 가족의 역할과 관련해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신념, 무의식적 편견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신념과 무의식적 편견을 강요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제와 차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저해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아동의 권리 실현 및 향유
- 의미 있는 참여

- 각종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

또한 차별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인도적 위기와 인도적 지원은 차별을 증가시키고, 기존에 반복되어 온 배제 상황을 악화하며, 새로운 층위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신중한 태도로 인도적 위기와 지원에 전념하면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는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고 종식하거나 적어도 경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1) 차별, 권력, 배제의 기존 양상과 새로운 양상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2) 인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그러한 차별, 권력, 배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젠더, 연령, 장애 여부, 민족, 종교, 국적, 실항 상태, 기타 다양성 요소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 보호 시스템과 여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 원칙 3: 아동의 참여

인도적 지원 주체는 긴급 상황 대비 및 대응 과정을 포함해 아동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더 큰 이득과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는 희망을 북돋으며, 아동은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아동은 각자의 능력과 독립성의 발달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힘쓸 수도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은 아동이 소속감과 정의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참여는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아동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각자의 젠더, 연령, 커뮤니케이션 수단, 성숙도, 맥락, 안전, 안보 등에 따라 참여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의 참여를 위해 항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아동의 발달 상태에 적합한 참여 지원 및 촉진
- 아동과 의사결정 권한 공유
- 아동의 참여가 가족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역할이나 권력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민감하게 고려
- 원칙 4: 아동 최선의 이익과 5: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에 따라 아동의 참여 장려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아동의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은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젠더,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의 존재와 그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주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동에게 요청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아동을 참여시킬 때에는 항상 동기와 접근법, 그리고 잠재적 위험을 살펴봐야 한다. 참여는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 및 아동의 부모/돌봄제공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받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모든 참여 과정에서 책무성을 보장하고 아동과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원칙 4: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는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자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나 결정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최선의 이익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겨지고 분석될 권리가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용어는 아동의 웰빙을 광범위하게 설명한다. 아동의 웰빙은 개별 아동이 처한 다양한 상황(예: 젠더, 연령, 성숙도, 경험)과 기타 요인(예: 부모의 유무, 아동과 가족/돌봄제공자 사이의 관계의 질, 기타 위험 또는 역량)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의 기본권:** 아동은 자신에게 유익한 최선의 이익을 파악하고 이를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 **법적 원칙:** 법 조항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해석을 따른다.
- **절차의 원칙:** 어떤 결정이 아동, 아동 집단, 또는 아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은 (1) 결정이 관련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2) 아동이 자신에게 유익한 최선의 이익을 파악하고 이를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할 권리가 확실히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모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개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조정

서 지침으로 작용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비호신청자인지, 난민인지, 국내 실향민인지, 이주민인지, 무국적자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또한 인도적 위기를 포함한 모든 맥락에 적용되며, 아동이 부모/돌봄제공자와 함께 있는지 혹은 부모/돌봄제공자가 없거나 그들과 분리된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공공 및 민간 사회 복지기관, 법원, 행정 당국, 입법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각국의 행위자들이 가능한 한 해당국의 기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최선의 이익 절차(Best Interests Procedure)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주체가 개별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의에 기반한 절차적 세이프가딩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메커니즘을 따르든,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정의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동을 참여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아동에게 정보 제공
- 아동이 자신의 우려사항을 표현하도록 장려
- 의사결정에 아동과 부모 또는 돌봄제공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

## 원칙 5: 안전, 존엄성, 권리 증진 및 추가적 위험에 대한 노출 방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위험과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주체들이 조치를 취한다.”

—『Sphere』 핸드북, 2018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려면 모든 맥락에 존재하는 아동 보호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위험 분석
- 아동 보호와 관련된 위험, 취약성, 대처 방안을 다루는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 모든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식

인도적 개입을 설계할 때에는 위치, 시기, 교통수단, 공중위생 관리 방식 등을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접근성과 포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하고 그들의 수요를 존엄하게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조악한 설계와 이행은 아동 징집, 납치, 가족과의 분리 등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Sphere』 핸드북). 프로그램 설계는 아동이 가진 전문성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 가족, 커뮤니티, 당국 등이 관련 문제들을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위기가 그들의 전략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신체적 위험이나 폭력, 학대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주체는 포괄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인도적 개입을 특정 범주의 아동이나 가족으로 제한할 경우 분리나 징집과 같은 보호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기존의 아동 보호 위험 및 여타 관련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 모든 민감한 이슈에 대해 아동에게 기밀유지 원칙 및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 보장
- 장애 아동을 포함한 개별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공유와 관련해 각 기관 사이에서 데이터 보호 기준이 준수되도록 보장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은 법적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 인식
- 장애 아동을 포함한 아동이 추가적인 위험이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적 개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는 아동 세이프가딩 프로토콜을 포함한 세이프가딩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 프로토콜은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고 다루기 위한 접근 가능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할 핵심적인 조치는 의미 있고 안전한 형태의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원칙 3 참고)

## 원칙 6:

# 수요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한 인도적 지원 접근성 보장

“인도적 지원 주체들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Sphere』 핸드북, 2018

“인도적 지원이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그들의 가족 및 돌봄제공자에게 보류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인도적 지원 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Sphere』 핸드북, 2018

비차별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에서 별도의 원칙(원칙 2)으로 규정할 정도로 중요한 원칙이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인도주의 원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가진 기본적인 수요를 고의로 박탈하는 모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위해 아동 중심적 언어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
- 각종 장벽의 식별 및 해결
-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 아동이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역이나 문화 중재자를 제공하고, 비용을 없애거나 줄이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장소를 아동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차별이나 배제 양상이 식별된 경우, 인도주의 커뮤니티는 모든 피해 인구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인도적 개입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아동을 포함해 소외된 아동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원칙 7:

# 폭력 위협이나 실제 폭력, 강압, 고의적 착취에 따른 정신·심리적 영향으로부터 회복 지원

“인도적 지원 주체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적절한 별도 서비스로 이관하는 등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Sphere』 핸드북, 2018

이 원칙에는 (1) 피해인가가 추가적인 폭력이나 강압, 박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2) 커뮤니티 내에서 안전과 존엄성,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아동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아동 보호 대응(및 활동 주체)은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동과 가족의 노력을 증진하며,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CPMS) 기준 7~13, 15, 16, 18도 참고한다.)

## 원칙 8:

# 권리 주장 지원 (『Sphere』 핸드북)

“인도적 지원 주체들이 피해 커뮤니티가 정보 및 문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Sphere』 핸드북, 2018

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재다. (기준 3, 14 참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 또는 기타 주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정보 제공
- 문서화 지원 (예: 출생 등록 홍보, 가족이 분실한 문서를 다른 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등)
- 해결책 파악 과정 지원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기타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을 대신해 아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이외의 사람들(예: 부모와 돌봄제공자)도 지원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고 더 강력한 보호 환경을 지원하는 국제법 준수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모든 아동은 각종 해결책(예: 현지, 국가, 국제 차원의 법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여러 권리를 주장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권리(예: 상속이나 배상)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고지에 입각해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권리 인식
- 참여 기술 습득
-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자신감 획득
- 다른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이해

## 원칙 9: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아동이 한 가지 보호 위험에만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가지 위험에 취약한 아동은 다른 여러 위험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인도주의 환경에서는 평상시에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절차, 법률, 제도, 역량, 또는 행동 등(아동 보호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대응 단계는 이 아동 보호 시스템의 다양한 차원과 측면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위험이나 이슈에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 위험을 완화하고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직면한 모든 문제와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 및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한다. 체계적 접근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근본 원인 파악
- 대응의 맥락화
- 현지의 주인의식 강화
- 다분야 접근법 활용
- 예방 및 대응 조치 시행
- 모든 관련 주체와의 협력

체계적 접근법은 특정 맥락에 존재하는 고유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은 개별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그 수요들 간의 연결성과 관계를 고려하여 구축된다. 모든 시스템은 맥락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역의 규범과 관습을 반영한다. 모든 맥락에는 각기 다른 아동 보호 시스템이 존재한다. 시스템은 고정적이지 않다. 인도적 지원 주체와 시스템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변화하는 인도주의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려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주의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가용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 혁신을 도입해 아동 보호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상황에 적합할 경우, 시스템의 공식/비공식적 측면을 아우르는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는 경찰, 사회 복지사, 보건 분야 종사자, 아동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성 및 재생산 담당 보건의로 활동 주체, 청소년 사법 제도, 정신건강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내법상 난민, 이주민, 무국적자, 기타 비국적자가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1) 그러한 집단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차별 또는 배제를 인지하고 다루며, (2) 위기 아동과 생존자를 사례 관리 담당자에게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상황에서는 군대나 무장 단체 또는 기타 비국가 행위자가 당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상황 내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상황상 연관성이 있고,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앞서 언급한 주체들과 함께 그들의 아동 보호 관련 역할과 법적 의무 같은 여러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할 수도 있다.

## 원칙 10: 인도적 지원 시 아동의 회복력 강화

아동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래 가정과 커뮤니티 내의 적극적인 참여자다. 인도적 위기 발생 이전에는 많은 아동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학교나 또래 집단에 기여한다. 아동은 가족 구성원이나 또래, 종교 지도자 같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인도적 위기가 가져온 추가적인 위험과 압박에 대처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아동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의 양상, 그리고 아동의 강점과 능력에 달려 있다. 취약성은 아동이 여러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와 함께 사는지,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는지,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등 보호 요인이 거의 부재할 시 발생한다. 회복은 아동이 각종 위험 요소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

적 및 환경적 보호 요인이 충분할 때 일어난다. 훌륭한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강점을 지닌 아동은 위기 환경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자신과 가족 및 또래의 웰빙을 지원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적 지원 주체의 목표 중 하나는 위험 요소를 없애거나 경감하고, 회복력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보호 요소를 강화하여 아동이 스스로의 강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여는 회복력 구축의 핵심이다.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회복력을 강화하고, 위험을 경감하며, 아동과 그들의 가족 및 커뮤니티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9.
-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Adapting to learn, learning to adapt': Overview of and Considerations for Child Protection Systems Strengthening in Emergencies*,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Protection Inclusion Standards', 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BM International, Bensheim, HelpAge International, London, Handicap International, Lyon, 2018, pp. 92-119.
- *'General Comment No.12 (2009):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 *Guidelines on Assessing and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18 Provisional Release*, UNHCR, 2018.
- *'INSPIRE: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Website]

기준



**기둥 1:**  
**양질의 아동 보호 대응을 보장하는 기준**

# 기둥 1: 양질의 아동 보호 대응을 보장하는 기준

기준 1~6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조정
- 인적 자원
-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
- 프로그램 주기 관리 (Programme Cycle Management)
- 정보 관리
- 아동 보호 모니터링

기준 1~6은 인도주의 맥락의 각 활동 분야에 대해 아동 보호 지향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 기준들이 각 주제에 대한 기존 정책과 도구를 이 기준들이 각 주제에 대한 기존 정책과 도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위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는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6가지 기준은 모든 아동 보호 대비 및 대응 노력에 있어 그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기준들은 기준 7~28과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제시된 몇몇 기준은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기준들은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을 보완하며 이와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각 기준을 이행할 때에는 본 핸드북에 실린 모든 기준과 더불어 이전 장에 설명한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원칙도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 기준 1: 조정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3: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 기준 5: 정보 관리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조정은 인도적 지원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 도표에 그러한 역할이 요약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에서 조정의 역할 요약



부실한 조정은 인도적 대응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조정은 『CHS』에 실린 6번째 서약에 해당한다. 아동 보호는 보다 광범위한 보호 조정의 영역 안에 속한다. 조정 시스템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갖지만 그 구조는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인도적 위기의 규모와 영향
- 인도적 위기의 유형(무력분쟁, 자연재해 등)
- 피해인구의 특성

- 보호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이 기준에 제시된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은 두 행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 아동 보호 조정을 이끄는 기관 또는 정부 부처
- 조정 그룹에 속한 구성원

## 기준

당국, 인도주의 기관, 시민사회단체, 피해인구가 모든 피해 아동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한다.

### 1.1. 핵심 활동

#### 대비 (주관 및 공동 주관)

- 1.1.1. 공식 및 비공식 아동 보호 시스템, 민간 및 비영리, 공공 아동 보호 시스템, 지역과 국가 및 국제 아동 보호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1) 기존의 조정 그룹과 메커니즘을 매핑<sup>mapping</sup>하고, (2) 인도적인 아동 보호 활동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을 판단한다. 특히 난민 아동과 이주민을 위한 국경 간 조정 메커니즘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1.1.2.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작업에 참여할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 1.1.3. 조정 기능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1.1.4. 아동 보호 활동 주체를 위한 (최소한 3W(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정보를 포함하되 4W(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또는 5W(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3/4/5W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 서비스 지도, 연락처 리스트, 이관 경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 1.1.5. 다분야 및 기관 간 대비 계획과 비상 대책 계획에 아동 보호를 포함시킨다.
- 1.1.6. 다음을 위해 문서 검토<sup>desk review</sup>를 실시한다.
  - 아동 보호 정보 세분화
  - 다분야 및 기관 간 조사에 아동 보호 통합
  - 맥락화된 아동 보호 조사 고안

- 1.1.7. 회원 기관과 직원들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조정과 정보 관리 책임을 이행 하기 위한 대비를 갖추도록 한다.
- 1.1.8. 기관과 당국이 아동 세이프가딩과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에 관한 정책과 절차 및 훈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2 참고)
- 1.1.9. 아동 보호 위험에 대한 아동 친화적인 메시지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동원 전략을 개발한다. (기준 3 참고)
- 1.1.10. 아동 보호 파트너의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관 간 역량 구축 전략을 개발한다.



### 준비 (조정 그룹 구성원)

- 1.1.11. 대응 모니터링 및 매핑(3/4/5W)에 기여한다.
- 1.1.12. 기관 간 아동 보호에 특화된 대비 계획과 비상 대책 계획 개발에 기여한다.
- 1.1.13. 다양한 젠더와 연령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 1.1.14. 문서검토, 아동 보호에 관한 다분야 및 합동 조사, 역량 매핑과 같은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한다.
- 1.1.15. 기관 간 역량 강화 전략에 기여한다.

### 대응 (주관 및 공동 주관)

- 1.1.16. 기존의 공식 및 비공식,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조정 구조를 활용해야 할 경우, 국가 차원의 조정관(들), 지역 차원의 조정관(들), 정보 관리 직원을 임명한다.
- 1.1.17. 모든 이해관계자를 조정에 참여시킨다.
- 1.1.18. 조정 그룹 또는 조정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아동 보호를 다루는 국가 하위 조정 그룹이나 메커니즘, 기술 실무그룹, 작업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 1.1.19. 조정 그룹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업무 방식을 조정하여 간극을 좁히고 도전과제를 다룬다.
- 1.1.20. 필요할 경우 다분야 기관 간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행하고 신속 조사를 실시한다.
- 1.1.21. 합의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아동 보호를 위해 합의된 기관 간 전략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감독한다. (기준 4, 5, 6 참고)
- 1.1.22. 관련 이해관계자와 조정 그룹 또는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전략적 계획, 정책 개발, 모금에 아동 보호를 포함시키고 아동 보호가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준 3 참고)
- 1.1.23. 『CHS』에 실린 관련 기준을 맥락화하는 과정을 조정한다.

- 1.1.24.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과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다. (원칙 참고)
- 1.1.25. (1) 다분야 기관 간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와 이관 경로가 필요한지, (2) 개발 과정을 누가 주도할지를 결정한다.
- 1.1.26. 역량 강화와 관련된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다룬다.
- 1.1.27. 아동 보호에 대한 대응 및 상황 모니터링을 활용해 옹호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1.1.28. 기타 분야, 실무그룹, 기관 간 조정 그룹 또는 메커니즘과의 조정을 통해 아동 보호 위험과 각종 우려사항을 다룬다.

### 대응 (조정 그룹 구성원)

- 1.1.29. 다분야 기관 간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립적이거나 조정되지 않은 조사와 프로그램은 지양하도록 한다.
- 1.1.30. 주류화 활동을 포함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합의된 기관 간 전략적 계획에 기여한다.
- 1.1.31. 대응 상 존재하는 중복과 간극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 1.1.32. *유엔인도적지원조정실(DCHA)의 재정 추적 서비스*를 포함한 기관 간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모든 아동 보호 기금 및 재정 격차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공유한다.
- 1.1.33.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공동 주최하거나 조정 그룹 구성원들에게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한다.
- 1.1.34. 아동 보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전략에 참여한다. 각각의 기관이 계획한 모든 훈련의 세부 정보를 공유한다.
- 1.1.35. 직원, 파트너, 기타 활동 주체들에게 (1)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CPMS』와 (2)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1.1.36. 아동 보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한다. (기준 3 참고)

## 1.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2.1.	아동 보호 조정 그룹 및 기타 관련 활동 주체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합의한다.	예 구성원들은 책임 있는 당국, 국가 및 국제 기관, 현지 시민사회 활동 주체, 피해인구, 아동 주도 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1.2.2.	L3 시스템 전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조정 전담 직원(조정관 및 정보 관리자)이 국가 차원에 배치되어 있다.	예 주관 기관은 전담(풀타임) 또는 지정/겸임(조정 및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파트타임) 조정관 정보 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도적 위기의 범위와 규모, 아동 보호 파트너의 수, 정부의 조정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 1.3. 지침

### 1.3.1. 조정 책임

정부는 자국 영토 내 피해인구에게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고, 조정하고, 실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정부는 아동 보호 조정 그룹 또는 메커니즘을 단독 또는 공동 주관한다. 정부의 리더십은 조정과 인도적 대응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정부가 조정 책임을 다할 수 없거나 책임을 다할 의향이 없는 경우,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유엔기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러한 유엔기구는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구성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조정을 촉진할 수도 있다. 정부가 조정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관 또는 공동 주관인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과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정부와 소통하고 교류할 책임이 있다.

#### 1.3.1.1. 인도적 지원 조정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맥락 및 조기 경보 상황(국내 실향민)

(기관 간 상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클러스터 접근법이 활성화된 2007년 이래로 아동 보호는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 내에 하나의 책임 영역(Area of Responsibility)으로 자리잡았다. 아동 보호 조정 그룹은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를 구성하는 활동 등 모든 클러스터 간 프로세스에 보호 클러스터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아동 보호 조정 그룹의 기능 및 책임은 클러스터 주관 기관의 기능 및 책임과 동일하다. UNICEF는 아동 보호 조정을 위해 지정된 글로벌 주관 기관으로서, 국가 차원(National level)에서 기존의 인도적 조정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새로운 조정 그룹을 결성하고 인력을 배치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동 리더십은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Sub-national level) 모두에서 강력히 권장된다.

### 1.3.1.2. 비호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귀환 난민(UNHCR의 ‘우려 대상’)이 있는 상황

UNHCR은 정부가 난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UNHCR의 임무는 유엔 총회의 1949년 결의 319 A (IV)와 1950년 결의 428 (V)를 통해 수립되었으며 그 후 무국적자(1974, 1976), 비호신청자(1981), 귀환 난민(1985)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UNHCR은 이러한 인구를 ‘우려 대상’으로 칭한다. UNHCR은 우려 대상에 대해 양도 불가능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UNHCR은 난민 보호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 정부<sup>Host government</sup>와 함께 주관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 보호에 관한 주제별 하위그룹을 설립하는 것은 맥락별 조정 수요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 1.3.1.3. 복합적인 상황 (피해인구에 난민과 국내 실항민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난민과 국내 실항민이 같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경우, 난민 고등판무관<sup>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sup>과 긴급구조조정관은 섹터 접근법을 활용할지, 클러스터 접근법을 활용할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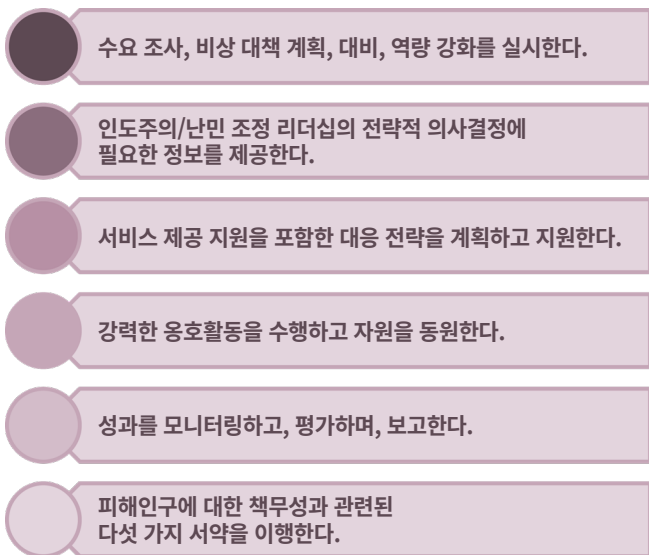
### 1.3.1.4. 감염병 발생에 대한 인도적 대응

감염병 발생에 대한 인도적 대응에서는 클러스터 접근법과 난민 조정 모델 모두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조정 집단 또는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보호 대응 활동을 통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 1.3.2. 핵심 기능

조정 핵심 기능은 아래 도표에 요약되어 있다.

#### 조정의 핵심 기능 요약



### 1.3.3. 조정 그룹 인력 배치

대규모 긴급 상황 시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조정과 정보 관리에 필요한 필수 자원에는 최소한 전담 조정관, 정보 관리 담당자, 그리고 훈련, 장비, 출장, 통역, 회의를 위한 예산 할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차원에서의 조정에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 1.3.4. 최후의 수단 제공자

‘최후의 수단 제공자(Provider of Last Resorts)’는 아동 보호 대응에 존재하는 모든 간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수용 정부를 지원하는 UNHCR은 난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 제공자이며, 난민 비상 대책 계획 및 대응에 필요한 기간 간 플랫폼을 제공한다. UNICEF는 인도적 지원 조정관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의 최후의 수단 제공자다.

### 1.3.5. 의사결정

주관 기관은 조정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투명한 기관 간 의사결정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문서화된 과업 지시서를 바탕으로 핵심 조정 그룹을 구성하면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1.3.6. 민감한 이슈

일부 이슈-특히 정치적이거나, 민감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는 양방향 대화나 소규모 집단을 통해 다루어야 할 수도 있다. 조정 그룹 회의에서 개별 사례나 아동 또는 그들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 1.3.7. 현지 활동 주체<sup>Local actors</sup>의 역할

가능하면 현지 활동 주체는 조정 그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자문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고려하는 등 현지 활동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현지 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항상 *파트너십 원칙*을 따르면 록 한다.

### 1.3.8. 성과 모니터링

조정 그룹은 『CPMS』(기준 4, 5 참고) 및 전략적 계획에 따라 (1) 대응에 대한 조정을 조사 및 개선하고 (2) 대응의 범위와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Coordination Handbook*, CP AoR, 2016.
- *IASC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5.
- *UNICEF Cluster Coordination Guidance for Country Offices*, UNICEF, 2015.
- ‘*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Website]
- *Sharing leadership: NGO co-leadership guidance and tools*, CP AoR, 2016.
- ‘*UNHCR Refugee Coordination Model*’, UNHCR, Geneva.



- *UNHCR Coordination Toolkit*, UNHCR.
- *'Joint UNHCR-OCHA Note on Mixed Situations Coordination in Practice'*, UNHCR-OCHA, 2014.

## 기준 2: 인적 자원

아래 내용은 **원칙** 및 **기준 1: 조정**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1)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보장하고 (2)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 모든 아동이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과 관계자(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기반 노동자, 하청 업체, 컨설턴트, 파트너, 소속 기관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 포함)는 세이프가딩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기준

아동 보호 서비스가 해당 업무 분야에서의 역량이 입증된 직원과 관계자를 통해 제공되며, 인도적 지원 주체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업무 방식 및 조치를 촉진하는 인적 자원 절차와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동 보호 자원을 동원하고 세이프가딩 조치를 이행하는 인적 자원 실무자 및 관리자를 위한 최소기준이다. 이는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필요를 설명하는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의 8번째 서약을 뒷받침한다. 이 기준이 다른 세이프가딩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 2.1. 핵심 활동

### 대비



2.1.1. 모든 직원과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세이프가딩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한다.



2.1.2. 모든 아동, 직원, 관계자, 커뮤니티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세이프가딩에 대한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 2.1.3. 직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성적 착취, 괴롭힘, 학대를 정의하고 침해를 저지를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설명하는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 및 절차에 그들이 동의 서명을 하도록 한다.
- 2.1.4. 직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이 다음과 같은 기관의 원칙에 동의 서명을 하도록 한다.
- 사명
  - 가치
  - 행동 강령
  - 징계, 고충,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
- 2.1.5.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직원을 신속하게 채용 및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발 인력 구조의 약화를 방지한다.
- 2.1.6.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대기 인력 목록, 그들의 핵심 역량, 숙련된 국가 정보가 포함된 신속 배치 메커니즘을 만든다. 전염병 발생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역량 분야에 포함시킨다.
- 2.1.7. 전염병 발생 시 대비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훈련을 진행한다.



## 대응

## 계획

- 2.1.8. 아동을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정 역량을 갖춘 인력의 수를 판단한다. 이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도록 한다.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 보호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HA) 역량 프레임워크* 참고)
- 2.1.9. 인력 전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자격을 갖춘 고위 직원을 항시 배치하여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채용 및 오리엔테이션

- 2.1.10. 인도적 대응에 있어서 아동 보호 직원의 (안전한) 채용을 우선시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 2.1.11.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현지 지식과 자원, 역량 및 기술에 기반한 직원과 관계자 조사 및 선발 방법을 구상한다. 예를 들어 역할을 고지할 때 그들의 문해력, 언어, 인터넷 연결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다.
- 2.1.12. 커뮤니티의 핵심 구성원이 유관 인력 채용 및 선발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예를 들어, 채용 중인 직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거나 면접 패널로 참여하게 하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1.13. 신규 직원 및 관계자에게 기관, 아동 보호, 그리고 이와 관련 역할과 책임을 소개한다.

### 다양성 및 포괄성



- 2.1.14. 해당하는 경우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자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2.1.15. 모든 일터와 일자리가 접근 가능하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우며, 포괄적일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1.16. 장애인을 포함하여 적절한 언어, 젠더, 연령, 문화적 역량을 갖춘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그들이 피해인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 상황상 적절하다면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문화 중재자를 채용하여 그들이 다양한 인구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2.1.17. 직원, 관계자,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여 기관의 다양성 및 포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와 절차를 개발한다.

### 학습 및 개발

- 2.1.18. *CPHA 역량 프레임워크*와 아동 보호 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역량 조사를 활용하여 역량 강화 전략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2.1.19. 의미 있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아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직원 및 관계자의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직원 피드백

- 2.1.20. 모든 직원과 관계자에게 그들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2.1.21. 모든 아동 보호 직원 및 관계자와 퇴사 면담을 진행하여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한다.

### 웰빙

- 2.1.22. 직원과 관계자에게 휴식, 회복,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제공하여 그들의 웰빙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 2.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2.1. 채용 시점에 (개별 직무에 명시된) 개별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i>CPHA 역량 프레임워크</i> 에 따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아동 보호 직원의 비율	90%	역량 입증 기간은 국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예: 분기별 성과 평가, 연간 평가)
2.2.2. 보고된 아동 안전 우려사항 중 기존 프로토콜에 따라 결과를 고지 받은 사건의 비율	100%	기간을 추가한다(예: '일주일 이내'에 처리).

## 2.3. 지침

### 2.3.1. 아동 세이프가딩 또는 보호 정책



모든 기관은 '아동 세이프가딩'이나 '아동 보호' 정책, 절차, 그리고 직원이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막는 적절한 이행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에는 직원이나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기관의 서약이 설명되어 있다. 모든 효과적인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승인함에 있어서 기관과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대표자의 참여 보장
- 아동을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인된 원칙 수립
- 직원과 관계자가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을 위반할 때 필요한 조치 파악
-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젠더와 연령 및 장애에도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 포함
- 정책과 절차를 현지 언어로, 아동 친화적인 버전으로 제공

현지와 국가의 아동 보호 조정 그룹 및 메커니즘과 세이프가딩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들은 이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는 세이프가딩에 관한 정보와 지침

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아동 세이프가딩은 인도적 지원 인력과 관계자가 저지르는 모든 괴롭힘과 착취 및 학대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일부다. 아동 세이프가딩은 반드시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 2.3.2. 계획 및 대비

대규모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대비 계획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공식 및 비공식 현지, 국가, 국제 기구와의 파트너십, 임시 직원 배치, 교류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직접 고용 및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기타 협력
- 직원과 관계자를 위한 웰빙 및 스트레스 관리 지원
- 모든 적절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현지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인적 자원의 매핑
- 국내 법률과 정책을 반영하고, 직원 채용을 통해 정부, 커뮤니티 기반 기관, 지역 또는 국가 파트너의 약화를 방지하는 급여 구조
- (1)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자의 포괄을 지원하고 (2) 국내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는 고용 정책 및 절차
- 아동 보호, 인도주의 원칙, 직무 역할을 다루는 기관별 훈련 자료
- 인도적 대응 단계가 위기 이후의 복구 및 개발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인적 자원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

### 2.3.3. 안전한 채용

안전한 채용 관행은 지원자가 아동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고려할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평판 조회
- 범죄 기록/경찰 조회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나 허용 불가능한 행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 항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기 선언<sup>self-declaration</sup>
- 아동 세이프가딩, 행동 강령, 유관 정책과 관련된 지원자의 행동과 태도, 경험, 견해를 판단하기 위한 개인 면담

### 2.3.4. 학습 및 개발

아동 보호 직원과 관계자는 *CPHA 역량 프레임워크*에 따라 자신의 경험, 기술, 행동을 강화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의 역량과 수요에 대한 조사는 적절한 역량 구축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온라인 및 대면 훈련
- 재교육 워크숍
- 감독 및 지도

모든 직원과 관계자는 (1) 아동 세이프가딩 및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2)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 (3)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4) 위험 조사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리감독 직원에게는 관리감독에 필요한 관리 역량 및 기술적 역량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과 멘토링이 필요하다.

직원과 관계자가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최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아동 보호와 관련해 공유된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 간 훈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3.5. 비차별과 포괄

인도주의 원칙, 특히 비차별 원칙에 대한 직원의 인식은 채용 초기 과정에서부터 제고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 전반에 걸쳐 상기되어야 한다. 훈련은 직원과 관계자가 피해인구와 상호 작용할 때 자신의 편견 및 사회문화적 규범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2.3.6. 피해인구를 직원 및 관계자로 채용



피해인구(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포함) 출신의 직원은 무국적자일 수도, 다른 국가의 국민일 수도, 특정 노동법이나 요건의 적용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국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피해인구 출신인 직원이 근로 허가를 받고, 법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며,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관이나 국가 또는 법을 통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보수 체계를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의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인도주의 기관은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자가 공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며 채용과 보상 면에서 동등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옹호활동을 벌여야 한다.

### 2.3.7. 젠더

채용 면담 시에는 젠더 평등에 대한 지원자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용과 관련된 훈련에서는 일상 업무에서 젠더 평등을 고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동은 자신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젠더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인도주의 기관은 젠더 균형을 갖춘 팀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젠더 균형을 갖춘 팀은 성적 폭력과 괴롭힘, 학대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면 젠더 균형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채용 공고에 “자격을 갖춘 여성의 지원을 권장합니다.”와 같은 문구 포함
- 지원자 범주를 넓힐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경력과 학력 중 한 가지만 명시
- 면접관에 여성과 남성 모두 포함
- 지원자에게 점수를 매길 때 소수집단이나 소수집단 출신의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다양성을 증진. 가산점은 젠더, 인종, 국적, 장애, 기타 적절한 요인을 바탕으로 부과 가능
- 각 젠더에 특화된 화장실, 수면실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사무실과 편의시설 제공
- 모든 직원 배치 데이터를 젠더에 따라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지원

### 2.3.8. 장애

채용 공고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지원을 권장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시킨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채용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예: 면담 시 추가 시간 제공, 보조기구나 통역사 활용 등)도 실시한다. 직원들이 장애를 민감하게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와 인식을 평가해야 한다.

가능한 한 장애인을 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 팀에 포함시켜 커뮤니티 내 장애인이 인도적 개입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 및 훈련에 장애 아동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전문 교육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교육은 피해인구에 속한 장애인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 2.3.9.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

인도주의 기관은 각각의 현장에서 간단하고, 접근성이 보장되고, 아동 친화적이며, 익명이 보장되는 프로그램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인구는 (1)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2)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신고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대응을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기관에 관한 피드백은 기밀유지 원칙과 알 권리의 원칙에 따라, 팀 회의나 성과 검토 시 직원 및 관계자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 2.3.10. 직원의 웰빙

아동 보호 직원과 관계자는 압박감이 심하고 까다로운 안보 상황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아동과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인해 '2차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직원의 정신적 및 심리사회적 건강을 지원하려면 감독관들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 휴식과 회복 제공
-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해결

직원과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대일 면담이나 팀 회의에 참여해 자신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인도주의 기관이 직원 지원 서비스를 공유할 수도 있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ompetency Framework: Testing version (2019)*,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9.
- *The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HS Alliance, Group URD, and the Sphere Project, 2014.
- *'CHS Alliance Resources on People Management and Staff Learning'*, CHS Alliance. [Website]
- *'Keeping Children Safe Resource Library'*, Keeping Children Safe. [Website]
- *Child Protection Case Management Supervision and Coaching Training*,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8.
- *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BM International, Bensheim, HelpAge International, London, Handicap International, Lyon, 2018.
- *'IASC Six Core Principles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ter-

Agency Standing Committee, 2002.

- Davey, Corinne and Lucy Heaven Taylor, *PSEA Implementation Quick Reference Handbook*, CHS Alliance, 2017.
- ‘Secretary-General’s Bulletin: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ST/SGB/2003/13’,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13.
- ‘Task Force’,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Our Own Staff, PSEA. [Website]

## 기준 3: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아래 내용은 원칙, 기준 1: 조정, 기준 6: 아동 보호 모니터링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 포함-은 아동의 자기 표현과 보호 및 권한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인도주의 맥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은 모든 영역의 의무 이행자와 권리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메시지가 아동의 견해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를 지원할 수 있으려면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을 담당하는 인도적 지원 주체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아동 보호, 그리고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우선시
- 기밀유지, 데이터 보호, 이미지 등과 관련된 지침 준수
- 차별, 괴롭힘, 혐오 발언, 오정보 등의 예방 및 해결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동을 착취하고,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비하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기준은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시 고려해야 할 아동 보호 이슈를 개괄한다. 또한 이 기준은 정확하고 윤리적이며 존중에 기반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 4번째 서약과 관련되어 있다.

### 기준

아동의 존엄성,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의 안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한 옹호활동이 전개되고 커뮤니케이션된다.

## 3.1. 핵심 활동

### 대비

- 3.1.1. 신규 및 후임으로 들어오는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직원에게 맥락별 아동 보호 문제, 의무 이행자, 아동 보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1.2. 모든 메시지가 아동 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다분야, 다기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고, 업데이트하며, 조정한다.
- 3.1.3. 아동의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관행을 개발한다.
- 3.1.4. 아동과 교류하는 모든 직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 아동 보호 원칙
  - 이관 경로
  - 세이프가딩 정책 및 절차
  - 행동 강령 (원칙 및 기준 2 참고)
- 3.1.5. 아동과 교류하는 모든 직원과 관계자가 아동 보호 전담 직원의 지침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3.1.6.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현지 활동 주체의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관여하고, 그러한 역량을 구축한다.
- 3.1.7. 커뮤니케이션 또는 옹호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위험 조사를 실시해 아동, 가족, 커뮤니티, 기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경감한다.
- 3.1.8. 아동 보호를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 모든 직원과 관계자를 훈련시킨다.
- 3.1.9. 모든 아동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한다.
- 3.1.10. 현지에서 널리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해 아동 보호 위험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맥락화된 메시지를 배포한다.
- 3.1.11. 아동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입히거나 공포, 분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양한다.

### 대응

- 3.1.12. 아동 보호 및 아동 권리 원칙과 관련된 기관 간 옹호 전략에 기여한다.
- 3.1.13. 현지, 국가, 국제 차원의 언론인을 위한 상호 브리핑(mutual briefings)을 촉진한다.



- 3.1.14. 상황상 적절한 경우 현지, 국가, 국제 차원의 의무 이행자와 인도적 지원 주체, 언론인과 함께 아동 보호 메시지, 지원 활동, 옹호활동을 조정한다.
- 3.1.15. 아동 및 돌봄 제공자와 교류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이미지나 녹음 또는 인용문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아동 및 돌봄제공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받는다.
- 3.1.16.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말이나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 또는 옹호활동에 사용하기 전에 그들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최선의 이익을 평가한다.
- 3.1.17. 모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간단하고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3.1.18. 맥락에 적절하고 대상 청중이 신뢰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한다.
- 3.1.19. 생명과 직결된 유용하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옹호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 3.1.20. 아동 보호 데이터와 출처를 공유하기 전에 검증 과정을 거친다.
- 3.1.21. 사람들이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러한 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자주 활용하고 활발히 대응한다.
- 3.1.22. 아동이 한 기어나 그들의 생각, 인생 이야기,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 3.1.23. 다음을 통해 아동을 존엄하게 묘사한다.
  - ‘고아’, ‘소년병 출신’ 같은 꼬리표의 사용 지양
  -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기보다 아동을 중심에 둬. 예컨대, ‘학대받은 아동’보다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라고 표현
  - 상황을 과장해 표현하거나, 고정관념을 지속시키거나, 아동의 권한을 박탈하는 언어 사용 지양
  - 선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는 아동의 노출 지양
  - 현지의 사회문화적 규범 존중
- 3.1.24.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관련 자료에서 아동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 위험 조사가 진행된 경우
  - 아동이 이름을 밝히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한 경우
  - 돌봄제공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한 경우
- 3.1.25. 커뮤니케이션 또는 옹호활동 관련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아동의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되어 있거나 연루된 적 있는 아동
  -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에서 생존한 아동
  - 학대를 범한 아동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를 앓는 아동

- 3.1.26. ‘아동 친화적’이라고 평가된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방법과 채널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한다.
- 3.1.27.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에 활용될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아동이나 돌봄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 3.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3.2.1. 목표 지역 내 설문조사 대상 인구 가운데 인식 제고 캠페인과 메시지 전달로 특정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한 인구의 비율	70%	아동 보호의 구체적인 영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국가 내 지표를 수정한다. 기초선(baseline)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비교한다. 설문 조사는 캠페인에 대한 지식과 노출 모두를 평가하여 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3.2.2. 위험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된 아동 보호 옹호활동 캠페인의 비율	100%	
3.2.3.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옹호활동 이니셔티브의 비율	100%	적극적인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지침은 참고자료 섹션을 참고하도록 한다. 아동의 참여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을 고려한 위험 조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3.3. 지침

### 3.3.1. 기관에 대한 지침

아동의 우려사항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은 현지, 국가, 국제 차원의 법률과 법체계, 지침, 정책, 절차, 보호적인 문화 규범과 관행,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3.3.2. 국가의 옹호활동 역량

인도적 대응은 더욱 강력한 협업과 협력적인 조치를 지원하여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활동하

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아동 보호 활동 주체의 옹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3.3.3. 아동 보호 메시지

아동 보호 위험과 안전에 대한 메시지는 아동, 가족, 커뮤니티 및 기타 의무 이행자로부터 보호적이고 안전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 보호 메시지 전략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 보호 위험 및 그 위험이 서로 다른 젠더와 연령, 장애, 특성, 그리고 기타 다양성을 지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 의무 이행자의 역할과 책임
- 아동 보호 위험을 경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

아동 보호 메시지 전략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따른 아동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
- 메시지를 전달할 다양한 집단에 관한 세부 정보
- 대상 집단에 따라 메시지를 조정하고 다양한 전달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
- 이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관련 절차

메시지와 메시지 전달 방법이 맥락화되어 있고,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고, 유용하고, 현실적이며, 설득력이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종 확정 전에 현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흔히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채널에는 대중매체, 커뮤니티 관계자, 포스터와 리플렛,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기타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현지, 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정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혼란과 중복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3.4. 참여

아동의 참여는 아동 보호 메시지의 질과 정확성,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권한을 강화하고 아동이 통제감, 정체성, 능력, 회복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에서의 아동의 참여는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의미 있어야 하며, 아동 및 돌봄제공자에게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 참고)

### 3.3.5. 비차별과 포괄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모든 젠더, 연령, 장애, 특성, 그리고 기타 다양성을 지닌 아동의 관점을 포함하여, 피해 아동의 경험을 폭넓게 제시
- 형평성 증진
- 아동의 역량, 능력, 회복력 강조
- 아동을 피해자 또는 수동적인 원조 수혜자로 표현하는 방식 지양
- 다양한 역량과 배경을 가진 모든 아동의 접근성 보장

### 3.3.6. 면책 조항

아동의 이미지나 동영상상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아동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2차 학대나 착취 또는 폭력
- 가족이나 커뮤니티에 의한 낙인이나 거부
- 아동의 국적 또는 서류/정착 상태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

면책 조항 예시:

*“본 문서에 사용된 사진에는 [기관명]이 협력하는 커뮤니티와 그룹에 속한 아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학대나 폭력의 생존자이거나 이 캠페인이 대변하는 아동들을 대표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3.3.7.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피해 커뮤니티, 특히 연령대가 높은 아동과 청소년과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아동,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과 국가 및 국제 기구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책임성을 지원한다.

- 자신의 수요 설명
- 자기만의 해결책 모색



- 우려사항 보고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은 조기 경보 메시지와 유용한 안전 정보를 배포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를 파악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다.

### 3.3.8.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는 (1)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 활용에 관한 참여자의 소유권을 뒷받침하고, (2) 데이터 수집 주체와 응답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각각의 참여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아동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대중에 공개할 때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맥락에서 아동과 돌봄제공자는 동의나 합의를 할 능력을 제한하는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 또한 지적 손상을 가진 아동이나 이해관계자는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동의/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동과 돌봄제공자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서에서 명해야 한다. 동의/합의서 견본은 『국제 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보 수집에 관한 윤리적 접근 방식: 지침과 자료』(Ethical Approaches to Gathering Information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ternational Settings: Guidelines and 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글을 읽거나 쓸 수 없거나 (2) 양식에 사용된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이나 돌봄제공자 등을 위해 대안적인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 방법도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는 간단하고 연령에 적합한 언어 또는 그림(필요할 경우)으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 아동이 스스로 고지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권리도 지지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언제든지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커뮤니케이션과 옹호 활동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의 기대도 고려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자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지 못하거나 인도주의 맥락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 3.3.9. 증언

아동은 영향력 있는 활동 주체이자 발언자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역할에 뒤따르는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인은 아동이 증언을 하거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에 따라 위험을 조사하고 (2) 필요할 경우 아동을 적절한 서비스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증언을 하는 아동은 자신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곤란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자신의 참여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동의 대변인은 아동의 개인적 경험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그들은 언론 면담 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통해 역할극을 하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인식해야 한다. 아동은 면담 동안 자신을 지원할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선택을 받은 성인은 미디어 관계자와 대화할 준비를 갖춰야 하고, 필요할 경우 면담을 중단해야 하며, 면담 후에는 아동에게 면담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HS Alliance, Group URD, the Sphere Project, 2014.
- *Professional Standards for Protection Work Carried out by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Actors in Armed Conflict and Other Situations of Violence*, ICRC, 2018, pp. 103–150.
- Kolucki, Barbara and Dafna Lemish, *Communicating with Children: Principles and Practices to Nurture, Inspire, Excite, Educate and Heal*, UNICEF, 2011.
- *Advocacy Toolkit: A Guide to Influencing Decisions That Improve Children's Lives*, UNICEF, 2010.
- *Practice Standards in Children'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 *How to Communicate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Save the Children, Yerevan, 2015.
- Schenk, Katie and Jan Williamson, *Ethical Approaches to Gathering Information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ternational Settings: Guidelines and Resources*, Population Council, Washington, 2005, p. 72.

## 기준 4: 프로그램 주기 관리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5: 정보 관리, 기준 6: 아동 보호 모니터링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주기 관리(Programme Cycle Management, PCM)는 프로그램을 설계, 계획, 관리, 모니터링, 평가하는 주기적인 과정이며, 인도적 개입의 질과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에 지침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다. 이 기준은 인도적 지원에 아동 발달 및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통합하여 PCM의 초점을 아동 보호에 두고 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과도 상응한다.

프로그램 주기는 (1) 대비, (2) 수요 조사 및 상황 분석, (3) 설계 및 계획, (4) 이행 및 모니터링, (5) 평가 및 학습이라는 5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주기의 5가지 핵심 단계



## 기준

모든 아동 보호 프로그램이 기존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삼고, 변화하는 아동 보호 위험과 수요를 다루며, 학습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조정되는 구조화된 절차와 방법론을 통해 설계, 계획,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된다.

### 4.1. 핵심 활동

#### 대비

#### 아동 및 아동 보호의 위험과 수요 및 역량 이해

- 4.1.1. 매핑과 연구를 검토, 업데이트 또는 수행하기 위한 기관 간 차원의 노력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이해한다.
- 모든 차원의 사회생태적 모델에 존재하는 공식 및 비공식 아동 보호 시스템
  - 아동, 그리고 아동의 보호, 젠더 역할,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및 사회적 규범
  - 전통적인 대응 기제를 포함한 커뮤니티 차원의 아동 보호 개입과 보호 역량
  - 아동의 권리 및 위험군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
  -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타 정보
- 4.1.2. 가능한 경우, 아동, 가족, 커뮤니티 및 의무 이행자를 매핑<sup>Mapping</sup>과 연구에 참여시킨다. 이때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 4.1.3. 직원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 위기 발생 이전의 맥락 숙지
  - 대비 계획과 활동 인지 (예: 파트너십 강화 또는 정부 리더십 강화)
  - 인도적 대응 시 자신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 이해

#### 대응

#### 수요 조사 및 상황 분석

- 4.1.4. 맥락, 이해관계자, 수요, 취약성, 역량을 고려하는 기관 간 상황 분석에 기여한다. 필요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석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한다.

- 4.1.5. 즉각적인 위험, 위험의 근본 원인, 기존 정보에 존재하는 간극을 파악하기 위해 2차 데이터를 검토하는 기관 간 노력을 지원한다. 조사 필요 여부와 적절한 방법론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지침 4.3.5 참고)
- 4.1.6. 다양한 젠더, 장애, 국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팀을 선정하고 훈련하여 그들이 피해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1.7.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러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한다.
- 4.1.8. 현지 규범을 반영하고 젠더, 연령, 장애를 고려하는 시의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을 통해 결과를 공유한다.



## 설계 및 계획 대응

- 4.1.9. 상황 분석 및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독립적인 개입, 통합인 개입, 주류화된 개입 중에 가장 적절한 개입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 4.1.10.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생명과 직결된 활동을 우선시하되, 커뮤니티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접근법과의 연관성을 유지한다. 상황이 안정되면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한다.
- 4.1.11. 인도적 대응이 기존 구조와 시스템을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국가, 국제 차원의 기관들이 상호보완하는 활동을 계획 및 이행한다.
- 4.1.12. 상황상 적절하다면 아동과 커뮤니티를 참여시켜 프로그램이 연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회복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1.13. 양질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 학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계획하고 할당한다.

## 이행 및 대응 모니터링

- 4.1.14. 프로그램 계획 및 서비스를 프로그램 이행 초기부터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 4.1.15. 프로그램의 질, 산출물, 성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아동 보호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이행을 조정한다. (기준 6 참고)
- 4.1.16.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아동과 공동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며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 4.1.17. 아동 친화적이고 젠더, 연령, 장애, 문화를 민감하게 고려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아동, 가족, 커뮤니티로부터 다음 사항을 가능하게 하는 피드백과 보고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 피드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를 유연하게 진행
  - 세이프가딩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 (기준 2 참고)





- 4.1.18. 이행 단계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 개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고, 파악하며, 완화한다.

### 평가 및 경험을 통한 학습

- 4.1.19. 조사, 모니터링, 피드백, 책무성 메커니즘을 통해 얻은 결과와 학습 내용을 아동 및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그들의 노력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4.1.20. 공동 학습 이니셔티브, 아동 보호 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인도적 대응 분야에 참여한다.
- 4.1.21.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향후 인도적 개입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4.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은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4.2.1. 아동 보호 시스템 및 활동 주체에 대한 위기 전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 보호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HA) 프로그램의 비율	100%	프로그램과 제안서는 기존의 구조, 활동 주제, 가치, 역학관계에 대한 건전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4.2.2. 최근의 문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CPHA 조사의 비율	100%	문서 검토가 긴급 상황 발생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수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검토 결과를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4.2.3. 아동 보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아동의 위험, 수요, 역량을 다루는 CPHA 프로그램의 비율	100%	보고 시점에 개발은 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는 않은 모든 프로그램도 이 측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2.4. SMART(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연관성 있으며, 기한이 있음)의 정량 및 정성 지표를 통해 성과 차원에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한 프로그램의 비율	100%	

## 4.3. 지침

### 4.3.1.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PCM 전반에 걸친 질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모범 사례, 도구 및 지표에 관한 지침을 『CHS』에서 참고한다.

### 4.3.2. 존엄한 삶

인도적 대응의 설계는 피해인구의 존엄과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인구의 웰빙에 기여하고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접근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각 개인의 가치 존중
- 긍정적인 대응 기제와 회복력 강화
- 종교적 및 문화적 정체성 지지
-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증진
- 긍정적인 사회 지원 네트워크 장려

### 4.3.3. 포괄 및 참여

아동을 포함한 피해인구는 스스로가 자기 삶의 변화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할 때에는 아동 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을 활용해 아동을 포함한 전체 커뮤니티를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차별을 받거나 차별 받을 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또래 간/아동 간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석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아동이 (1) 어려운 상황에서 통제감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2) 긍정적인 정체성과 회복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과의 소통은 성인과 분리된 곳에서, 여성 및 여아와의 소통은 남성 및 남아와 분리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부모와 이야기할 때에는 그림, 역할극, 인형, 수화 통역 같은 적절한 대안을 포함해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 4.3.4. 위기 발생 전 정보

장기적인 아동 보호 상황에 관한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아동 보호 정보로 간주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종합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 매핑이 최근에 수행되었



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 권리와 관련된 대비 계획, 국가법, 정책, 연구도 참고하도록 한다. 현지에서 아동이 인식되는 방식과 서로 다른 젠더, 연령,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 실향민, 소득 빈곤, 자택 돌봄, 아동 노동, 학교 등록 및 출석, 보건, 사회 복지, 사회적 규범과 관행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고려한다.

#### 4.3.5. 취약성 평가



인도적 긴급 상황에서 아동은 다양한 취약성에 직면한다. 아동은 성별, 젠더 정체성, 연령, 장애, 사회 조건, 인종 집단/국적, 실향 상태, 그리고 낙인을 강화하거나 권리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요인(질병이나 서류 미비 등)에 의해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차별이나 소외, 사회적 고립, 소득 빈곤, 계급/카스트, 열악한 거버넌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성향, 환경 파괴와 기후 변동성과 같은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소 등 취약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및 상황적 요인을 평가하도록 한다.

#### 4.3.6. 조사

조사는 모든 상황 분석 과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조사는 긴급 상황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초기 또는 신속 조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아동 보호 상황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선 데이터 제공
- 초기 계획, 예산 책정, 옹호활동의 기반

초기 또는 신속 조사에 이어 총체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조사 방법과 도구는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해당 상황에 있는 아동과 가족의 구체적인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참여적 접근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1) 조사를 계획하기 전에 이미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고 (2) 기관 간 차원에서 조사를 조정하고 결과를 공유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조사 피로’(똑같은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반복적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도록 한다.

##### 4.3.6.1. 아동 보호 분야 조사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 수요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 간 아동 보호 조사 도구는 다양하다. 이러한 도구는 맥락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조사 흐름도*를 활용해 어떤 도구가 상황 및 가용 자원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 4.3.6.2. 다분야 조사

다분야 조사는 초기 긴급 상황 프로그램 및 자금 우선순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며, 특정 시점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우려사항을 개괄적으로 알려준다. 보통 이러한 조사는 일반 전문가가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민감하지 않은 아동 보호 질문만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 4.3.6.3. 아동 보호를 다른 분야별 조사에 통합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른 분야의 분야별 조사에 질문을 추가하거나 다른 분야에 모든 데이터를 세분화해 줄 것을 요청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주체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중 아동 보호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가구 구성,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UASC)의 수, 아동가장 가구, 출생 등록,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 전략, 소득 관련 문제 등이 있다. 『아동 보호를 다분야 및 타 인도적 조사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The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Child Protection into Multi-sector and Other Humanitarian Assessments)을 참고한다.

### 4.3.7. 데이터 세분화

데이터 세분화는 취약성과 우선적인 수요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긴급 상황 초기에는 데이터 세분화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 장애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다른 다양성 관련 특성이나 위험 요인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로 세분화하도록 한다. 세분화된 데이터는 고위험군이 누구인지, 고위험군이 인도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데이터 세분화는 민감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안전 및 보호 우려사항, 그리고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4.3.8. 프로그램 평가

평가는 책무성의 핵심이다. 평가는 다양한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파악하며,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평가는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에는 연관성, 연결성, 일관성, 적용 범위, 효율성, 효과성, 영향이라는 7가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 결과는 포괄적 방법론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인구와 공유하여 그들이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팀은 평가 결과와 권고 사항을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PMS Programming for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CPMS Standard 4 Programme Cycle Management*, CPWG, 2015
- *Child Protection Resource Pack: How to Plan, Monitor and Evaluate Child Protection Programmes*, UNICEF, New York, 2015.
-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Assessment Flowchart*’,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Secondary Data Review (SDR): Matrix and guidance note*’, CPWG, 2016.
- ‘*Desk Review Template and Guidance*’, CPWG.
- *Child Protection Rapid Assessment Toolkit*, CPWG, 2014.
-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Initial Assessment (CPIA)*, Child Protection AoR,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Child Protection Issues into Multi-sectorial and Other Humanitarian Assessments*, CPWG, 2015.
-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Monitoring Toolkit*,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6.
- *Listen and Learn: Participatory Assess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UN-HCR, 2012.
- *A Kit of Tools for Participatory Research and Evaluation with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A Compilation of Tools Used During a Thematic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Armed Conflict, Post Conflict and Peace Building, 2006-2008*, Save the Children Norway, 2008.
- ‘*IASC Gender with Age Marker*’. [Website]
- *Learning Toolkit on the Use of the WQGs in Humanitarian Action*, Humanity and Inclusion, UN Washington Group tools for disability statistics.
- ‘*CHS Guidance Notes and Indicators*’,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HS Alliance, Group URD, the Sphere Project, 2014.
- ‘*Design of the Quality and Accountability COMPASS Method*’, Groupe URD.
- *Inter-agency Community-based Complaint Mechanisms: Protec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Guideline)*, IASC, 2016.
- *Evaluation of Humanitarian Action Guide*, ALNAP/ODI, London, 2016.

## 기준 5: 정보 관리

아래 내용은 원칙, 기준 4: 프로그램 주기 관리, 기준 6: 아동 보호 모니터링, 기준 18: 사례 관리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HA)를 위해 관리해야 할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 긴급 상황과 조정 메커니즘 지원에 관한 정보
- 전반적인 인도적 대응과 특히 아동 보호 대응에 관한 정보
- 주어진 맥락에서 아동이 처한 상황에 관한 정보(수용 가족/돌봄제공자의 웰빙, 구체적인 위험 요인, 아동 권리 침해 양상 포함)
- (일반적으로 사례 관리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보호 우려사항을 가진 특정 아동에 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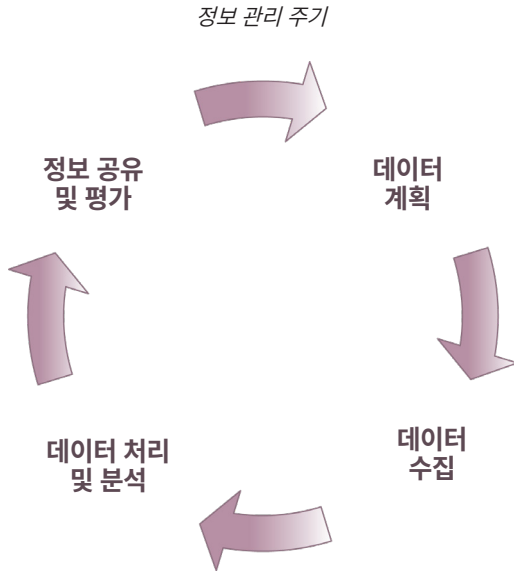


이러한 범주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분석 및 공유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전략과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상황상 적절한 경우, 조정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옹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련 활동 주체와 공유해야 한다. 정보는 맥락화된 데이터 보호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Information-sharing Protocol)에 따라서만 공유해야 한다. 본 기준은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보 관리 지침을 제공하며, 이 정보 관리 지침은 기존의 정보 관리 도구와 훈련을 보완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정보 관리 주기는 보호 정보 관리(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프레임워크에 설명되어 있다. 본 기준은 보호 정보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도출한 다음 네 가지 주요 단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 데이터 계획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 정보 공유 및 평가

본 기준은 보호 정보 관리 지침을 보완한다.



## 기준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최신 정보가 기밀유지와 데이터 보호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 아동 보호 원칙에 따라 수집되고, 처리 및 분석되며, 공유된다.

### 5.1. 핵심 활동

#### 대비

#### 데이터 계획


- 5.1.1. 유관 아동 보호 그룹 및 광범위한 보호 조정 그룹과 협력하여 아동 보호 우려사항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수집한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의된 아동 보호 우선순위에 대한 기관 간 기준값을 설정한다.
- 5.1.2. 가능하다면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의 또는 기존의 정보 관리 시스템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 관리 도구와 절차를 개발하고, 조

정하고, 공유하며, 번역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관리 정보 시스템
- 조사 및 상황 모니터링 도구
- 아동 보호 대응의 범위와 질을 추적하기 위한 대응 및 품질 모니터링 도구
- 정보 관리 훈련(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포함)

5.1.3. 정보 관리에 관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

- 윤리
- 데이터 수집 원칙
-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
- 민감한 정보의 관리
- 아동 친화적인 면담 기법

5.1.4.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기밀이 유지되고 의료 윤리를 준수하는 정보 공유 프로토콜 및 이관 경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 분야 활동 주체와 협력한다. 

5.1.5. 국가 간 인구 이동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역 또는 국가 간 정보 관리 시스템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국제적인 인구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국가의 조정 그룹/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정보 관리 시스템을 조율하도록 한다.

5.1.6. 다른 클러스터/분야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이슈를 적절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통합한다.

## 대응

### 데이터 수집

- 5.1.7.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항상 기밀유지 및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을 적용한다.
- 5.1.8. 데이터를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에 따라 세분화하고 분석한다.
- 5.1.9.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이용 약관, 데이터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직원 등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 5.1.10. 가능한 경우 상호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간극 분석 기능을 개선한다.
- 5.1.11. 데이터 보호 및 분석과 관련해 직원, 파트너, 현지 데이터 담당자의 역량을 구축한다.

## 정보 공유 및 평가

5.1.12. 인구 단위의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며, 다음 대상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 (상황상 적절한 경우) 아동과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 정보 제공자
- 피해인구

이러한 노력은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을 강화하고 조정팀의 옹호 기능을 지원한다.

## 5.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5.2.1. 기밀유지 절차에 관한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담당 직원의 비율	100%	
5.2.2. 데이터 수집을 시작일 1개월 이내에 데이터 수집에 관한 훈련을 받은 데이터 수집자의 비율	100%	데이터 수집자는 1개월 이내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기 최대 4주 전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4주가 지나서 훈련을 받으려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5.2.3. 피해 커뮤니티 내에 아동 및 성인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예 (존재함)	

## 5.3. 지침

### 5.3.1. 세분화

아동에 관한 데이터라면 성별, 연령, 장애에 따라 지표를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종 위험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특정 아동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별,

연령, 장애는 보편적인 요소이며, 다른 요소(출신국, 이주 또는 실향 상태)도 맥락에 따라 중요하거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규범, 장벽, 차별, 기타 위험에 관한 정보 같은 질적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성별 대신 혹은 성별과 함께 젠더도 활용될 수 있다.

### 5.3.2. 데이터 수집

준수해야 할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건전한 모든 데이터 수집 방법
-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는 건실한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활용
- 동일한 인구에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기관 및 분야와 함께 조사를 조정 및 계획
- (1) 데이터의 사용 목적, 구성, 심각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2)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 식별 데이터나 생체 정보 데이터 수집
- 측정된 산출물에 의미 있게 부합하는 명확한 SMART(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연관성 있으며, 기한이 있음) 지표 활용. 모든 면담은 면담 대상자의 문화적 관행 및 규범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
- 비현실적인 기대가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 제공 능력이 제한적임을 면담 대상자에게 고지
- 긍정적인 언어를 활용하고 위기 아동에게 꼬리표 붙이는 행위 지양. 아동을 분류하지 않고, 아동의 행동 설명
- 활용할 데이터만 수집
-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선 설정

### 5.3.3.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데이터를 편집할 때에는 ‘중복 집계<sup>double counting</sup>’, 즉 아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아동을 두 번 이상 집계하지 않을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 보호 프로그램이 활용된 전체 범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사례 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모두 제공받는 아동은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자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분석하는 것은 계획과 책무성에 중요하다.

합의된 기관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 및 과거에 보고된 데이터를 비교하고 삼각측량하지 않고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 5.3.4. 정보 공유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정보가 아동 및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 너무 작은 숫자
- 너무 구체적인 지리적 영역
- 특정 개인을 쉽게 지목할 수 있는 상황

당사자가 받을 특정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동의/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식별 데이터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가 강제 이주 용도로 공유되지 않도록 세이프가딩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 관리 주기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피드백을 수집하도록 한다. 수집했거나 제공받은 데이터는 즉각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활용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는 현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수치의 아동 노동은 아동이 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다.

### 5.3.5. 기관 간 조정 정보 관리자의 역할

정보 관리의 조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 관리자 그리고 아동 보호 조정관/조정 담당자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긴급 상황 대응에서는 아동 보호 조정 그룹이 정보 관리 역할을 맡는다. 아동 보호 조정 그룹은 전체 아동 보호 하위분야를 위해 정보 관리 절차를 주도하며, 아동 보호 주류화 또는 통합을 위해 다른 분야와의 연결을 꾀한다. 이 그룹은 합동 조사 작업반을 조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를 개발 또는 조정하는 일에 참여한다.

- 상황 및 대응 모니터링 도구
-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데이터 보호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
- 기관 간 사례 관리 양식
- 표준화된 훈련 모듈
- 합동 조사 작업반 훈련 및 절차
- 피해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맥락화된 지침



모든 도구와 절차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의 수요에 맞게 맥락화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 책임 영역(Area of Responsibility)이나 UNHCR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hat is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PIM)*’, PIM Guide,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Humanitarian Context*’, *OCHA IM Guidelines Ver.2.1*, OCHA.
- *Professional Standards for Protection Work Carried out by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Actors in Armed Conflict and Other Situations of Violence*, ICRC, 2018, pp. 103–150.
- ‘*Whole of Syria: Child Protection Response Snapshot*’, Whole of Syria Child Protection Sector, 2017. [An example of a consolidated information sheet on the child protection and humanitarian response]
- ‘*Information Management Working Group*’, OCHA. [Website]
- ‘*Child Functioning: A new way to measure child functioning*’, UNICEF,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2016.

## 기준 6: 아동 보호 모니터링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 조정, 기준 4: 프로그램 주기 관리, 기준 5: 정보 관리, 기준 18: 사례 관리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아동 보호 모니터링은 특정 인도주의 맥락에서의 아동 보호 위험, 침해, 그리고 역량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모니터링)를 가리킨다. 아동 보호 모니터링은 분석, 전략, 대응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협력과 조정을 거쳐 다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는 모든 아동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보호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위험은 광범위하며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 보호 분석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동 보호 분석 시 측정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룬다. 이 프레임워크는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아동 보호 분석 프레임워크

분석 주제									
신체적 위험과 상해	신체 정서적 학대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영탁된 아동	아동 노동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	아동 보호 대응 서비스의 가용성/접근성	통행권/판관 및 아동 보호 기록

### 기준

아동 보호 위험에 관한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데이터와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고, 분석되며, 원칙적이고 안전하고 협력적인 방식에 따라 활용되며 증거 자료에 기반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 6.1. 핵심 활동

### 대비

### 계획

- 6.1.1. 보호 정보 관리(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PIM) 절차 및 원칙을 활용하여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평가한다.
- 6.1.2.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의 목적과 수집할 정보를 정의한다.
- 6.1.3. 기존 정보의 출처를 매핑하고 조사한다.
- 6.1.4. 아동 보호가 광범위한 보호 모니터링에 포함되도록 한다.
- 6.1.5. 1차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맥락화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일련의 공통 지표를 정의한다.
- 6.1.6. 기타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인도적 지원 주체, (아동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주도적인 방법을 비롯해 아동 보호 모니터링을 위한 역할과 책임 및 방법론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합의한다.
- 6.1.7. 데이터 수집, 처리, 보관 과정에서 아동, 가족, 커뮤니티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조사하고 완화한다.
- 6.1.8. 적절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목적이 있고, 조화로운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 6.1.9. 중복을 예방하고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아동 보호 모니터링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적합한 정보 공유와 이관 절차, 그리고 보고 일정 및 양식을 확립한다.
- 6.1.10. 아동 보호 및 정보 관리 역량을 조사하고 강화하여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응

### 데이터 수집

- 6.1.11. 아동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최소한 성별/젠더, 연령, 장애에 따라 세분화한다. 맥락에 따라 위험, 소외, 배제의 다른 측면들도 중요할 수 있다.
- 6.1.12. 아동 보호 우려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에게 2차 트라우마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6.1.13. 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또는 돌봄제공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우선시한다.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 6.1.14. 가능한 경우 과소 보고(보고되지 않은 사례의 비율) 또는 과잉 보고(수차례 보고된 사례의 비율) 양상을 고려하거나 추정 또는 분석한다.
- 6.1.15.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6.1.16. 정보 관리에 관한 윤리, 원칙, 모범 사례를 수립하고 준수한다. (원칙 및 기준 5 참고)

## 데이터 평가 및 배포

- 6.1.17. 아동 보호 우려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위기 아동 및 가정이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에서 생존한 아동 및 가족을 식별하고 이관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 6.1.18. 아동 보호 우려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
- 6.1.19. 중대 아동 권리 침해에 관한 국가 모니터링 및 보고 작업반 (Country Taskforce on Monitoring and Reporting)이 개발한 프로토콜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한다.
- 6.1.20. 식별한 보호 위험, 취약성, 침해, 추세를 아동 보호 활동 주체(및 상황상 적절한 경우 다른 분야별 활동 주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조직 및 기관 간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응을 진행하거나, 자금 지원을 요청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기준 1 및 4 참고)
- 6.1.21.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 공유 프로토콜이 아동, 가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 6.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6.2.1. 아동 보호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아동 보호 전략 및 프로그램 문서의 비율	80%	아동 보호 모니터링 분석 결과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 결과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정의해야 하며, 아동 보호 모니터링 배포 계획을 참고해야 한다. 전략과 프로그램 문서는 별도로 측정해야 하지만 공동으로 보고할 수 있다.
6.2.2. 본 기준에 인용된 활동 가운데 아동 보호 모니터링을 이행하기 전에 아동 보호 조정 그룹을 통해 완성된 주요 대비 활동의 비율	80%	활동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가 본 기준의 핵심 대비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되도록 한다. 또한 정보 수집 기간을 파악한다.

## 6.3. 지침

### 6.3.1. 아동 보호 모니터링의 목적

아동 보호 모니터링의 목적은 기존의 개입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개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아동 보호 모니터링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친다.

- 개인, 가족, 커뮤니티 차원의 예방 및 대응 활동
- 유관 국가 및 국제 법률과 결의안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며, 충족하는 옹호활동
- 아동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보호 위험과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적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

### 6.3.2. 보호 정보 관리(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PIM)

“PIM은 양질의 보호 성과를 위해 증거 자료에 기반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처리·분석 및 보관하고 공유하며 활용하는 원칙적이고 체계적이며 협력적인 과정이다”(보호 정보 관리 웹사이트) PIM은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자원 활용을 보장하고 보호 대응의 조정과 계획 및 전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준 5 참고)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이행 및 평가 시에는 다음과 같은 PIM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인간 중심적 및 포괄적
-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
- 명확한 목적

-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와 기밀유지
- 데이터 책임, 보호, 보안
- 역량 및 능력
- 공정성
- 조정 및 협력

이러한 원칙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원칙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 6.3.3. 2차 데이터 검토 및 기존 아동 보호 데이터와 자료의 매핑

각각의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음을 반영하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식별된 아동 보호 위험
- 아동, 가족, 커뮤니티의 식별된 역량과 대응 기제
-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의 사용법과 사용자

2차 데이터 검토는 기존 데이터와 정보, 잠재적 간극, 그러한 간극을 메우는 적합한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 보호 데이터와 정보의 출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동 권리와 아동 보호와 관련된 학대 또는 상해를 모니터링하는 지역 및 국가 시스템
- 보건, 법 집행, 노동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해 얻은 행정 데이터
- 아동 보호 및 기타 분야 활동 주체가 실시한 조사,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수집 이니셔티브
- 사례 관리 시스템
- 커뮤니티 기반의 보호 시스템
- 인권 보고서

### 6.3.4. 조정 및 협력

조정과 협력은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 보호 이해관계자, 보호 분야, 기타 인도주의 분야, 유관 하위그룹/책임 영역(Area of Responsibility)은 데이터와 정보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해 공통의 이해와 접근법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 공유 및 보안을 위한 양식과 지표,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 프로토콜 등의 조율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조정 실무그룹이나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

다. (기준 1 및 5 참고)

### 6.3.5. 역량 및 기술

아동 보호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다음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인권, 아동 권리, 아동 보호에 관한 현지, 국가 및 국제 차원의 기준과 법률
- 모니터링 활동에서 드러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하고, 대응적<sup>Responsive</sup>이고, 시의적절한 이관 메커니즘
- 다음과 같은 데이터 수집과 공유 및 보고 방법론을 포함한 아동 보호 모니터링 활동
  - 안전함
  - 기밀이 유지됨
  - 정보를 제공함
  - 참여적임
  - 트라우마를 민감하게 고려함
  - 분쟁을 민감하게 고려함
  - 아동 친화적임
  - 장애 친화적임
- *(무력분쟁 중에 벌어진 중대 아동 권리 침해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 지침 등 적절한 이니셔티브별 지침*

### 6.3.6. 분석

아동 보호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분석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분석 깊이에 따라 기술, 역량, 그리고 분석에 참여해야 할 주체가 달라질 것이다. 보다 심도 있는 분석에는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 보호 모니터링 및 분석에 참여하는 직원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결과를 검토하고 해석해야 한다.

분석 과정의 핵심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동 보호 모니터링이 제공하고자 하는 분석의 수준
- 분석 계획

- 적절한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이 뒷받침된 명확한 역할과 책임
- 인구 집단, 지역, 시간, 빈도, 가해자 프로필 등의 공통 분석 단위
- 합의된 보고 양식

### 6.3.7. 커뮤니티의 참여

아동, 가족, 커뮤니티는 대응과 책무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과 그 잠재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아동 보호 모니터링 및 대응의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집단의 아동, 돌봄제공자, 커뮤니티 구성원, 시민사회 단체와 교류해야 한다.

### 6.3.8.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진 중대 아동 권리 침해 모니터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은 무력분쟁 상황(또는 우려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에 대한 6가지 중대한 침해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수립했다. MRM이 모니터링하는 침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상해(영구적 신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아동을 징집하고 군으로 사용하는 행위
-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 행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및 여타 행위의 성폭력
- 아동을 납치하는 행위
- 인도주의 접근 차단

MRM은 분쟁 당사자들의 책무성과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 MRM은 중대 아동 권리 침해 사례의 총건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MRM은 MRM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검증할 능력을 갖춘 전문 활동 주체들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Monitoring Toolkit*,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6.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Secondary Data Review: Matrix and guidance note'*,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6.
- *'UNHCR Secondary Data Review Template'*, UNHCR.
-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on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ools'*, UN.
- *Field Manual: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 on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UNICEF, 2014.
- *The 1612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A Resource Pack for NGOs, 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15.
- *'Child Protection Analytical Framework'*, 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 기둥 2: 아동 보호 위험에 관한 기준



## 기동 2 소개: 아동 보호 위협에 관한 기준

포괄적인 국제 법 체계에 바탕을 둔 기동 2의 기준들은 인도주의 상황에서 아동이 맞닥뜨릴 수 있는 7가지 주요 아동 보호 위협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와 핵심 업무 영역을 다룬다.

- 신체적 위협과 상해
- 신체·정서적 학대
-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CAAFAG)
- 아동 노동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UA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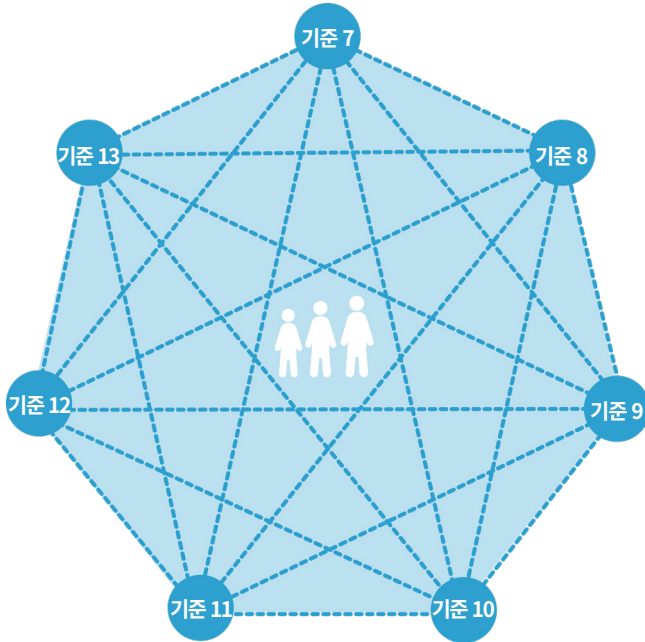
아동 보호 위협은 아동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침해 또는 위협으로, 아동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아동 보호 위협을 이해하려면 위협의 성격과 그러한 위협에 대한 개별 아동의 취약성을 이해해야 한다. 무력 분쟁, 강제 이주, 재난, 환경 악화, 경제적 불안, 전염병 발생, 사회적 차별 행위 등은 아동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사례에 해당한다. 아동의 취약성은 해당 아동의 회복력과 위협을 견디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아동의 가족, 커뮤니티/사회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아동이 가진 지식과 기술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개별 아동이 지닌 취약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에 상존하는 위험이 결합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아동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여러 개의 보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기동에 제시된 7가지 위험 관련 기준은 중복되는 취약성과 위협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위협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없으며, 아동은 여러 가지 위협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항상 아동이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각각의 아동과 그들이 처한 환경의 취약성 및 강점을 식별해야 한다.

이 기동에서 논의된 각각의 위험 영역을 예방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예컨대, 이동 중인 가족은 실형 상태에서 아동과 분리될 가능성을 줄일 방법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면 가족을 찾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준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성 및 젠더기반폭력(SGBV)을 예방하기 위해 캠프 관리 담당 동료들과 협력하여 숙소에 조명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게 하고 등하곳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기준 7~13에 제시된 위험의 상호 연결성



성폭력 생존 아동은 심리사회적 및 의료적 지원에 더해 법적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기준 9: 성 및 젠더기반폭력).

본 기둥에 제시된 기준들은 아동, 가족, 커뮤니티, 사회의 회복력을 증진하여 위험을 경감하고 위험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1) (다양한 위험을 다루고, 아동의 취약성을 줄이고, 아동 보호 요소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포함하는) 기준 14~20: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및 (2) 기준 21~28: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과 함께 활용해야 한다.

## 기준 7: 신체적 위험과 상해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2: 아동 노동,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3: 교육과 아동 보호, 기준 24: 보건과 아동 보호, 기준 27: 쉼터, 정착지와 아동 보호, 기준 28: 캠프 관리와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에게 부상, 손상, 사망을 초래하는 물리적 및 환경적 위험을 다룬다. ‘비의도적 부상’은 폭발물로 인한 부상을 포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고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부상을 가리킨다.

의도적 폭력이나 자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적 부상’은 기준 8, 9, 11에서 다룬다.

비의도적 부상은 5~14세 아동 사망 원인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15~19세 아동의 사망 및 영구적 손상의 주요 원인이다. 비의도적 부상의 결과로 사망하는 아동보다 영구적 손상을 입는 아동이 더 많다.



부상의 성격은 젠더, 연령, 장애,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역할과 책임, 해당 부상의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낮은 상황으로 이주한 아동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 기준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신체적 및 환경적 위험으로 인한 부상, 손상, 사망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보호받으며, 부상 또는 손상을 입은 아동이 시의적절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는다.

## 7.1. 핵심 활동

### 대비

- 7.1.1. 모든 아동, 커뮤니티, 기타 인도적 지원 주체와 협력하여 기존의 또는 잠재적인 물리적 및 환경적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한다.
- 7.1.2.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부상 감시<sup>Injury surveillance</sup>,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한다.
- 7.1.3.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우려 사항을 아동 보호 프로그램 및 정보 관리 도구에 통합한다.
- 7.1.4.  현재와 유사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왜, 어디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지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경감, 대응 방안을 설계한다.
- 7.1.5.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 및 손상을 입은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접근성이 좋고 조정된 양질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구축한다.
- 7.1.6. 대비 활동,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인식 제고 활동, 공교육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참여적인 위험 완화 전략을 개발한다.
- 7.1.7. 아동, 커뮤니티, 인도적 지원 주체에게 적절한 위험 경감 및 응급처치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 7.1.8. 다른 분야와 협력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조정, 훈련, 이관, 정보 공유 활동에서 아동 세이프가딩을 비롯한 아동의 물리적 및 환경적 안전을 고려한다.
- 7.1.9. 재난 대비 및 대피 계획이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정부와 협력한다.
- 7.1.10. 공식 및 비공식 교육 커리큘럼과 아동을 위한 그룹 활동에 위험 경감이 포함되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7.1.11.  아동 보호 분야, 보건 분야, 기타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과 부상 사례 정의, 체계적 이관 등을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강화한다.

### 대응

- 7.1.12. 아동, 커뮤니티, 기타 인도적 지원 주체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한다.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아동
  -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원인
  -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시점
  -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장소
  -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상황



- 7.1.13. 모든 아동의 목소리를 전략 및 위험 안내 교육에 포함한다.
- 7.1.14.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적합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험 경감 개입을 실시한다.
- 7.1.15. 가족 강화<sup>family-strengthening</sup>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가정 환경을 조성한다. (기준 16 참고)
- 7.1.16.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한다.
- 7.1.17. 모든 분야에서 시설과 개입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할 때 보편적 설계 원칙과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접근성을 우선시한다. (기준 26, 27, 28 참고)
- 7.1.18. 커뮤니티 공간, 그룹 활동, 학교,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을 증진한다.
- 7.1.19. 커뮤니티와 학교 및 기타 장소를 오가는 아동의 안전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지상 또는 수상 교통수단을 증진한다.
- 7.1.20.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위해 조정된 다분야 사례 관리 및 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 18, 24 참고)
- 7.1.21. 보건 분야 활동 주체와 긴밀히 협력해 보건 시설에서의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기준 18, 24 참고)
- 7.1.22. 부상을 입은 아동이 맞춤형 응급처치, 응급 후송, 트라우마 관리,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 24 참고)
- 7.1.23.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을 제공한다. (기준 10 참고)
- 7.1.24. 지뢰 대응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예: 학교, 병원, 급수처 등)에 우선적으로 폭발물을 표시하고 제거하며 울타리를 설치한다. 필요하다면 서비스 제공 장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옮긴다.
- 7.1.25. 폭발물 피해 위험이 높은 커뮤니티를 위해 아동 중심의 피해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과 폭발물 위험 교육을 제공한다.



## 7.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7.2.1. 인도주의 상황과 관련된 물리적 및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대응 계획에 포함시킨 분야의 비율	100%	인도적 지원은 조정, 활동 주제,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터 식별은 국가 및 현지 활동 주체의 자문을 구하고, 함께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주기적인 수집 과정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사망의 원인(위험), 발생 상황,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7.2.2.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 아동을 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작동하는 이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원 대상 커뮤니티의 비율	80%	이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는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벤치마크와 부상/손상을 입은 아동을 위한 특정 서비스가 포함된 매핑/표준 운영절차(SOP),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 아동 중 커뮤니티 아동 보호 메커니즘에 등록되어 있고 적절한 이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 7.3. 지침

### 7.3.1. 신체적 위험과 상해

일반적인 비의도적 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익수(연못, 강, 호수, 바다, 우물, 가정용 물탱크, 배변용 구덩이 등)
- 낙상(나무, 놀이 기구, 절벽, 구덩이, 참호, 구조물 등)
- 화상(화재, 뜨거운 액체/음식, 감전)
- 도로 교통 사고
- 동물(예: 뱀, 곤충 등)에 의한 상처 또는 물림
- 의도하지 않은 중독(세정제, 의약품, 화학 물질 등)
- 날카로운 물체(예: 칼, 철조망, 유리, 초목 등)에 의한 상처
-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

재난과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위험 요소가 있다.

- 붕괴되거나 손상된 기반시설(노출된 전기선과 철조망 포함)건설 현장
- 떨어지는 혹은 날아다니는 물체(예: 나무나 나뭇가지, 벽돌, 잔해, 기와 등)
- 폭발물(집속탄, 사제폭발물<sup>Improvised Explosive Devices</sup>, 박격포, 수류탄, 탄약 같은 지뢰와 불발탄)
- 화학 무기
- 십자포화<sup>Crossfire</sup>, 총기, 기타 무기에 노출

### 7.3.2. 아동 보호 및 기타 활동 주체의 역할

아동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늘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들은 커뮤니티, 지자체 또는 지역 당국, 기타 이해관계자/분야와 협력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아동의 신체적 안전 우선시
- 부상과 손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는 다분야 개입 활동의 개발 및 이행

### 7.3.3. 데이터 수집

(더 자세한 지침은 [기준 5](#) 참고)

아동이 경험하는 위험과 부상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해 인도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들은 보건 활동 주체와의 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아동 부상 감시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위험을 대하는 아동의 관점은 성인의 관점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상황에 대한 분석 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아동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젠더
- 연령
- 장애
- 직업 및 활동
- 기타 다양성 측면

'부상 사례 정의'는 어떤 사람이 부상 혹은 부상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된다. 이러한 정의는 부상 감시 및 데이터 분석의 밑바탕을 이루며, 사람과 사건, 시간, 장소 별로 구체적인 임상 기준과 제한 사항을 파악한다. 이러한 정의는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부상 전반 또는 특정 유형의 부상을 다룰 때 쓰일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되고, 조정되고, 세분화된 데이터 세트는 부상 예방 정책 및 관행을 위한 증거 기반이 된다. 데이터는 다음 요소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 성/젠더, 연령, 장애
- 부상/사망의 원인, 발생 위치, 발생 상황

질적 데이터에 대한 젠더 분석은 여아와 남아가 가진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 및 접근성 장벽을 포함한 사회적 규범을 다루어야 한다.

지속적인 부상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설문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사망을 증명하고 기록해 세분화된 사망 데이터를 산출하는 해당 지역 주민 등록 서비스의 확산을 옹호해야 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집속탄 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전쟁잔류폭발물(Explosive Remnants of War, ERW)에 관한 제5의정서에 따라 광범위한 아동 인구 중에서 지뢰/폭발물 생존자를 식별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 아동 기능(Child Functioning) 모듈은 아동이 흔히 겪은 기능적 어려움을 조사하고 해당 아동의 서비스 참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7.3.4. 예방

부상의 1차, 2차, 3차 예방을 위한 활동은 증거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예방은 인도적 지원(및 개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아래 도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 7.3.5. 위험군

신체적 위험, 정보 장벽, 안전하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 등과 관련해 **특정 아동 집단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 젠더, 연령, 장애, 그리고 기타 다양성 측면들은 모두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위험에 따른 부상과 사망률 증가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 위험한 행동의 수위, 위험 노출 범위에 비례한다. 일부 부상(예: 익수)은 충분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동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부상 비율이 높는데, 이런 차이는 연령이 증가하고, 역할이 변화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동원됨에 따라 더 커진다. 여아는 가정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특정 부상을 입을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기존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방임과 비의도적 부상을 당할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주변의 리스크/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1차, 2차, 3차 예방을 위한 개입



1차 예방

**설명**

- 부상 발생 전 예방
- 위험 식별 및 예방을 위한 아동 회복력 구축

**인도적 대응**

- 재난위험경감(DRR) 및 긴급 상황 대비
- 위험 경감
- 안전 조치

**감시**

-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찰, 위험 조사, 부상 감시

2차 예방

**설명**

- 부상의 지속적인 영향 경감
- 부상과 관련된 보호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인도적 대응**

- 구호, 조기 치료, 신원 확인
- 인도적 대응 기간에 추가적인 피해 예방
- 기존의 건강과 기능 회복

**감시**

-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찰, 조사, 사례 관리, 부상 감시

3차 예방

**설명**

- 장기적이고 복잡한 부상, 추가적인 피해, 보호 침해 사례의 지속적인 관리

**인도적 대응**

- 기능, 삶의 질, 기대 수명을 향상하고 기타 보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사례 관리와 사후 관리
- 장기적인 예방 및 안전 조치를 위한 정책 옹호활동

**감시**

- 부상 감시, 사례 관리, 지속적인 조사, 여타 데이터를 통해 증거 기반 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

7.3.6. 커뮤니티 활동

아동의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기존의 커뮤니티 활동, 아동이 주도권을 갖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보호 메커니즘에 포함시켜 다음을 강화해야 한다.

- 위험 식별 및 보고
- 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대응
- 사람들이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동을 바꿀 가능성

모든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통제감을 기를 수 있도록 예방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설계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주도권을 갖는 기존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래 간 교육(청소년 라디오, 역할극, 거리 연극 등)은 개별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 7.3.7. 교육

접근 가능한 교육 시설과 활동은 다음을 통해 모든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상당수의 부상 위험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 보다 안전한 환경 제공
-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피 촉구
- 많은 아동이 안전 정보를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인도적 지원 주체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동 노동에 종사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비공식 또는 종교 학교 등 별도의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는-청소년을 포함한-아동을 위한 맞춤형 위험 경감 교육법을 파악하고 이행해야 한다. (기준 3, 23참고)

### 7.3.8.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생존자 지원

(생존자,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을 포함한) 피해 생존자 지원은 다양한 젠더, 연령, 장애에 적합한 조정된 사례 관리 접근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긴급 및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기준 24 참고)
-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정보와 적극적인 참여
- 신체적 및 기능적 재활(정형외과 보철 서비스 포함)
- 심리사회적 및 정신적 건강 지원 (기준 10 참고)
- 법적 지원 및 문서화 (기준 20 참고)
- 경제적 포괄(고용, 사회적 지원, 적절한 생활 수준 지원 포함) (기준 21, 22 참고)
- 사회적 포괄(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포함) (기준 17 참고)
- 적절한 보육 및 후속 방문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 돌봄제공자를 위한 지원 (기준 16 참고)
-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건물 및 커뮤니티 공간(상황상 적절할 경우 경사로와 난간 활용)



아래 추가 자료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jury Surveillance Guidelin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
- *Factsheets: How to implement victim assistance obligations under the mine ban treaty or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Handicap International, 2013.
- *Emergency Mine Risk Education Toolkit: Emergency MRE Handbook (First Edition)*, UNICEF, 2008.
- *'Child Protection',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UNICEF, 2017.
- *Assistance to Victims of Land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Guidance on Child-focused Victim Assistance*, UNICEF, 2014.
- *Preventing Drowning: An Implementation Guide*, WHO, 2017.
-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Prevention*, UNICEF, WHO, 2008.
- *Ten Strategies for Keeping Children Safe on the Road*, WHO, 2015.
- *'Child Functioning: A new way to measure child functioning'*, UNICEF,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2016.
- *Inter-agency Toolkit: Supporting the Protection Needs of Child Labourers in Emergencies (Draft for Field-testing)*, Child Labour Task Force and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기준 8: 신체·정서적 학대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0: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8: 사례 관리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학대(maltreatment)’에는 아동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 가해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 위협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 혹은 이에 대응하지 않는 행동이 포함된다. 학대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부모나 돌봄제공자, 가족 구성원, 권위를 가진 사람, 낯선 사람, 심지어 다른 아동이 저지를 수도 있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학대는 곳곳에 만연하며 보호적인 환경이 약화되는 인도적 상황에서 증대될 수 있다. 아동 4명 중 1명이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매년 10억 명에 달하는 2~17세 아동이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이나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는 아동과 그 이후 세대에게 장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를 포함한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는 포괄적이고 조정된 개입에 참여하여 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본 기준은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의 예방과 이에 대한 대응을 다룬다. 다른 기준들은 성폭력(기준 9), 아동 노동(기준 12), 군대나 무장 단체에 아동 동원(기준 11) 등 추가적인 유형의 학대에 중점을 둔다.

### 기준

아동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으며, 맥락에 적절하고 각 젠더, 연령, 장애에 맞는 대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8.1. 핵심 활동

### 대비

- 8.1.1. 아동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학대 위험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다음 요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한다.
- 기존의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과 관행 및 행동
  - 젠더, 연령, 장애
  - 모든 관련 법률과 정책
  - 학대 예방 및 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현재 관행
- 8.1.2.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학대 사례를 식별하고, 이관하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한다.
- 8.1.3.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현지 전략을 파악하고 강화한다.
- 8.1.4.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행동 강령 및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들이 이에 서명하게 한다. (기준 2 참고)
- 8.1.5.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밀이 유지되는 이관 경로 및 사례 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기준 18 참고)
- 8.1.6. 모든 사회 복지사와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진행하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 학대의 징후 파악
  - 아동의 안전 조사
  -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제공자의 능력 판단
  -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 등 일차적인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기준 10 참고)
- 8.1.7. 현지, 국가, 국제 단위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방임을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방임을 모든 관련 조사와 매핑 및 데이터 수집 활동에 포함한다.
- 8.1.8. 아동 및 돌봄제공자와 협력하여 다음에 관한 아동 친화적이고 포괄적인 인식 제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달한다.
- 학대의 정의와 형태
  - 학대의 영향
  - 학대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 대응



8.1.9. 돌봄제공자가 긍정적인 대처 및 보육 기술을 습득하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준 16 참고)



8.1.10. 교사 및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훈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1.11. 학대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아동에게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기밀이 유지되는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과 해당 아동의 돌봄제공자를 안전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지원 절차의 각 단계에 포함시킨다.



8.1.12. 위기 아동에게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을 비롯한 긍정적인 대응 기술과 건강한 또래 관계를 지원하는 젠더, 연령, 장애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한다. (기준 10, 15참고)

8.1.13.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여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겪는 심리사회적 고통의 징후와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기준 10 참고)

8.1.14. 학교를 포함한 커뮤니티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1) 커뮤니티 내에서 학대에 대한 사회적 오명을 약화시키고, (2)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을 지원한다. (기준 17, 23 참고)



8.1.15. 정부가 모든 민간 영역, 공공 영역, 기관 또는 격리 환경, 이주 환경 등에서 벌어지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14, 20 참고)



8.1.16. 전염병 발생 기간에 분리 또는 격리되어 있는 아동이 지속적인 신체적 및 심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과 계획을 이행한다. (예컨대, 해당 아동을 한 명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도 있다.)



## 8.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8.2.1. 신체·정서적 학대로 인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아동 중 그러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고한 아동의 수와 비율	100%	이 지표를 특정 서비스(예: 보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사례 관리, 법적 지원)에 맞게 국가별로 조정한다.
8.2.2. 신체·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최근 주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대응 프로그램에 통합된 전략의 비율	90%	각 국가 내에서 정의하는 ‘최근’(예: 지난 3개월 이내)의 의미를 파악한다.

## 8.3. 지침

### 8.3.1. 방임

방임은 다양한 형태(신체적, 의료적, 정서적, 교육적, 관리감독적<sup>supervisory</sup>, 관계적)를 취할 수 있으며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방임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발달과 웰빙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주의 환경에서의 방임에 관한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방임을 학대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모든 조사, 매핑, 데이터 수집 활동에서 방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8.3.2. 신체·정서적 학대와 폭력

학대와 폭력 모두 의도적인 행위이지만, 폭력이 책임과 돌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 낯선 사람에 의한 폭력은 학대가 아니다.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와 폭력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 이동의 제한
- 조롱, 위협, 협박
- 폭행, 구타, 고문
- 납치
- 살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아동이 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해당 아동이 다른 형태의 폭력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와 폭력의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체적 부상(화상, 골절, 뇌 손상 등)
- 심리사회적 웰빙과 정신건강 저하
-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인지적 손상
- 유독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기적인 질병
- 사망

‘성 및 젠더기반폭력’으로 불리는 성적인 학대와 폭력은 **기준 9**에서 다룬다.

### 8.3.3. 사회적 규범

특정 형태의 폭력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있다는 식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속될 수 있다. 인도주의 상황은 폭력과 학대를 조장하는 사회적 규범을 재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해로운 사회적 규범과 태도는 장기화된 위기 상황, 혹은 인도주의 상황에서 개발 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시행되는 장기적 개입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

### 8.3.4. 위험 요인

위험은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인도적 위기는 돌봄제공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증대와 보호 요인의 약화로 인해 아동이 학대 당할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젠더, 연령, 장애, 교육 수준 등 *개인 차원의 요인*
- 분리, 사망, 가족 구조의 변화, 양육 스트레스, 약물 남용, 유기 등 가족과 돌봄제공자 차원의 요인
- 빈곤, 열악한 주거, 사회적 규범, 실항 등 커뮤니티 차원의 요인
- 광범위한 분쟁, 기근, 전염병 발생, 빈약한 법 체계, 부실한 법 집행, 차별적 정책 등 사회 차원의 요인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차원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 **기준 14~17** 참고)

### 8.3.5. 아동의 회복력

인도적 지원 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아동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학대 위험과 발생률을 줄이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동에게 연령에 적합한 기술 제공

- 협의회 촉진
- 교사, 부모, 돌봄제공자,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의 보호 역량 강화 (기준 16, 23 참고)

### 8.3.6. 기밀유지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학대 사례에 대응할 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 아동의 피해 사례를 듣게 될 수도 있는 모든 개개인-사회 복지사, 커뮤니티 또는 보건 담당 활동 주체, 법 집행 관계자, 교육자 등-은 기밀유지 원칙,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아동이 원하는 바와 권리,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 주체들이 아동과의 면담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면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칙 및 기준 5, 18 참고)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HO, 2006. [Available in Arabic, English, French, Chinese, Italian, Spanish.]
- *INSPIRE Handbook: Action for Implementing th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
- *Guidelines for the Health Sector Response to Child Maltreatment*, WHO, Geneva, 2019.
- *Ac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ARC) Resource Pack: A Capacity-building Tool for Child Protection in and after Emergencies*, ARC Steering Committee, Save the Children, 2009.
- *'Child Abuse and Neglect'*, NICE Guidan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7.
- *'Recognising Child Abuse and Neglect'*, NICE Pathway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 Elliott, Leilani, Claire Whiting, Hannah Thompson and Christina Torsein, *Child Neglect in Humanitarian Settings: Literature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Response*,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8.
- *Alternative Care in Emergencies Toolki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eparated and Unaccompanied Children, 2013.

## 기준 9: 성 및 젠더기반폭력

*이 기준은 원칙, 기준 10: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기준 12: 아동 노동,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4: 보건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성폭력'은 성인 혹은 다른 아동보다 힘의 우위를 가진 아동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성폭력에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젠더) 차이를 바탕으로 가해지는 모든 유해한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다. GBV에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가하겠다는 위협, 강압, 그리고 여타 형태의 자유의 박탈이 포함된다.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은 생존자와 가족 및 커뮤니티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든 아동이 SGBV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아-특히 청소년기 여아-의 경우 젠더와 연령으로 인해 SGBV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낙인 그리고 젠더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남아에 대한 성폭력은 대부분 보고되지 않으며, 남성 생존자를 위한 지원 메커니즘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성별 특성을 지닌 아동은 고유한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한다.

SGBV는 널리 퍼져 있지만 대체로 감춰져 있고 과소 보고된다.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는 SGBV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SGBV를 경감하고 예방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개입으로, 다분야 대응을 필요로 한다. 모든 아동 생존자는 사회적 장벽과 낙인으로 인해 지원과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모든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SGBV 위험을 예방하고 경감할 책임이 있다. 아동 생존자를 대하는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아동 생존자를 위한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 기준에서 '아동 생존자'는 유해한 관행을 포함한 SGBV의 생존자를 가리킨다. 유해한 관행에는 예컨대 초혼이나 여성성기훼손/절단이 포함될 수 있다. 아동 대상의 SGBV에 더 잘 대응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제시된 모든 핵심 활동을 여러 GBV 활동 주체들과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서로의 활동을 보완하고 중복을 피해야 한다.

# 기준

모든 아동이 성 및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로부터 보호받으며, 각자의 젠더, 연령, 장애, 발달 단계, 문화적/종교적 배경에 적합한 생존자 중심의 대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9.1. 핵심 활동

### 대비

- 9.1.1. GBV 예방 및 아동 생존자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이를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GBV 조정 그룹 및 활동 주체와 협력하고 조정한다. (기준 18 참고)
- 9.1.2. 2차 데이터 검토를 통해 기존의 SGBV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필요한 정보 유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IASC GBV Guidelines)을 참고한다.
- 9.1.3.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안전에 대한 그들의 우려와 견해를 이해한다.
- 9.1.4. 다음과 관련된 유형과 역량을 매핑하여 이관 경로를 구축한다.
  - 현재 아동 친화적인 생존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공식 및 비 공식 서비스 제공자
  - 아동 생존자가 향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진입점



### 예방

- 9.1.5. 피해 예방을 위해 SGBV 이슈에 관여하기 이전에 미리 커뮤니티가 기본적인 SGBV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9.1.6. 교육, 생활 기술 훈련, 양육 프로그램,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기준 16 참고)
- 9.1.7.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SGBV를 조장하고 촉진하며 아동 생존자에게 낙인을 찍는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을 다룬다. 유해한 사회적 규범과 젠더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개발할 때에는 다양한 수요를 가진 아동과 성인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준 14~18 참고)






## 대응

### SGBV 위험 경감



- 9.1.8. SGBV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다루며,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한다.
- 9.1.9. (1)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안전 문제, (2)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포함하여, 아동이 직면한 SGBV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룬다.
- 9.1.10.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SGBV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구축한다.

### SGBV 대응

- 9.1.11. GBV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아동 생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관하는 경로를 개발하고, 이를 강화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급성 위기 발생 시에는 보건, 사례 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안전/안보 같은 우선적인 서비스가 포함된 최소한의 이관 경로를 구축한다. 
- 9.1.12. 이관 경로에 관한 정보를 모든 서비스 제공자와 아동, 돌봄제공자, 커뮤니티가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9.1.13. 모든 아동에게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성별/젠더, 연령,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아동, 조혼 아동, 인신매매된 아동, 보호자 미동반 아동,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도 특별한 수요를 갖고 있을 수 있다.
- 9.1.14.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양질의 사례 관리 서비스에 아동 생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9.1.15. 필요할 경우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구축하여 그들도 아동 생존자를 위한 양질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8 참고) 
- 9.1.16.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아동 생존자를 위한 적절한 대안적 돌봄을 파악한다. 대안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을 모니터링 한다. (기존 19 참고)
- 9.1.17. 아동 생존자가 신속하게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 및 바우처지원이나 현물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사례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파악한 이후에만 제공해야 한다. 사례 관리 개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9.1.18. 아동과 협의하여 SGBV 메시지를 아동 보호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 제고 활동에 통합시킨다. 메시지에는 아동 생존자의 권리, 위험을 신고할 장소, SGBV 대응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9.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9.2.1. 현재 아동 생존자를 위해 젠더, 연령, 장애, 문화를 민감하게 고려한 대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목표 장소의 비율	90%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 내에서 합의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집계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에는 다양한 수준의 대응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9.2.2. SGBV 대응 서비스를 받은 아동 또는 돌봄제공자 가운데 해당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보고하는 아동 또는 돌봄제공자의 비율	국가 또는 상황에 따라 결정	구조화된 면담(후속 조치 기간에 식별한 아동 또는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을 통해 이 지표를 측정하도록 한다. 아동 생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이 면담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 지표를 특정 서비스(예: 보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사례 관리, 사법)에 맞게 국가별로 조정한다.

## 9.3. 지침

### 9.3.1. 사회적 규범 및 젠더 규범

(기준 17 참고)

SGBV의 근본 원인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태도와 믿음, 규범,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젠더 불평등을 뒷받침하는 규범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생존자의 건강과 안전, 안보에 눈에 띄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규범 및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개입은 (1)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2) 기본적인 SGBV 대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상황은 SGBV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유해한 사회적 규범과 젠더 규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유해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려면 SGBV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개인의 태도만이 아닌 사회적 기대의 변화
- 달성한 변화를 널리 알림
- 새로운 규범과 행동의 장려 및 강화

### 9.3.2. 생존자 중심 접근법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생존자의 권리와 원하는 바가 존중되고, 생존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생존자가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받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이행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안전:**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의 안전과 안보가 일차적인 고려 사항이다.
- **기밀유지:** 생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생존자에 관한 정보는 그들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기밀유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과 아동의 돌봄 제공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한계에는 아동의 신체·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사례 관리 기관이 해당 환경에 존재하는 법과 정책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법과 절차는 모든 조치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존중:** 모든 활동은 생존자의 선택, 희망 사항, 권리,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력자의 역할은 회복을 촉진하고 생존자를 돕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비차별:** 생존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연령, 장애, 종교, 국적, 민족성, 기타 다양성 요인과 무관하게 동등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동 생존자를 대하는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원칙에 더해 **아동 최선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활동에 특정 아동의 안전과 웰빙 및 발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아동이 고유한 존재이며 SGBV로부터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동은 각자의 성숙도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부모/돌봄제공자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 9.3.3. 의무 보고

의무 보고란 특정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제의 또는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을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가 법률과 정책을 가리킨다.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 정책에는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 주체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한 의무 보고가 포함된다.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와 서비스 제공자는 현지, 국가, 국제, 기관 차원의 의무 보고 법률이나 정책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1) 아동 생존자와 돌봄제공자에게 보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2) 모든 조사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동 생존자와 돌봄제공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받아야 한다.



### 9.3.4.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위기 발생 시점에는 SGBV 발생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 아니다. SGBV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생존자로부터 받은 충분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보안 및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 데이터 수집은 아동 생존자를 지원하고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에서 개발한 것과 같은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다. 개별 사건이나 종합적인 사건에 관한 정보는 심지어 전문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sup>need-to-know</sup>을 바탕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기밀유지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통해 세이프가딩되어야 한다. 사건 데이터를 조사 기간에 수집하거나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원조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의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으면 생존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개별 아동, 특정 가족,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 *아동 생존자에 대한 돌봄*(5장)에는 성숙도와 관련된 문제나 인지 기능 손상/장애를 고려한 연령에 따른 동의/합의 지침이 포함된다.

### 9.3.5. 조혼

(기준 18 참고)

조혼은 많은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GBV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아동, 특히 여아와 커뮤니티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혼과 관련된 위험 요소와 사회적/문화적 관행 파악
- 조혼과 관련된 사례 관리 기준 이해
- 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에 다음 사항 포함
  - (모든 아동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조혼 위험 요인
  - 결혼한 아동, 임신한 여아, 아동/청소년 부모가 가진 구체적인 수요(결혼한 여아는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 조혼을 예방하고 (2) 이미 결혼했거나 부모가 된 아동을 지원하는 개입을 위해 (GBV 전문 활동 주체, 성과 재생산 보건의로 및 권리 활동 주체를 포함한) 다분야 활동 주체와 협력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결혼을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아동과 가족 및 다른 활동 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 처한 상황 및 해당 아동이 원하는 바에 대한 이해
- 안전 현황 조사 및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
- 정보와 지원 제공
- 아동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지적인 사람 및 서비스와 연결

안전과 아동 최선의 이익은 최우선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아동이 즉각적인 안전 문제에 직면한 경우에는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보호 선택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서비스로 해당 아동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CEF, 2012.
- *Inter-Agency GBV in Emergencies Minimum Standards*, 2019.
- *Child Protection: Thematic Area Guide for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5.
- ‘*GBV Responders Network – Keeping Women and Girls Safe: Resources for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Humanitarian Settings*’, IRC. [Website]
-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in Emergencies: Free Online Course*, UNFPA.
-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ing, Documenting and Monitoring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WHO, 2007.
- *Interagency Gender-based Violence Case Management Guidelines: Providing Care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to Gender-based Violence Survivors in Humanitarian Settings*, 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 Steering Committee, 2017.

- *'What Work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Girls and Women'*,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4. [Website]
- *'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 [Website]
- *Inter Agency Guidelines for Case Management and Child Protection*,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4.



## 기준 10: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4: 보건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인도적 위기는 아동과 아동의 돌봄제공자에게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적 및 사회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고통의 주요 원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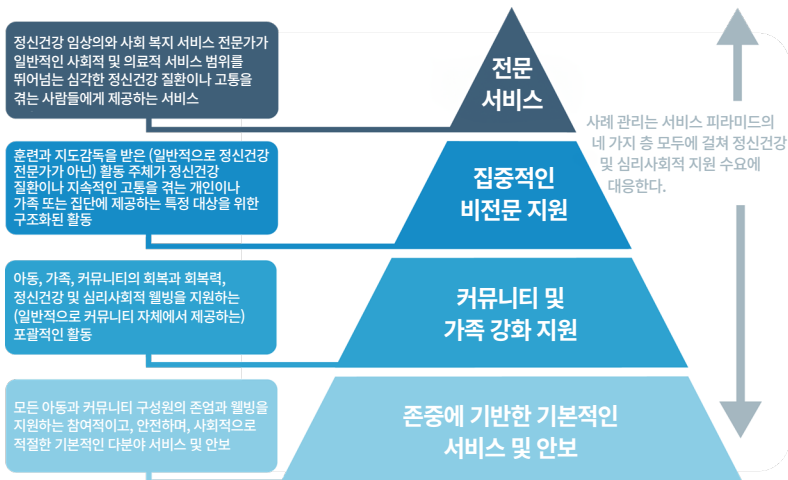
-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사건에 대한 노출
- 가족 구성원의 사망 또는 가족 구성원과의 분리
- 기본적인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 안전 및 안보의 미비
- 실향
- 가족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지원 시스템의 약화

고통이 경감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대응 전략(예: 약물 사용, 행동 문제, 자해)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아동과 돌봄제공자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신건강 질환을 겪을 수 있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은 심리사회적 웰빙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고 정신건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유형의 지원을 가리킨다.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가이드라인』, 2007).

고통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회복력’)은 다음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연령, 발달 단계, 장애 상태
- 기본적인 생존 및 안보 수요 충족을 위한 접근성
- 본인 및 돌봄제공자가 가진 기존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 돌봄제공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
- 돌봄제공자가 받는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
-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예: 커뮤니티 지원 및 물질적 자원)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피라미드



### 기준

아동과 아동의 돌봄제공자가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웰빙이 개선되는 경험을 한다.

## 10.1. 핵심 활동

### 대비

- 10.1.1. 다음을 포함한 기준 정보에 대해 기관 간 다분야 매핑과 분석을 실시한다.
- 기존의 공식 및 비공식 MHPSS 서비스
  - 정신건강 질환, 고통, 심리사회적 웰빙, 대응 메커니즘에 대한 문화적 이해
  -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가진 위험과 보호 요인
  -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가진 기존의 역량과 훈련 관련 수요
  - 정신건강 질환의 유형과 유병률에 관한 세분화된 데이터
- 10.1.2. MHPSS를 긴급 상황 대비 계획에 포함시킨다.



- 10.1.3. 아동 보호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기본적인 지지적 경청 기술 및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
  - 정신건강 질환 및 고통의 징후
  - 이관 메커니즘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Information Sharing Protocol, 정보 공유 프로토콜)
  -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가이드라인』과 『인도적 지원 시 장애인 포괄에 관한 IASC 지침』(IASC Guidelines on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 10.1.4. 기존 가족, 커뮤니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MHPSS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10.1.5. 모든 직원과 관계자의 웰빙을 위해 기관 차원의 MHPSS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기준 2 참고)

**대응**

- 10.1.6. 관련된 기관 간 다분야 조정 메커니즘과 실무그룹에 참여한다.
- 10.1.7. MHPSS 서비스를 분야별 및 다분야 대응 계획과 예산에 포함시킨다.
- 10.1.8. 현지, 국가, 국제 차원의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MHPSS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이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서비스 피라미드 참고)
- 10.1.9. 커뮤니티 민감화<sup>sensitisation</sup>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웰빙에 관한 인식 제고
  - 낙인 및 차별 해소
  -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 10.1.10. 기존의 공식 및 비공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 정보 공유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친화적이며, 의미 있는 MHPSS 제공
  - 아동 및 돌봄제공자의 긍정적인 대응 메커니즘 강화 (기준 15, 16)
  - 주어진 환경에서 보호 요인 강화 (기준 17).
- 10.1.11. 개입 피라미드의 모든 층에서 아동, 가족, 커뮤니티를 위한 총체적인 다분야 MHPSS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서비스 피라미드 참고)
- 10.1.12. 정신건강 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각한 고통의 징후를 보이는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전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0.1.13. 인도적 위기의 성격에 따라 심리사회적 개입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달 방안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 발생 기간에는 그룹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커뮤니티 기반, 가정 기반, 또래간, 일대일 돌봄을 통해 그룹 활동을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난민 또는 국내 실향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구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커뮤니티의 결속을 장려해야 할 수도 있다. 아동이 여전히 무력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룰 활동이 필요하다.
- 10.1.14. 생명과 직결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MHPSS가 강화되고 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10.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0.2.1.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웰빙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비율	70%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비율을 따로 측정하도록 한다. 급성 긴급 상황에서는 상황 악화로 인해 일부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의 성과가 약화될 수 있다. MHPSS를 제공하면 그들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지표는 피라미드의 모든 층에 걸쳐 인도적 개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0.2.2.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서비스로 이관된 아동의 비율	100%	이 지표는 아동 보호 활동 주체의 핵심 역할에 따른 전문 서비스의 성과가 아니라 이관 사례만 추적한다.

## 10.3. 지침

### 10.3.1. 참여

정신건강 질환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 커뮤니티 구성원은 책무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웰빙을 강화하는 MHPSS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10.3.2.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모든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은 18세 이후에도 계속 발달한다. 그러므로 MH-PS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모든 연령대의 아동과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 **출산 전후:** 임신한 여성, 예비 아버지, 유아를 둔 가족을 지원한다.
- **유아기:** 빠르게 발달하는 아동의 두뇌와 돌봄제공자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애착을 지원한다.
- **아동기 및 청소년기:** 지속적인 발달 및 중요한 전환기에 따른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지원한다. 청소년은 사회적 및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스트레스는 이 생애 단계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에 노출된 스트레스로 인해 부분적으로 정신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다. 성인기의 모든 정신건강 장애 중 절반은 14세 이전에 시작되며, 발견되거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 보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아동을 식별하고 이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핵심적인 발달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
- 정신건강 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아동
-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 아동

### 10.3.3.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커뮤니티

돌봄제공자, 가족, 커뮤니티는 아동 보호와 웰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돌봄제공자의 웰빙을 개선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증진하는 가족 차원의 개입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sup>self-care</sup> 장려
- 긍정적인 양육 지원
- 고통받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 가족 애착 강화
- 경제적 안정 지원 (기준 16 참고)

커뮤니티 차원의 개입은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고 낙인과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 (기준 17 참고)

경우에 따라 아동이 가족 내에서 보호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적 돌봄 방식을 포함한 아동을 중심에 둔 시스템과 커뮤니티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19 참고)

### 10.3.4. 정부 및 기타 활동 주체와의 협력

아동 보호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활동 및 다른 모든 분야의 활동은 MHPSS 개입을 위한 진입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동 보호 활동 주체들은 모든 분야 및 정부 부처와 (적절한 경우) 협력하여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조정된 총체적인 MHPSS를 제공해야 한다. (기동 4: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 참고)

### 10.3.5.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

PFA는 위기에 처한 아동과 성인을 위한 인도적이고 지지적인 최초의 대응을 의미한다. PFA는 개개인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안정감, 희망
-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
- 자기 자신과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다는 느낌

PFA는 모든 아동, 커뮤니티 구성원, 인도적 지원 주체가 습득하고 제공할 수 있다.

### 10.3.6.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보다 심각하거나 복잡한 정신건강 질환을 가진 피해인구 구성원에게 필요하다.

- 장기화된 고통
- 자해
- 자살 시도
- 심각한 행동 문제
- 기본적인 일상 생활의 어려움



서비스는 인도적 위기 발생 이전뿐만 아니라 인도적 발생 위기 이후에도 여러 증상을 경험하는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피라미드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보호 활동 주체들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의 징후를 보이는 개개인을 적절히 식별하고 다른 서비스로 이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들이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아동과 돌

봄제공자의 웰빙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례 관리와 대안적 개입(예: 가족 강화 지원 및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운영 지침 - 인도주의 환경에서 커뮤니티 차원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과 가족을 위한 3단계 지원 [현장 테스트 버전]』 (Operational Guidelines -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Humanitarian Settings: Three-tiered Support for Children and Families [Field Test Version], 2018). (기준 16, 17, 18 참고) 정신건강 질환을 가진 아동은 거주형 돌봄(Residential care)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확실히 부합하지 않는 이상 원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항상 아동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남아야 한다. (기준 19 참고)

### 10.3.7. MHPSS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윤리, 기술, 역량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가진 도덕성과 기술 및 역량은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개입의 질, 안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는 MHPSS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 및 촉진 기술을 강화하여 피해인구의 존엄성을 지원해야 한다. 관리감독 메커니즘은 인도적 개입이 품질 기준과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Geneva, 2007.
- *Operational Guidelines –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Humanitarian Settings: Three-tiered Support for Children and Families (Field Test Vers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New York, 2018.
- *Psychological First Aid: Guide for Field Workers*,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 Trauma Foundation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Geneva, 2011.
- *Psychological First Aid Training Manual for Child Practitioners*, Save the Children, 2013.
- *Assessing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Needs and Resources: Toolkit for Humanitarian Settings*, UNHCR and WHO, Geneva, 2012.
- *IASC 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for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Programmes in Emergency Settings*, IASC Reference Group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2017.
- *IASC Inter-Agency Referral Guidance Note for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IASC Reference Group for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Geneva, 2017.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Emergencies: Integrated Programming Guide*, UNICEF, New York, 2014.
- *IASC Guidelines on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2019.
- *Promoting Children’s Development and Wellbeing*, Save the Children, 2018. [Online training]
- ‘*The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Network*’.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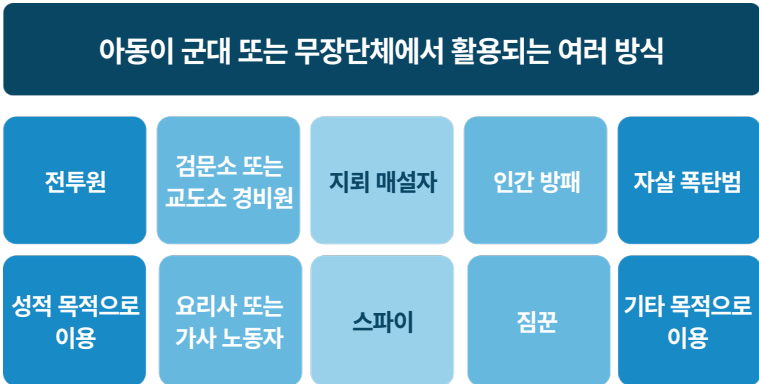
# 기준 11: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9: 성 및 젠더기반폭력, 기준 12: 아동 노동, 기준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0: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CAAFAG)은 어떤 명목으로든 군대나 무장 단체에 징집 또는 동원되어 있거나 그런 적이 있는 18세 미만의- 여아를 포함한-모든 아동을 말한다. ‘징집’은 군대나 무장 단체에 강압적,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으로 입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징집 및 동원은 관련 국제법이나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최소 연령 미만의 아동을 모집하거나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동 징집과 동원은 최악의 아동 노동(Worst Forms of Child Labour)으로 인식된다. (기준 12 참고)

아동은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동원되어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아래 표 참고). 이러한 아동은 흔히 학대나 착취 또는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그러한 행동을 저지를 것을 강요받는다. 징집과 동원은 아동에게서 권리를 앗아가고, 아동과 가족 및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이 맡는 역할



## 기준

모든 아동이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의한 징집과 동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모든 무장분쟁 맥락에서 징집 및 동원된 후 석방되어 효과적으로 재통합된다.

### 11.1. 핵심 활동

#### 대비

- 11.1.1.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상황 분석을 실시한다.
  - 분쟁의 맥락, 특성, 역학 관계
  - 분쟁이 아동, 가족,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젠더, 연령, 장애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양상
- 11.1.2. 징집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할 때 아동, 커뮤니티, 그리고 수행 기관이 직면하는 맥락별 위험을 조사한다.
- 11.1.3. 식별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 11.1.4. 관련된 현지, 국가, 국제 이해관계자와 조정하여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대비 및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 11.1.5. 위험 경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권 침해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존재하는 경우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국가 작업반도 포함)을 조정한다. (기준 6 참고)
- 11.1.6. 아동의 징집 및 동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국가 행위자의 기술 및 운영 역량을 조사하고, 지원하며, 구축한다.
- 11.1.7.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서 벗어나는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프로그램 계획, 공식 및 비공식 석방과 재통합 절차를 조정한다.
- 11.1.8. 공식 석방 및 재통합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든 활동 주체와의 조정을 통해 파리 원칙 및 지침(*the Paris Principles and Guidelines*)에 부합하는 아동 자격 기준을 수립한다.
- 11.1.9. 사생활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아동에 대한 보고 및 아동 면담을 위해 조직 행동강령과 모범사례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기준 3 참고)

#### 대응



- 11.1.10. 아동을 무장 단체에 징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내 법률이나 관행이 바뀔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11.1.11. 모든 아동의 석방을 위해 공식 및 비공식 군대, 무장 단체, 그리고 모든 차원의 당국과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11.1.12. 다른 분야들과 협력하여 군대나 무장 단체로의 징집의 원인을 다루고 지속적인 재통합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11.1.13. 징집을 포함한 아동 권리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여 이를 아동을 중심에 둔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반영한다. (기준 6 참고)
- 11.1.14. 징집에 취약하거나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서 탈퇴한 아동을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 파트너,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한다.
- 11.1.15. 가족과 커뮤니티의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 및 기타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활용한다. (기준 16, 17 참고)
- 11.1.16. 가족과 커뮤니티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동원 및 징집 사례의 모니터링 및 보고
  - 징집 및 동원의 위험 요소 경감
  - 귀환 아동의 수용 (기준 17 참고)
- 11.1.17.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아동,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들의 수용과 커뮤니티 결속을 촉진한다.
- 11.1.18. 징집에 취약하거나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서 탈퇴한 아동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수요를 다루는 사례 관리 서비스(보건, 교육,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생계 서비스 이관 포함)를 수립하고 지원한다.
- 11.1.19. (1)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2) 젠더, 연령, 장애로 인한 차이를 존중하는 아동 중심의 조사 및 청소년 사법 절차를 수립하고 이러한 절차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14, 20 참고)



## 11.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1.2.1. 목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서 탈퇴한 상태를 유지하는 아동의 비율	75%	측정 기간은 조정할 수 있으나, 영향 측정의 의미를 만큼은 길어야 한다. 맥락에 맞게 '목표 프로그램'을 정의하도록 한다.
11.2.2. 군대 또는 무장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가족에 재통합된 아동의 비율	60%	'가족'은 생물학적 가족 또는 대안 가족을 가리킨다. 여기에 제시된 목표는 일부 아동이 가족 환경이 아닌 커뮤니티에 재통합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가족 환경에 재통합된 아동은 커뮤니티에 재통합된 아동과 분리해 측정해야 한다. 측정 기간은 조정할 수 있으나, 영향 측정이 의미있을 만큼은 길어야 한다.

## 11.3. 지침

### 11.3.1. 용어 사용

(1) CAAFAG 혹은 (2) 관련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가리킬 때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 11.3.2. 옹호활동

아동 징집과 동원이 국내법에서 아직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을 위한 옹호활동을 벌여야 한다. 아동 징집과 동원이 금지된 경우, 당국과 이해관계자(상황상 적절한 경우 군대 또는 무장 단체 포함)는 각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받아야 한다. 철저한 위험 조사 이후에 수행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

- 국가 모니터링 및 보고 작업반(Country Taskforce on Monitoring and Reporting, CTFMR)과 합의한 실행 계획의 이행 촉진
- 정부 당국, 군대 또는 무장 단체 구성원,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징집, 석방, 재통합에 대한 훈련 실시
- 지역 및 국가의 법률, 사법, 아동 복지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옹호활동 전개
- 평화 협상 및 협정에서 아동의 참여 촉진

### 11.3.3. 아동, 가족,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아동은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기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연령에 적합
- 다양한 전통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배포
- 징집 및 동원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연령을 규정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 설명
- 징집 위험을 높이는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기타 요인 식별
- 아동 징집과 동원의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 설명
- 모든 유형의 아동 징집과 동원에 대한 커뮤니티의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 해결
- (1) 아동을 징집과 동원으로부터 보호하고 (2) 귀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커뮤니티가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 설명
- 징집과 동원에 특히 취약한 아동 대상

### 11.3.4. 가족 분리 및 아동 징집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징집 위험이 더 크다. 핵심적인 커뮤니티 구성원과 집단은 가족 분리, 징집, 재징집에 취약한 모든 아동을 식별하고 지원 대상으로 삼되 이때 낙인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 및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통합을 장려해야 한다. (기준 13, 16참고)

### 11.3.5. 석방

군대나 무장 단체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동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모든 아동은 무력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아동의 석방 또는 탈퇴 여부를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 적대 행위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종식
- 공식적인 평화 합의 또는 발표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 과정
- 군대 또는 무장 단체 내에서 아동의 역할
- 아동의 무기 소지 여부 또는 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 긴 검증 과정

다음과 같이 아동이 군대나 무장 단체를 떠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 낙인에 대한 두려움
- 소득과 인간 관계 및 소속감의 상실
- 가족과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자부심

아동은 군대나 무장 단체를 떠날 때 옷이나 위생용품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용품은 수용되는 문화적, 상황적, 가족/커뮤니티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군대나 무장 단체에 연루된 적 있는 아동에 대한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은 권장되지 않는다. 다른 아동과 가족을 군대나 무장 단체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나 무장 단체를 떠나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건, 교육,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11.3.6. 아동 보호

무장 단체에 연루된 적 있는 아동은 인권 침해의 피해 생존자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구금, 수사, 기소, 고문,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 구금되어 있을 경우, 석방 지원
- 재통합 서비스 지원

형사 책임 연령이 넘는 아동과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되어 있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구금 여부는 국제 청소년 사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금 대신 다른 대안이 권장된다. (기준 20 참고)

### 11.3.7. 선별 검사, 현황 파악, 연령 검증

지속적인 선별 검사, 현황 파악, 연령 검증을 통해 아동이 언제 군대나 무장 단체에 소속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여아를 포함해 다음과 같은 아동을 식별하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비전투적인 역할에 복무하는 아동
-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아동
- 전투원의 아내 또는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는 아동

- 독립적으로 또는 비공식적 석방 절차를 통해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서 탈출했거나 탈퇴한 아동

선별 및 검증 기술을 개발할 때 이미 신원이 확인된 아동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동이 기존의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서 벗어난 직후 아동 친화적인 면담 기법을 활용해 즉각 해당 사례를 문서화해야 한다. 여야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수요와 우려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 사례관리자가 혼합된 팀을 구성해야 한다.



### 11.3.8. 임시 돌봄

많은 아동이 석방 직후 자신의 가정과 커뮤니티로 귀환하거나 가족 기반의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어야 한다. 임시 돌봄은 즉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가족을 추적해야 하는 아동에게 제공된다. 가족 기반의 임시 돌봄은 경유/임시 돌봄 센터와 같은 시설 돌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준 19 참고)

### 11.3.9. 가족 추적 및 재통합

아동을 재통합하기 위한 대비 조치는 차별, 폭력, 추가 징집의 위험과 위협을 줄여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재통합 전에 아동의 가족이 해당 아동을 수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재통합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다. 거부 또는 기타 심각한 우려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 기반의 대안적 돌봄을 모색해야 한다. (기준 13, 19참고)



국경을 넘나드는 추적 및 재통합 시에는 석방에 필요한 자료의 문서화를 모든 관계자가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11.3.10. 재통합

재통합 활동은 (1) 아동이 군대 환경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내에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2) 커뮤니티 구성원이 석방된 아동을 다른 아동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대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통합 과정은 (1)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며, (2) 아동, 가족, 커뮤니티의 강점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젠더, 연령, 장애, 환경에 따른 아동의 개별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재통합은 아래에 제시된 목표를 위해 군대 또는 무장 단체를 떠난 아동과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동 모두를 지원해

야 한다.

- 낙인이나 보복의 위험 경감
- 군대 또는 무장 단체 가입 시 얻게 되는 이득 축소
- 모든 피해 아동이 기존의 보호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공평성을 크게 증진
- 가족의 권한과 긍정적인 커뮤니티 구조를 약화시킬 위험의 제한

커뮤니티 차원의 재통합 활동에는 평화구축 및 사회적 결속 활동, 인식 제고 및 행동 변화, 커뮤니티 차원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이니셔티브가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아동은 출신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와 옹호활동은 그러한 아동이 다른 커뮤니티로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활동과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1.3.11. 여아의 석방과 재통합

여아는 특히 성적으로 학대당했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전문적인 대응과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석방과 재통합 서비스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 9 참고)

### 11.3.12.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보호

아동과 가족의 개인 정보는 매우 중요한 기밀정보로 취급해야 한다. 예방, 석방, 재통합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모든 정보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은 개인 데이터 보호, 그리고 목적과 필요성 및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분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준 5 참고)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Field Handbook on Child Recruitment, Release and Reintegration*, Paris Principles Steering Group, 2019.
- *Integrated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Standard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DDR, New York, 2007.
- *Operational Guide to the Integrated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Standard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DDR, New York, 2014. [Update p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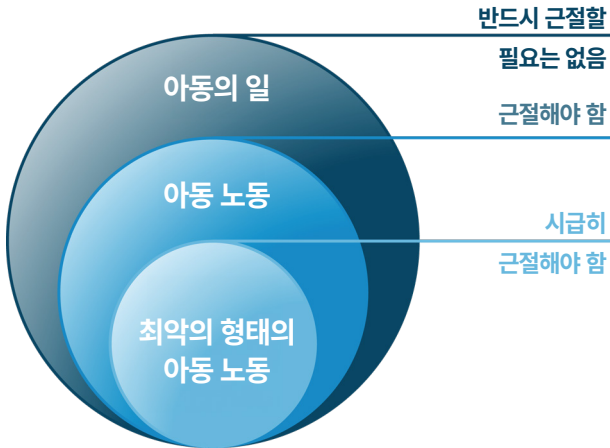


## 기준 12: 아동 노동

이번 기준은 원칙, 기동 2: 아동 보호 위협에 관한 기준,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1: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기준 22: 생계와 아동 보호, 기준 23: 교육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아동 노동은 아동의 유년기와 잠재력 및 존엄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아동 노동은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며 정서적, 발달적, 신체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아동 노동자는 강제 노동, 무장 단체 징집,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불법 노동, 위험한 노동을 포함한 최악의 아동 노동(Worst Forms of Child Labour)에 종사한다. 인도적 위기는 기존의 아동 노동의 발생률과 심각성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아동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 (기준 9, 11 참고)

아동 노동의 형태



각국의 법률은 법정 노동 가능 최저 연령, 아동에게 허용되는 일의 종류, 근절해야 할 일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협약 제182호는 (1)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최악의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2) 최악의 아동 노동을 시급히 근절할 것을 권고한다.





# 기준

모든 아동이 특히 인도적 위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인도적 위기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최악의 아동 노동을 비롯한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 12.1. 핵심 활동

### 대비

- 12.1.1.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역 및 국가 단위 활동 주체, 법률, 정책, 실행 계획, 사회적 규범 등에 관한 맥락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도적 위기가 아동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한다.
- 12.1.2. 아동 노동이 이미 존재하는 문제일 경우, 지역 및 국가의 인도주의 대비 계획에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포함시킨다. 
- 12.1.3. 다분야 인도주의 및 개발 활동 주체-특히 사회적 서비스 인력과 아동 보호, 교육, 사회적 보호, 생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 주체-가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 노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12.1.4. 식량 불안, 실업, 분쟁, 휴교 등 아동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과 기존의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한다.
- 12.1.5. 아동, 가족, 커뮤니티에게 (1) 법정 노동 가능 최저 연령 미만 또는 이상의 아동에게 허용되는 (가벼운) 형태의 일과 (2) 아동 노동 및 최악의 아동 노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연령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대응

- 12.1.6. 업데이트된 상황 데이터 및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유해 노동 목록을 활용하여 가장 흔한 아동 노동과 최악의 아동 노동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아동과 커뮤니티를 포함한 핵심 활동 주체와 협력한다.
- 12.1.7. 최소한 다음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아동 노동 및 최악의 아동 노동 발생률을 추정한다.
  - 노동 가능 최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 노동자의 수
  - 아동 노동자의 노동 시간
  - 아동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 (분야, 업무, 조건)

- 12.1.8. 아동과 함께 안전한 참여적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을 이해한다.
  - 아동 노동에 임하거나 임하지않게 만드는 요인<sup>push & pull factors</sup>에 대한 아동의 견해
  -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형태의 노동
  -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



- 12.1.9. (상황상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아동 노동/인신매매에 반대하는 다분야 활동 주제 및 국가 위원회와의 조정을 통해 아동 노동을 다루는 전략을 개발한다.

- 12.1.10. 아동 노동의 위험과 결과, 특히 인도적 위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인도적 위기로 인해 악화되는 형태의 아동 노동과 최악의 아동 노동에 관한 핵심 메시지를 배포한다.



- 12.1.11. 최악의 아동 노동 예방 및 그러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12.1.12. 최악의 아동 노동으로 인한 즉각적이고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목표로 한 활동을 수행한다.



- 12.1.13. 아동, 가족, 커뮤니티가 아동 노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2.1.14. 아동 노동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아동과 가족을 다음을 포함한 서비스와 연결하여 학교 중퇴 등 부정적인 대응 전략을 예방한다.

-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 직업 훈련
- 기본적인 수요
- 가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법정 노동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경로



- 12.1.15. 이미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맞춤형 아동 보호 사례 관리(Child Protection Case Management, CPCM)
-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 가족의 경제적 권한 강화 같은 다분야 서비스
- 법정 노동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경로



- 12.1.16. (1) 이주 상태이거나 자주 이동하는 아동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고 (2) 기존의 모든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Child Labor Monitoring System, CLMS)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 간 이관 시스템 및 사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 12.1.17.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옹호하는 동시에, 그들 또는 그들의 돌봄제공자가 서비스,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벽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 12.1.18. 아동 노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며, 법정 노동 가능 연령에 속하는 아동 및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고용주, 노동자 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킨다.



## 12.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2.2.1. 위험한 상황에 처한 가족 내 아동 중 예방 지원을 통해 아동 노동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는 아동의 비율	100%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현지 차원에서 아동 노동 위험 요인을 정의해야 한다.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위험군으로 식별된 아동이 들어가야 한다. 예방 개입에는 식량, 현금 또는 생계 지원, 교육, 아동 보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00%라는 목표 수치는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 100%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12.2.2.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식별된 아동 중 아동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아동의 비율	80%	이 지표는 아동 노동의 유형(예: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용어를 통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기간을 추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12.2.3. 위험군으로 식별된 가족 중 예방 지원을 받는 가족의 비율	90%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가족 차원에 존재하는 아동 노동 위험 요소를 정의해야 한다.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조사 또는 모니터링 기간에 위험군으로 식별된 가족이 들어가야 한다. 예방 개입에는 식량, 현금 또는 생계 지원, 교육, 아동 보호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12.2.4. 아동 노동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주의 분야 전략의 비율	100%	예방 분야에는 교육, 아동 보호, 식량안보, 생계, 보건이 포함될 수 있다. 각국 내에서 측정 대상으로 삼을 분야를 결정하도록 한다.

## 12.3. 지침

### 12.3.1. 아동 노동 위험 요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 소득 빈곤
- 아동 노동이 지속되게 하는 사회적 규범
-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 식량안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부족

상황에 따라 특히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이 포함될 수 있다.



- 이미 노동 중인 아동
- 아동이나 노인 또는 성인 한 명이 가구주인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 장애 아동, 혹은 장애를 가진 돌봄제공자와 생활하는 아동
-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무국적자
- 특별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신분을 가진 것으로 식별된 아동
- 미등록 아동
- 인신매매된 아동

### 12.3.2.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모든 대응은 (1) 아동을 위험한 작업이나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시키고 (2) 시급한 보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히 최악의 아동 노동 등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 최소한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젠더, 연령, 장애를 민감하게 반영한 아동 보호 사례 관리
- 이관 서비스
-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안적 돌봄 (기준 19 참고)

최악의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을 위한 추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적절한 법 집행 및 안보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네트워크에 연루된 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즉시 안전하게 분리
- 안전하고 적절한 경우 아동, 가족, 고용주 사이에서 협상이나 중재 촉진
- 가족 추적 및 재통합을 기다리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 제공
  - 첫 만남에서 전문적인 검사 실시
  - 위험 현황 조사
  - (상황상 적절한 경우) 임시 돌봄 시설에 배치
- 법정 노동 가능 최저 연령 미만으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을 해당 노동에서 분리
- 법정 노동 가능 최저 연령 이상이면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이 (1)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되고 (2)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에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12.3.3.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

노동 사찰단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다.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동 노동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을 인도적 지원 서비스에 이관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동원한다. 인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수립된 사례 관리 및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난민, 국내 실향민, 아주민,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아동은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아동 노동 관련 이슈는 아동 보호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



### 12.3.4.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

모든 분야의 인도적 지원 주체는 자신이 제공하는 지원이 아동을 아동 노동 또는 최악의 아동 노동으로 내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 경감 전략에는 (1)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을 이행하고, (2) 연령 식별 기술을 활용해 아동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 노동(예: 배분, 건설, 잔해 제거)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은 법정 노동 가능 최저 연령이 지난 아동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he IOM Handbook on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IOM, 2007.
- *Inter-agency Toolkit: Supporting the Protection Needs of Child Labourers in Emergencies (Draft for Field-testing)*, Child Labour Task Force and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기준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9: 대안적 돌봄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가족 분리는 고의적 원인과 비고의적 원인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인도주의 환경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UASC)은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제공자나 여타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가리킨다. 가족과의 분리는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상당한 장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분리는 예방 가능하다.

인도적 대응은 분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에게는 항상 재결합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야 하며, 부모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아동을 ‘고아’라고 칭하도록 한다.

참고: 본 기준에서는 UAS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UASC가 현재 해당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아동을 인도주의적 노력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용어를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Children who are unaccompanied and separated)’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sup>1)</sup>

### 기준

가족 분리가 예방되며,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이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안전하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돌봄과 보호를 제공받는다.

1) 원문은 기준에 적용된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이라는 용어에서 ‘Unaccompanied and Separated’가 ‘Children’의 정체성으로 제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Children who are unaccompanied and separated’, 즉 ‘Children’을 중심에 둔 새로운 표현을 쓰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인’(Disabled People) 대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표현을 지향하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윤진이 주)

## 13.1. 핵심 활동

### 대비

- 13.1.1. (1) 적절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다루고 (2) 가족 분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및 국가 차원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매핑하고 검토한다.
- 13.1.2. 가족에게 출생 등록의 중요성을 알린다. (지침 14.3.3 참고)
- 13.1.3. 아동 분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아동 보호 및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조화시킨다.
- 13.1.4. 모든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UASC)을 적절히 식별하고, 돌보고,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며,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와 커뮤니티 자원 봉사자의 역할을 구축한다.
- 13.1.5. 다수의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을 수용하는 지역의 관련 활동 주체들(각 분야의 담당자, 국경 및 이민 담당자 포함)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 분리 예방을 위한 방법
  - UASC 식별 방법
  - 해당 맥락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위험
  - 즉각적인 돌봄과 지원과 같은 적절한 대응 조치
  - 이관 메커니즘
- 13.1.6.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족 분리 예방에 관한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메시지를 취약한 아동, 가족, 커뮤니티,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기준 3, 15, 16, 17 참고)
- 13.1.7. 기존의 적절한 대안적 돌봄 방안을 지원한다. (기준 19 참고)

### 대응

- 13.1.8.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인도적 위기 발생 기간과 발생 이후에 가족 분리의 규모, 근본 원인,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 가족 분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맥락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조정
- 13.1.9. 위기 발생 후 2주 이내에 정보, 사례 관리, 이관 시스템의 필수 요소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및 조정 체계와 협력한다.
- 13.1.10. 사례 관리와 즉각적인 가족 추적 및 재통합에 필요한 훈련된 직원과 수송 장비를 충분히 확보한다.





- 13.1.11. 아동 보호 안내 데스크나 선별 지점을 주요 장소(예: 리셉션, 도착 장소, 학교, 식량 배분 센터, 병원 등) 또는 계획에 따른 인구 이동이 진행되는 장소에 위치시켜 가족 분리를 식별하고 예방한다.
- 13.1.12. 피해 아동과 성인을 등록하고 문서화하고자 하는 기타 활동 주체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다음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 친화적인 절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대피
  - 대규모 인구 이동
  - 의료 대피, 검역, 격리
- 13.1.13. 프로그램과 메시지가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한 자발적인 또는 우발적인 가족 분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다른 분야와 협력한다.
- 13.1.14. 사례 관리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이 원칙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가족 추적, 대안적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 재통합과 관련된 결정도 포함된다. (기준 18, 19 참고)
- 13.1.15. (난민인 아동을 포함한) UASC가 교육을 비롯한 지원, 보호, 서비스 등에 대해 동등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선시한다.
- 13.1.16. 법원,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 절차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가족 통합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13.1.17. 가족 추적에 성공했으나 (1) 가족 재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2)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아동과 가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상황상 적절하다면 만남이나 연락을 촉진한다.
- 13.1.18. (1) 가족 통합과 커뮤니티 재통합을 지원하고 (2) 재통합된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다분야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13.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3.2.1.	상황에 맞게 조정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와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UASC를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예 (마련되고 포함됨) UASC와 가족 추적을 고려하는 보완적인 사례 관리 양식을 참고한다.
13.2.2.	등록 후 2주 이내에 가족 식별 및 재통합이 시작된 것으로 식별된 UASC의 비율	90% 2주가 최대 기간이다. 이 기간은 위험의 수준 (위험 수준이 높으면 3일, 위험 수준이 중간이면 1주, 위험 수준이 낮으면 2주)에 따라 더 줄어 들 수도 있다.
13.2.3.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제공자와 재통합하거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식별된 UASC의 비율	80% 기간(예: 프로젝트 지속 기간까지 포함)을 늘리려면 이 지표를 수정하도록 한다.
13.2.4.	등록 후 X일 이내에 양질의 임시 돌봄을 받은 보호자 미등반 아동의 비율	100% 각국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양질의 임시 돌봄에 관한 정의를 참고하도록 한다.

## 13.3. 지침

### 13.3.1. 초기

갑작스러운 인도적 위기 발생 후 처음 24~48시간 이내에는 아래 도표에 정리된 핵심 단계에 따라 가족 분리를 예방하고, 가족 재통합을 돕고, 가족 추적을 개시하도록 한다.

*가족 분리 예방, 가족 재통합, 가족 추적 개시를 위한 핵심 단계*

- 상황을 조사한다.
- 일반적인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사례(예: 영유아 및 장애 아동의 사례)를 신속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임시 돌봄을 추진한다.
- 아동에 대해 알려진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고, 옷과 장난감, 기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물건을 포함해 아동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보관한다.
- 돌봄제공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여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 아동과 함께 머물
  -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을 돌보고 등록함
- 돌봄제공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여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 13.3.2. 가족 통합 유지

인도적 지원 주체는 당국, 커뮤니티, 가족과 협력하여 가족 분리를 조사하고, 가족 분리의 원인을 이해하며, 커뮤니티 차원의 해결책을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영유아, 아동, 장애 아동에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인식표나 손목 팔찌 부착
- 아동에게 그들의 가족의 신원, 집, 비상 집합소 등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 제공
- 당국 및 기타 활동 주체와의 옹호활동을 통해 가족 분리에 기여하는 정책이나 절차 또는 관행 검토

안전이 보장된다면, 아동이 자신의 법적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가족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맥락화된 조치는 특히 커뮤니티가 분산되어 있는 비(非)캠프<sup>non-camp</sup> 또는 도시 맥락에서 중요하다. 모든 관련 활동 주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 인구를 대피시키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아동이나 돌봄제공자에게 검역 또는 격리 조치를 내리는 경우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른 분야의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리 위험이 있는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 13.3.3. 조정

모든 활동 주체는 (1) UASC를 표준운영절차(SOP)에 포함시키고 (2) 국가 또는 국제 가족 추적 활동에 참여하는 핵심 활동 주체를 식별하여 아동 분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맥락	핵심 주체	서비스
국내 실항	클러스터와 국가 당국	
무력 분쟁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가족 찾기 활동(Restoring Family Links, RFL)
국경 간 이동	국내 적신월사(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난민 발생 맥락	UNHCR 및 국가 당국	최선의 이익 절차
이주 맥락	국제이주기구(IOM)	

### 13.3.4. 식별

분리는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인도적 대응 초기 혹은 분리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에게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관 간 식별 및 이관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1) 분리의 ‘유인 요인’을 만들거나 (2) 아동이 어디론가 보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커뮤니티에 UASC를 식별하는 목적을 알려야 한다.

아동 보호 ‘안내 데스크’나 선별 지점은 주요 위치(등록 장소, 의료시설, 시장 등)에 설치해 핵심적인 분야별 활동 주체(이민 담당자, 구금 시설 종사자 등)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아가 누락되거나 숨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성한 질문을 활용해야 한다. 캠프 관리, 배분, 난민 등록 담당 직원은 해당 가족의 원 구성원이 아닌 아동, 가구주인 아동, 혼자 사는 아동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과 연령 및 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 13.3.5. 등록, 조사, 문서화

임시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와 가족 추적 및 재통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아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때에는 정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준 18, 19 참고) 훈련받은 직원은 불필요한 고통이나 추가적인 분리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례 관리, 문서화, 조사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매우 어린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데려올 경우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과 즉시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5세 미만 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 수집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실종 아동은 해당 아동을 찾고 있는 가족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등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13.3.6. 추적

‘추적’은 실종된 아동, 아동이 잃어버린 부모, 법적 또는 관습적 주 돌봄제공자, 기타 가까운 가족을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추적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시 돌봄을 위한 선택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가급적 가족 기반의 임시 돌봄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19참고)

추적은 사례별로 혹은 전체 집단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추적 활동은 적절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각기 다른 방법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공적인 추적이 항상 가족 재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13.3.7. 검증

‘검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

- 주장된 관계의 진실성 판단
- 아동 최선의 이익 조사
- 재통합에 아동 및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지 확인

검증은 아동을 재통합하기 위한 조건을 조사하고 아동이 잘못된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검증 기간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시민등록부와 협약을 맺으면 상황상 적절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원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아동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중재가 필요하고 또 적절할 수도 있다.

### 13.3.8. 가족 재결합 및 재통합

‘재결합’은 상황상 가능하고 안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아동과 가족 또는 과거의 주 돌봄제공자를 결집시켜 장기적인 돌봄을 수립하거나 재구축하는 과정이다. 난민 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절차뿐만 아니라 자발적 송환 절차도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재결합은 국제 기준 및 관련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잘 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 가족, 커뮤니티, 임시 돌봄제공자는 가족 및 커뮤니티 차원의 조정된 다분야 지원을 통해 재결합을 준비해야 한다. 가족 분리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접근법은 가족들이 재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통합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맞춤형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13.3.9. 후속 조치

가족 분리, 특히 장기적인 분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변하고, 성숙하고, 인생을 뒤 바꾸는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다. 가족이 처한 상황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재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1) 아동과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2) **아동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 피드백에 대응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과 후속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커뮤니티 차원의 모니터링은 이러한 후속 조치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 13.3.10. 맥락화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맥락화된 용어 정의는 관습적인 돌봄과 가족 관계에

대한 현지 차원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모든 활동 주체는 일관성 있게 동일한 정의를 사용해야 하며, 피해인구가 그러한 정의를 문화적 규범에 따라 현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Field Handbook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IAWG UASC and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Toolkit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IAWG UASC and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Guidelines on Assessing and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18 Provisional Release*, UNHCR, 2018.



**기둥 3:**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 기둥 3 소개: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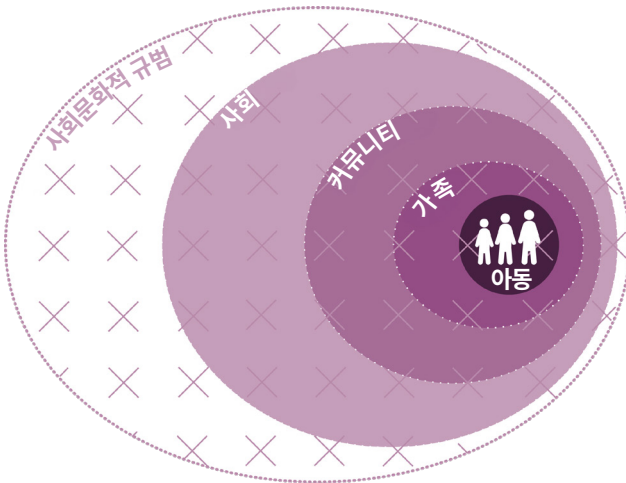
이번 기준은 기준 15~20: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원칙 9: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와 함께 속지하도록 한다.

이 섹션에 제시된 기준들은 기둥 2에 소개된 아동 보호 위험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접근법 및 개입을 설명한다. 기둥 3은 사회생태학적 모델과 아동 보호 시스템 사고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원칙 9 참고), 적절한 경우 인스파이어(INSPIRE) 전략과 연계된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상호연결된 차원의 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아동 발달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아동이 자기 자신 및 또래의 보호와 웰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 아동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양육되지만, 때로 이 차원에 다른 친밀한 관계도 포함
- 가족은 커뮤니티 안에 자리
- 커뮤니티는 더 광범위한 사회 형성

아동 보호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4가지 차원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시스템 사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1) 모든 다양한 요소와 요인을 식별하고 (2) 그러한 요소와 요인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 상황을 살펴본다.

시스템 사고는 단일한 보호 문제만 살피거나 특정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대신, 아동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근본 원인, 모든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려한다. 시스템 사고는 사업 이행 기간 전반에 걸쳐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통합하고 그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증진한다.

사회생태학적 모델과 아동 보호 시스템 사고는 아동 보호를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 보완적 프레임워크다. *INSPIRE* 패키지도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전략을 세운다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입 참고)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생태학적 차원	INSPIRE 전략	INSPIRE 아이콘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사회에 중점을 두되 모든 차원 고려	모든 7가지 전략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아동	교육 및 생활 기술 안전한 환경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가족	부모 및 돌봄제공자 지원 소득 및 경제력 강화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커뮤니티	안전한 환경 규범과 가치관	
기준 18: 사례 관리	주로 아동과 가족에 중점을 두되 사회도 고려	대응 및 지원 서비스	
기준 19: 대안적 돌봄	주로 아동과 가족에 중점을 두되 커뮤니티와 사회도 고려	부모 및 돌봄제공자 지원 대응 및 지원 서비스	
기준 20: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	주로 사회에 중점	대응 및 지원 서비스 법률의 이행 및 집행	

아동 보호 시스템은 보다 ‘공식적인’ 요소와 보다 ‘비공식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기준 15, 16, 17은 아동과 가족 및 커뮤니티에 집중한다. 이 기준들은 아동 보호 시스템의 비공식적인 요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도주의 맥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기도 하다. 기준 18, 19, 20은 아동 보호 시스템의 공식적인 요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준 18, 19은 다양한 보호 우려사항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특정한 인도적 개입을 다룬다.



## 기준 14:



#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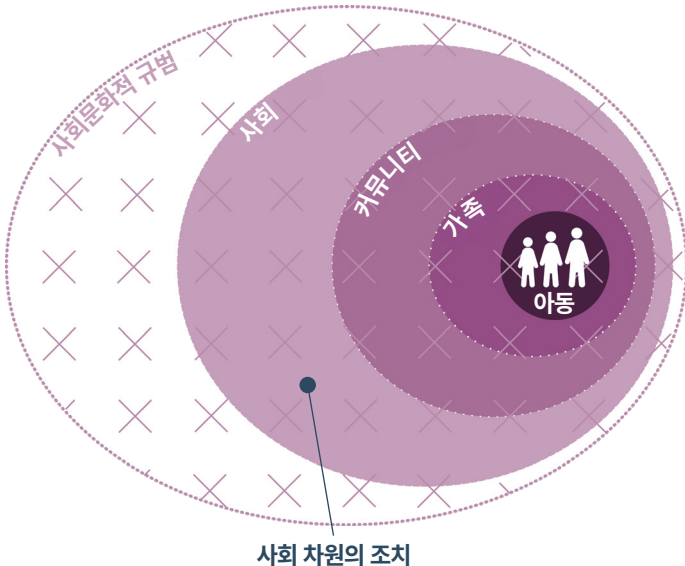


아동 보호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려면 아동,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수반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해야 한다. (기동 3: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참고) 본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소개한다.



-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4가지 차원을 모두 다루는 활동
- 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며 다른 기준에서는 다루지 않는 활동 (법률과 정책 강화, 그리고 아동 보호와 사회 복지, 출생 등록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포함)

아동 보호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사회적 차원



# 기준

아동, 가족, 커뮤니티, 사회가 아동 보호와 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원한다.

## 14.1. 핵심 활동

### 대비

- 14.1.1. 아동, 가족, 커뮤니티, 사회 차원에서 아동 보호 위험 및 회복력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 14.1.2. 아동 보호를 위한 기존의 공식적 및 전통적/관습적 법률과 정책, 절차, 서비스를 매핑한다.
- 14.1.3. 커뮤니티 및 국가 차원의 아동 보호 파트너와 시스템, 서비스의 역량을 구축한다.
- 14.1.4. 인도적 위기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의 간극을 식별하고 개혁한다.
- 14.1.5. (1)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에 존재하는 간극과 (2) 인도적 위기에 대응할 때 동원 가능한 핵심 파트너를 식별한다.
- 14.1.6. 인도적 위기 이전과 도중 및 이후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 가족, 커뮤니티, 사회 차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 14.1.7. 특정 집단을 아동 보호 및 광범위한 보호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기존의 모든 법적, 정책적, 관행적 장벽을 식별한다.
- 14.1.8. 그러한 장벽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권리 이행을 보장한다.
- 14.1.9. 모든 재난 대비 및 대응 계획에서 아동 보호 위험을 다루고, 비상 대책 및 대비 계획에 충분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실시한다.

### 예방

- 14.1.10. 인도적 위기가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4가지 차원에서 위험 및 회복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 14.1.11.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4가지 차원에서 가족 분리와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현지, 국가, 국제, 기관 간 전략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14.1.12. 다음을 바탕으로 한 예방 전략이 수립되도록 한다.

-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의 협의
- 위험 및 회복력 요인에 대한 분석
-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INSPIRE* 전략

14.1.13. (적절한 다른 다분야 활동 주체와 함께) 아동을 위한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식별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기관 간 계획을 수립한다.



14.1.14.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기존의 법적 제도, 법률, 정책, 절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14.1.15. 아동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률, 정책,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이행을 강화한다.



14.1.16. 아동,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가 주도하는 예방 조치가 포함된 아동 보호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 대응

14.1.17. 아동 보호 대응 계획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4가지 차원을 모두 다룬다.

14.1.18.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1) 아동 보호 위험과 관련된 그들의 서로 다른 지식과 태도 및 관행을 파악하고, (2) 위험, 적절한 대응,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4.1.19. 기존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과거의 조사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위기와 연관성을 가짐
- 모든 피해 아동에게 적절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임
- 대응 계획에 통합됨

14.1.20. 아동 보호 시스템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고 다음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품질 개선
- 위기에 영향을 받은 특정 지역에서의 서비스 확대
- 모든 피해 아동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 조정

14.1.21. 어떠한 아동 집단이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지 식별하고, 그러한 아동이 맞닥뜨린 구체적인 장벽을 식별하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14.1.22. 기존 시스템이 특정 아동 집단에게 불충분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모든 차원에서 보완적인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14.1.23. 혁신적인 긴급 아동 보호 서비스와 정책 및 절차를 기존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통합한다.

- 14.1.24. 모든 관련 아동 보호 기준과 도구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국가, 국제 인도적 지원 주체의 역량을 구축한다.
- 14.1.25. 모든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주체의 아동 보호 역량을 구축한다.
- 14.1.26.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 14.1.27. 출생 등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14.1.28. 서비스 및 아동 보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피해 커뮤니티, 국가 당국, 인도적 지원 주체를 대상으로 진척 상황과 위험 및 도전과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14.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4.2.1. 인도적 대응 계획(Humanitarian Response Plan, HRP)에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각 차원에 대한 목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예(포함됨)	이 지표는 각 차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하지만 보고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
14.2.2.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서로 다른 차원을 반영하는 위험 및 회복력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용 가능하다.	예(이용 가능함)	분석도 대비 또는 대응의 일부일 수 있다(분석에 포함할 요소는 아래 14.3.1 참조).
14.2.3.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4가지 차원에서 시행된 위험 및 회복력 요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비율	80%	
14.2.4.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시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서로 다른 차원을 참고한 프로그램의 비율	80%	

## 14.3. 지침

### 14.3.1. 위험 및 보호 요인 조사와 모니터링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음을 포함한 위험 및 보호 요인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 아동의 웰빙 및 보호



- 주요한 아동 보호 이슈와 관련된 위험 및 회복력 요인
- 아동의 권한 강화 또는 차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포함하여 가족, 커뮤니티, 사회 내에서 아동이 갖는 역할과 책임
- 아동, 가족, 커뮤니티를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 전략
- 기존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규범, 태도,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인사, 옹호자
- 공식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성 요소,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와 서비스가 (1) (국내 법률, 정책, 절차를 포함한) 비공식 시스템 및 (2) 아동 보호 인력의 위기 대응 역량과 갖는 연결성
- 특히 아동 보호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을 경우,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특정 아동 집단이 직면한 장벽

### 14.3.2. 사회생태학적 차원

아동 특유의 강점과 취약성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어린 아동은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주 돌봄제공자에게 의존하며 위기로 인한 혼란을 이해하기 어려움
- 나이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가진 수요 중 일부를 스스로 다룰 수 있지만 가족과 분리되거나,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되거나, 노동에 동원되거나, 착취당할 위험 등이 더 높음

가족 및 다른 친밀한 관계와 또래들은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호막이다. 돌봄제공자와 친한 또래는 아동의 회복력과 지지의 원천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 경제적 고난
- 사회적 고립
- 사망, 이혼, 강제 분리로 인한 가족 구성 및 역할의 변화
- 보호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메커니즘의 상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이 폭력, 조혼, 아동 노동, 자발적인 가족 분리를 경험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커뮤니티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적 위기 상황에는 보통 이러한 잠재력이 줄어든다. 커뮤니티 구성원이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정 아동



집단이 차별이나 배제와 관련해 더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커뮤니티 내 보호 요소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차별을 포함한 위험 요인을 다루어야 한다.

아동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은 위험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1)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및 문화적 신념 체계와 사회적 규범, (2)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법률과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동 보호 및 광범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규정하는 법적 틀과 정책 프레임워크 조사
- 기존의 보호적인 법률과 정책 강화 및 이행
- 필요할 경우 법률과 정책이 국제법적 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원

난민 또는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특정 아동 집단을 국내의 아동 권리 및 아동 보호 관련 법률과 기준 및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정책의 변화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 14.3.3. 출생 등록 및 기타 형태의 문서화

출생 등록은 아동의 권리 및 보호를 지원하며, 아동의 신원과 가족 관계 및 국적을 문서화한다. 출생 증명서가 없는 아동은 무국적 상태를 포함해 다양한 보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출생 증명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생 등록은 반드시 정부의 주민등록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출생 등록률은 많은 나라에서 낮게 나타난다. 분쟁, 재난, 실항은 출생 등록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필요한 문서의 분실 또는 파기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의 출생 증명서 발급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아동 출생 시 보건 분야 활동 주체, 지자체, 전통적인 당국 등이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 지역에서 출생 등록 서비스를 재구축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이동식 출생 등록 서비스 포함) 제공
- 피해 가족에게 아동 출생 기록의 중요성과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 긴급 상황에 처한 가족이 아동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 옹호

- 복잡한 상황에 처한 가족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아동과 가족이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형태의 등록이나 신분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 난민 등록(아동 친화적인 비호 절차 포함)과 아동 친화적인 국내 실향민 등록
- 민원 서류 관련 서비스(혼인 및 사망 증명서 포함)
- 영사 서비스(여권 등)

#### 14.3.4.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 강화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에는 취약한 아동과 가족을 대신하여 일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와 준전문가가 포함된다. 현지, 국가,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 복지 서비스 활동 주체와 정부는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공식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준전문 사회 복지사와 협력하고 그들을 고용 및 훈련시킬 수도 있다. ‘준전문 사회 복지사’는 공식적인 자격은 없지만 아동과 가족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일부 갖추고 있는 직원이나(보통 커뮤니티 기반) 자원봉사자를 가리킨다.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일하는 인력의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 보호 분야가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 수립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2~3년 이내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이 계획은 인도적 대응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 지리적 수요, 현실과의 간극 등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의 인적 자원 역량과 수요를 매핑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비용이 책정된 다년간의 기관 간 계획 수립
- 기존의 국가 역량 및 긴급 혁신(emergency innovations)을 바탕으로 사례 관리, 대안적 돌봄,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속 및 제도화
-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비롯해,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1) 혁신적이고 조정된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2) 역량 강화가 아동 보호에 관한 현지 지식과 모범 사례,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과 같은 핵심 원칙, 기밀유지, 책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 훈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을 위한 기준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을 국가 인증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SPIRE Handbook: Action for Implementing th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
- *Ten Steps to Creating Safe Environments for Children and Youth: A Risk Management Road Map to Prevent Violence & Abuse*, Canadian Red Cross, 2007.
- *‘Adapting to learn, learning to adapt’: Overview of and Considerations for Child Protection Systems Strengthening in Emergencies*,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Operational Guidelines –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Humanitarian Settings: Three-tiered Support for Children and Families (Field Test Vers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New York, 2018.
- *Guidelines to Strengthen the Social Service Workforce for Child Protection*, UNICEF, 2019.
-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8: Child Asylum Claims under Articles 1(1)2 and 1(F)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9/08, UNHCR, 2009.



## 기준 15:

#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기준 18: 사례 관리와 함께 속지하도록 한다.

그룹 활동에 대한 아동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아동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그룹 활동은 아동이 예측 가능하고 활력을 북돋는 환경에 모여 안전하게 머물고, 학습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지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1) 취약한 아동이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을 식별하고 (2) 적절한 이관을 지원하여 보호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룹 활동은 정상감도 제공해줄 수 있다.



때로 그룹 활동은 일반적으로 ‘아동 친화 공간(Child-friendly Space, CFS)’이나 ‘안전한 공간’으로 지칭되는 고정된 공간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은 아웃리치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룹 활동은 특정 창작(animators) 집단이 다양한 장소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동식 활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활동 장소는 젠더, 연령, 장애, 기타 여러 측면의 다양성을 지닌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선정된다. 이 기준은 *인스파이어(INSPIRE)* 전략의 ‘교육 및 생활 기술’과 ‘안전한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다.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비공식 교육
- 조직적이고 자유로운 놀이
- 예술과 공예
- 스포츠
- 회복력과 생활 기술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교육
- 가족과 커뮤니티의 아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육아 및 지원 그룹



## 기준

아동이 (1) 보호와 웰빙 및 학습을 증진하고 (2)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맥락과 연령에 적합한 접근법을 통해 제공되는 그룹 기반의 체계적인 활동에 접근하여 지원을 받는다.

### 15.1. 핵심 활동


#### 대비

- 15.1.1. 아래와 같은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 활용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기존의 그룹 활동과 인적 자원
  - 활동을 수행하기에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장소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하며 현지 및 문화에 적합한 레크리에이션 자료
- 15.1.2. 다른 분야와 협력하여 제공 중인 서비스를 그룹 활동 및 공간에 통합한다. (기준 1, 21~28 참고)
- 15.1.3. 아동 보호 조정 그룹과 협력하여 최신의 서비스 매핑과 이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준 1, 18 참고)
- 15.1.4. 이관 경로를 설명하는 접근 가능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표를 개발하고, 이를 아동, 가족, 커뮤니티와 공유한다. (기준 1, 18 참고)
- 15.1.5. 다음과 같은 핵심 지식과 기술에 대한 활동을 관리하고 촉진할 직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 아동 발달
  - 아동과의 커뮤니케이션
  - 아동 중심 접근법
  - 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사례 관리 이관 등) 보호 우려사항의 식별과 이관
- 15.1.6.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 및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아동과 교류할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기준 2 참고)
- 15.1.7. 교육 분야와 협력하여 공식 교육과의 경쟁 없이 교육적 측면을 그룹 활동에 통합하는 공동 대비 계획을 개발한다. (기준 1, 23 참고)



## 대응

- 15.1.8. 아동, 돌봄제공자, 커뮤니티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정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참여적인 기관 간 조사에 참여하여 (1) 추가 그룹 활동이 필요한지, (2) 어떻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질적 수준이 높고 상황적/문화적으로 적절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기준 4 참고)
- 15.1.9. 이용 가능한 공간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기존 공간 가운데 그룹 활동을 위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파악한다.
- 15.1.10. 다음과 같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동과 그들의 돌봄제공자, 커뮤니티를 충분히 참여시킨다.
- 아동과 가족의 수요 충족
  - 기술 개발
  - 회복력 구축
- 15.1.11. 다른 분야와 협력해 위생 메시지 전달, 식량안보 배분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룹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 15.1.12. 안전하고 적절한 경우, 그룹 활동의 구성 및 운영의 모든 측면(예: 목적, 설계, 일정, 관리, 참여, 모니터링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 및 수용 커뮤니티의 아동과 성인을 포함시킨다.
- 15.1.13. 제안 받은 그룹 활동의 구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피해 및 수용 커뮤니티에 알린다.
- 15.1.14. 모든 구조화된 그룹 활동 일정을 피해 및 수용 커뮤니티와 공유한다.
- 15.1.15. 아동, 가족, 커뮤니티의 의미 있는 참여를 반영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15.1.16. 아웃리치를 실시해 일반적으로 그룹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는 아동을 식별하고 그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 15.1.17. 각기 다른 연령, 젠더, 장애, 기타 관련된 다양성 요소를 가진 아동을 충분히 참여시켜 다음과 같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포괄적임
  - 접근이 가능함
  - 아동의 수요와 선호에 적합함
  - 기술을 향상시킴
  - 회복력을 구축함
  - 교육 또는 기타 필수 서비스와 병립 가능함
- 15.1.18.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으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합의를 받은 후에 그들을 그룹 활동에 등록한다.

- 15.1.19. 매일 출석을 기록한다.
- 15.1.2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이 아닌) 영숫자 코드를 사용해 기록을 보관한다. (기준 5 참고)
- 15.1.21.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감독 및 지원을 제공한다.
- 15.1.22. 다양한 아동 및 아동의 가족과 협력하여 (1)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아동 친화적인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2) 우려사항 보고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널리 배포한다. 
- 15.1.23. 관련 활동 주체들과 협력하여 (1) 광범위한 복구 계획이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전환 절차와 연결되어 있는 단계적 종료 또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 피해 및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료 계획, 전환 계획, 인수인계 계획 등을 알린다.

## 15.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5.2.1. 모든 아동이 문화, 젠더, 연령을 민감하게 고려한 그룹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의 비율	90%	맥락에 따라 ‘문화, 젠더, 연령을 민감하게 반영한 그룹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한다. ‘모든 아동’에는 비혼모, 장애 아동,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기타 접촉하기 어려운 아동이 포함된다.

## 15.3. 지침

### 15.3.1. 적절성 및 접근법

추가적인 그룹 활동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의 공간과 서비스 및 활동을 식별하고, 지원하며, 강화한다. 필요하다면 수요 및 보호 관련 위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을 설계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누가 수행할 것인지
- 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 시설이 필요한지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조달한 재활용된 혹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그룹 활동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한다. 활동은 모든 아동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외부 활동 주체가 진행하는 그룹 활동은 장기적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더욱 지속 가능하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의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15.3.2. 포괄 및 비차별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고유한 수요와 특성에 맞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및 아동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식별한다. 또한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 및 가족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러한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일정은 학교와 관련된 활동, 종교적 활동, 기타 활동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유연한 일정 관리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 일하는 아동
- 형제자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친척, 장애를 가진 부모 등을 돌보는 아동
- 부모인 아동



### 15.3.3. 청소년

청소년은 특정한 수요와 관심사, 기술, 역량을 갖고 있다.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그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아를 비롯한 청소년이 맞춤형 활동을 설계하고 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각종 결정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 15.3.4. 유아기 발달<sup>Early Childhood Development</sup>

그룹 활동은 대체로 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0~2세(주 돌봄제공자 동반), 3~5세 아동에게는 별도의 공간/시간대와 맞춤형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기 발달/기타 분야의 직원과 협력하여 해당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그룹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아동의 부모/돌봄제공자를 참여시켜 아동의 애착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과 심리사회적 웰빙, 뇌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달상 적절한 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5.3.5. 생활 기술



모든 생활 기술 활동을 설계하고 제공할 때 아동의 연령, 아동이 처한 서로 다른 맥락, 사회적 규범, 개별 아동의 수요와 관심사를 고려해야 한다. 항상 교육이나 생계 등의 생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도 협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서적 웰빙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생활 기술도 제공해야 한다.

### 15.3.6. 가족 및 커뮤니티의 아동 보호 역량

아동을 위한 그룹 활동은 아동의 돌봄제공자를 직접 지원해 아동 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 활동은 돌봄제공자를 여성 단체와 아동 보호 위원회 등 커뮤니티 차원의 시스템 및 그룹과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 긍정적 훈육 세션 등 돌봄제공자를 위한 활동을 통해 아동을 위한 그룹 활동을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한다. (기준 14, 16, 17 참고)

### 15.3.7. 분야 통합적 접근법

아동 보호 분야와 교육 분야는 비공식 및 공식 교육을 보완하는 그룹 활동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기준 23 참고)

그룹 활동을 제공하는 활동 주체들은 조정 그룹을 통해 다른 분야(예: 보건, 영양, 급수, 공중 위생 및 개인위생(Wash, Sanitation and Hygiene, WASH))의 공식 및 비공식 현지 활동 주체나 국제 활동 주체와 협력해야 한다. 즉 협동과 공동 이행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협동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통합적인 또는 주류화된 다분야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조화롭게 조정
- 중복 방지(기준 1, 21~28 참고)

### 15.3.8. 안전 및 안보

그룹 활동(아웃리치, 이동식 프로그램 활동 포함)이 진행되는 모든 장소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위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 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 잠재적인 물리적 위험 요소
- 도로, 병영, 분쟁 지역 등 안전하지 않은 장소와의 거리
- 커뮤니티와의 잠재적 갈등
- 아동이 단체 활동 중 혹은 단체 활동을 하러 가는 도중에 징집, 납치,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

어떤 장소에서 단체 활동을 진행하려면 식별된 모든 위험을 경감해야 한다. 해당 공간은 다음을 포함해 안전, 공중위생, 보건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적절한 환기와 그늘 또는 난방
- 충분한 조명
- 깨끗한 식수 이용 가능
- 여아와 남아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남녀 분리 화장실 이용 가능
- 월경 위생 관리(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HM)를 위한 용품
- 소화기
- 응급처치 장비

아동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직원이 필요하다. 아동 대 성인의 비율은 활동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성인 진행자 2명당 권장되는 아동의 수는 다음과 같다.



- 5~9세 아동 20명
- 10~12세 아동 25명
- 13~18세 아동 30명



### 15.3.9. 전염병 발생

**전염병 발생** 기간에는 그룹 활동 제공과 관련해 반드시 보건, 그리고 WASH 분야 활동 주체와 논의해야 한다. (1) 치료나 검역 또는 격리 중인 아동이나 (2) 돌봄제공자가 치료 시설에 입원한 아동을 위해 그룹 활동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인력은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전염병 발생에 대해 아동 및 커뮤니티와 적절히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15.3.10. 이동식 활동



(1) 이동성이 높은 인구, 분산된 인구 혹은 이재한 인구가 많거나 (2) 안보 문제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맥락에서는 그룹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이동식 그룹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중한 계획이 필수적이며, 이는 안전과 지속 가능성(예: 커뮤니티 구성원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 제공)을 뒷받침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난민, 국내 실향민 혹은 이주민인 아동의 이동성이 매우 높아 자주 이동할

수도 있다. 그룹 활동과 서비스는 이렇게 아동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임시 및 단기 쉼터와 숙소
-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 인터넷 연결
- 기본적인 심리적 응급처치

이주 및 이재 경로에 따라 그룹 활동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조정과 정보 공유는 서비스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이동 중인 아동을 더 잘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he Toolkit for Child Friendly Spaces in Humanitarian Settings*, World Vision International and IFRC Reference Centre for Psychosocial Support, 2018.
- *Early Child Development Kit: A Treasure Box of Activities (Activity Guide)*, UNICEF.
- *Guidance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8.
- *Key Considerations for Child Protection-focused Mobile Service Delivery*, Global Protection Cluster, 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2017.
- *'SHLS Approach', Safe Healing and Learning Spaces Toolkit*,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16.
- Hermosilla, S., J. Metzler, K. Savage, M. Musa, and A. Ager, *'Child Friendly Spaces Impact Across Five Humanitarian Settings: A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19:576, 2019.



## 기준 16:

#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19: 대안적 돌봄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모든 아동은 분쟁, 재난, 실항의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하다. 고난과 박탈에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상태와 교육, 발달, 웰빙이 해를 입을 수 있다.

많은 아동은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하고 자란다. 이를 ‘회복력’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몇몇 보호 요인은 회복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돌봄 및 보호 환경
- 반응적<sup>responsive</sup>이고 지지적인 돌봄제공자
- 건강한 돌봄제공자-아동 관계

‘돌봄 환경’은 아동이 살아가는 고유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및 인적 생활 환경을 의미한다. 돌봄 제공에는 공식적인 법적 방식을 비롯해, 돌봄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비공식적 방식도 모두 포함된다.

직접 돌봄제공자는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아동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접 돌봄제공자는 어머니, 아버지, 다른 가족 구성원, 심지어는 친척이 아닌 사람일 수 있다. 직접 돌봄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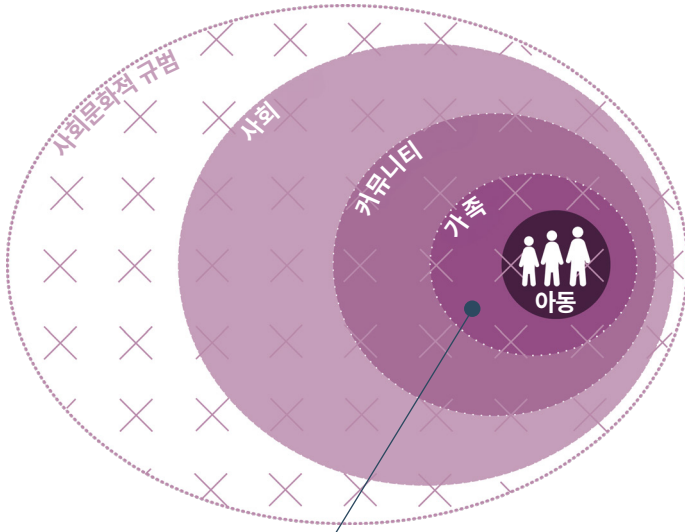
-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정신적 수요 충족
- 아동과 지속적인 돌봄 관계 구축
-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직접 돌봄제공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특히 인도주의 상황에 대처하는 아동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봄제공자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돌봄제공 능력은 분쟁이나 재난, 실항 상태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의 경험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 돌봄제공자의 웰빙에 영향

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경제적 고난, 기존의 정신 질환, 사회적 고립, 사망이나 이혼 또는 강제 분리로 인한 가족 구성과 역할의 변화, 보호적인 커뮤니티 메커니즘의 상실 등에 의해 심화 될 수 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가족 차원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전염병 발생 시에는 검역과 격리 등 질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에 의해 돌봄제공자가 아동의 수요에 대응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이 가족 갈등, 부정적인 대처 전략, 기타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

이 기준은 *인스파이어(INSPIRE)* 전략의 ‘부모 및 돌봄제공자 지원’과 ‘소득 및 경제력 강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기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증진하고 아동을 학대 및 고난의 여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 및 돌봄 환경이 강화된다.

# 16.1. 핵심 활동

## 대비

- 16.1.1.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젠더, 연령, 장애, 기타 연관성 있는 다양성 요인을 고려한다.
- 16.1.2. 가능하다면 항상 젠더, 연령, 장애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 16.1.3. 아동과 커뮤니티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수집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익명화해 인도적 대응에 반영한다.
- 16.1.4. 아동, 돌봄제공자,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1) ‘가족’, ‘양육’, ‘육아에 관한 문화적 신념과 (2) 아동을 보호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이해한다.
- 16.1.5. 인도적 위기가 다음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가족 시스템
  - 커뮤니티 시스템
  - 젠더와 사회적 규범, 가족 역할, 소득과 사회적 배경에 따른 성인과 아동의 역할과 책임
  - 새로운 혹은 기존의 긍정적 및 부정적 대응 기제와 규범 및 행동
- 16.1.6. 전통적인 양육 및 친척의 돌봄 관행과 이를 활용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아동의 돌봄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기준 19 참고)

기준 16



- 16.1.7. 가족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기존의 다분야 서비스, 공식적 및 비공식적 서비스, 현지, 국가, 국제 차원의 서비스의 질을 매핑하고 조사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인 아동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문서화한다. (기준 17, 18, 19 참고)



- 16.1.8.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는 포괄적인 가족 강화를 위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돌봄 환경
  - 위험의 수준
  - 개입 관련 선택지




- 16.1.9. 취약한 가족이 보호 문제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여주는 서비스(예: 생계 및 식량 안보 지원, 교육, 충분한 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한다.




## 예방

- 16.1.10. 아동, 돌봄제공자,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현지 상황과 다양한 돌봄 환경에 맞

는 증거 기반의 가족 강화 개입을 개발하고, 맥락화하고, 조정한다. 돌봄제공자가 가족 강화 대응의 설계와 이행 및 주도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

- 16.1.11. 지원이 필요한 돌봄제공자를 적절히 식별하고 그들을 다른 서비스로 이관할 수 있도록 다분야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 16.1.12. 양질의 가족 강화 개입을 이행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활동 주체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지도한다.
- 16.1.13. 부정적 대응 기제, 특히 인도적 위기와 관련된 대응 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 돌봄제공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 16.1.14. 가족 강화 개입을 통해 모든 취약한 가정의 적절한 식별과 아웃리치, 포괄, 그리고 참여를 촉진한다.

## 대응

- 16.1.15. 돌봄제공자의 정신 건강, 심리사회적 웰빙, 양육 기술을 강화하는 개입을 실시한다. (기준 10 참고)
- 16.1.16. 사회적 집단, 또래 지지 집단, 자조 집단,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예: 소셜 미디어와 전화)을 지원하거나 구축해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기준 18 참고)
- 16.1.17. 가족, 돌봄제공자, 아동 가구주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공한다.
  - 긍정적인 돌봄 관행의 학습 및 적용
  - 돌봄제공자-아동의 관계 개선
  - 적절한 자기 돌봄 실천
- 16.1.18. **청소년**인 돌봄제공자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돌봄제공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맞춤형 개입을 제공한다. 
- 16.1.19. 장애를 가진 돌봄제공자나 아동을 위해 공평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 16.1.20.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및 아동 보호 사례 관리(Child Protection Case Management, CPCM) 활동 주체와의 조정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한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족 내 아동은 폭력적인 훈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 16.1.21.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현지 및 국가 차원에서 유해한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다룰 수 있도록 국가 법률을 변화시키는 개입에 더해 가족 강화 개입도 실시한다. 
- 16.1.22. 위험에 처한 돌봄제공자와 가족을 식별하고 그들을 사례 관리를 비롯한 적절한 다분야 서비스로 이관한다.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사례관리자가 대안적 돌봄 시스템을 통해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준 18, 19 참고)

## ➡ 16.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6.2.1. 가족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위한 돌봄 및 보호 행동 관련 지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는 대상 돌봄제공자의 비율	90%	
16.2.2. 가족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게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는 대상 돌봄제공자의 비율	90%	
16.2.3. 돌봄제공자가 가족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돌봄제공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8~17세 아동의 비율	90%	

## 16.3. 지침

### 16.3.1. 개입을 위한 접근법과 방법

가족 환경을 성공적으로 강화하는 개입을 위한 접근법과 방법의 유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목표로 하는 성과
- 다루고자 하는 학대의 유형
- 아동과 가족의 젠더, 연령, 장애
- 기존의 위험
- 맥락

각종 증거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전달 방법과 진입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16.3.2. 긍정적인 양육 개입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신적 및 사회적 결과와 관련된 개입에는 (1) 연령대별로 조직된 개입,



(2) 특히 유아기의 육아와 반응적이고 일관성 있는 돌봄 등 긍정적인 돌봄을 촉진하는 개입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양육 프로그램은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관계를 개선하고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숙련된 직원이 실시하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줄일 수 있다.



### 16.3.3. 남성 돌봄제공자의 참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남성 돌봄제공자의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교육적, 행동적, 심리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 개입에 대한 남성 돌봄제공자의 참여를 장려하려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제공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때 남성 돌봄제공자의 구체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젠더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한다.

### 16.3.4. 가장 취약한 가구를 위한 고려 사항

아동가장 가구와 현지에서 정의한 위험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등 특히 위험에 처한 가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집중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가족 강화 개입 시에는 취약한 가구가 겪는 위험과 장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근법과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 16.3.5.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고려 사항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구 내 아동의 보호와 발달 및 웰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을 강화하는 대비, 예방, 대응 활동에 (주 돌봄제공자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세대 간 역학과 가족 역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 16.3.6. 위탁 가족을 위한 고려 사항

위탁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과 위탁 가정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 강화 개입을 조정한다. (기준 18, 19 참고)

### 16.3.7. 가족 강화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모든 가족의 취약성과 위험을 다룰 수 있도록 가족 강화를 위해 힘쓰는 활동 주체를 훈련시키고 지원한다. 또한 위험이 높은 상황과 민감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자와 사례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강화하도록 한다.





### 16.3.8. 경제적 지원



취약한 가족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개입에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현금 및 바우처 지원 (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 기타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다.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아동과 가족의 수요에 대응하는 경우, 경제적 개입은 사례 관리에 통합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경제적 개입을 각국의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과 연결하도록 한다. (기준 18 참고)

### 16.3.9. 옹호활동

긴급 대응 프로그램과 정부가 후원하는 서비스 및 기관에서 가족 및 돌봄제공자 중심의 개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활동 주체와 조정하여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기준 3 참고)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Mapping of Interventions to Support Parents/Caregivers in Humanitarian Context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Family Strengthening Task Force, 2017.
- *Alternative Care in Emergencies Toolki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eparated and Unaccompanied Children, 2013.
-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UNICEF, 2017.
-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9A/64/434]: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RES/64/14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 *INSPIRE Handbook: Action for Implementing th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
- *Violence Prevention: The Evidence*, WHO,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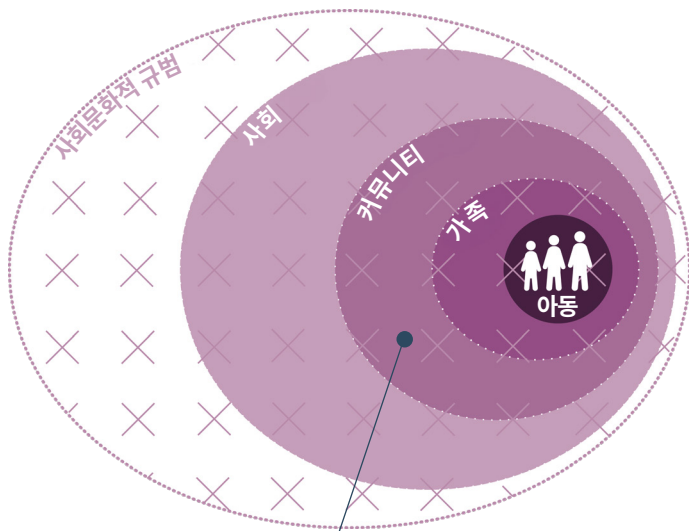


#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커뮤니티는 인도적 환경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을 포함해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다. 실형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구조와 네트워크가 심각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는 커뮤니티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커뮤니티가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위험은 물리적 환경이나 커뮤니티 구성원 자체에서 생겨날 수 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커뮤니티 차원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커뮤니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성장했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과 가족은 보통 공통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특정 지리적 환경에서 거주하는 커뮤니티 등 한번에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와 동일

시한다. ‘커뮤니티’라는 용어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인도적 지원 시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보호: 용어 및 정의』(Community Based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Terminology and Defini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은 커뮤니티가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만능’ 모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 발달, 웰빙, 참여를 증진하는 커뮤니티의 기존 능력을 이해하려 해야 한다. 커뮤니티의 그러한 능력에는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주도하고 조직하는 이니셔티브, 구조, 절차,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커뮤니티 차원 접근법을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 맥락에 대한 철저한 이해
- 수요에 대한 이해와 최우선시
- 기존 관행에 대한 이해

이때 이해해야 할 맥락에는 커뮤니티가 아동기, 아동의 웰빙, 아동 보호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규범 및 신념 체계가 포함된다. 커뮤니티 차원의 분석은 긍정적인 대처 전략과 사회적 규범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을 구조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장 연관성 있고 적절한 방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심층적인 맥락 분석, 그리고 커뮤니티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절차의 꾸준한 이행은 커뮤니티의 주인 의식과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뒷받침한다. 많은 인도주의 상황에서 아동 보호 위협의 규모는 압도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응 기간은 짧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 주체들은 커뮤니티에서 시행되지만 커뮤니티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 하향식 접근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커뮤니티가 지닌 기존의 보호 역량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킬 수 있다. 하향식 접근법이 커뮤니티 주도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증거는 희박하기 때문에 모든 접근법은 커뮤니티의 기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본 기준은 *인스파이어(INSPIRE)* 전략의 ‘규범과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기준

아동이 인도적 위기 이전과 도중 및 이후에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 착취, 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의 웰빙을 증진하는 커뮤니티에서 생활한다.

# 17.1. 핵심 활동

## 대비

- 17.1.1. 다음 사항을 지원하거나 약화시키는 사회적 규범과 태도에 대해 심층적인 맥락 분석을 실시한다.
  - 아동 보호
  - 커뮤니티의 역량,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활동 주제
  -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웰빙
- 17.1.2. 기존의 커뮤니티 차원의 아동 보호 역량과 개입 및 위험 요인을 매핑한다.
- 17.1.3.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외부 활동 주체를 아동 보호에 참여시키는 경우, 특히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경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파악한다.
- 17.1.4. 식별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예방

- 17.1.5. 긴급 상황이 기존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역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매핑한다.
- 17.1.6. (1)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 권력 규범, 젠더 규범과 (2) 아동에게 해로운 커뮤니티 관행 등을 다루는 행동 변화 전략을 활용한다.
- 17.1.7. 다음을 위한 협동 전략을 개발한다.
  -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과 관행 지지
  - 성평등 촉진
  - 아동 보호 위험의 원인 해결
  - 아동, 청소년, 위험군의 가시성 향상
- 17.1.8. 위기 아동 및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시민사회단체, 종교적 및 전통적 지도자, 기타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다.
- 17.1.9. 번역 등 적절한 기술과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커뮤니티 차원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대화를 지원한다.
- 17.1.10. **청소년**이 잠재적인 아동 보호 위험을 식별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1.11. 아동의 권리, 안전, 발달, 웰빙, 참여를 증진하는 기존의 커뮤니티 역량과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지원한다.



## 대응

- 17.1.12.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여 (1) 아동 보호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2) 커뮤니티 주도 활동에서 인도적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임 및 기대를 정의한다.
- 17.1.13. 참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보호 위험의 근본 원인, 사회적 규범, 보호 역량, 구조, 절차상의 변화를 조사한다.
- 17.1.14.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1) 커뮤니티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아동 보호 시스템 사이의 지속 가능한 연결성을 강화하고 형성하며, (2) 장기적인 서비스를 강화한다.
- 17.1.15. 커뮤니티 구성원을 지원하여 위기 아동을 식별하고 그들을 사례 관리를 포함한 다분야 서비스로 이관한다. (기준 18, 21~28 참고)
- 17.1.16.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이니셔티브와 옹호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1.17. 커뮤니티 인식 제고 활동에 어린 아동과 차별 받을 위험에 처한 그룹을 위한 활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17.1.18. 커뮤니티 기반의 대안적 돌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장려한다. (기준 19 참고)
- 17.1.19.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이 늘 수 있고, 맥락에 적합하고 생명과 직결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그룹 활동 형성을 지원한다. (기준 15 참고)
- 17.1.20.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고, 다음을 위해 장애 아동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활용한다.
- 효과가 있는 보호 전략과 개선해야 할 영역 파악
  - 파악한 내용에 따른 활동 조정
  - 인도적 대응 도중 및 이후에 피드백 제공



## ➔ 17.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7.2.1. 아동의 웰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의 역량과 한계를 문서화한 아동 보호 조사 또는 다분야 조사의 비율	100%	초기 조사 및 후속 맥락 분석 시, 아동의 웰빙을 지원하는 기존의 메커니즘과 네트워크 및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시킨다.
17.2.2. 커뮤니티 활동 계획이나 전략 가운데 커뮤니티가 계획하고, 주도하며, 시행하는 활동의 비율	90%	그러한 활동에는 특정 이슈에 중점을 둔 인식 제고 활동이나 아동에 대한 위험을 경감하는 것으로 식별된 대응이 포함될 수 있다.
17.2.3. 아동 보호 위험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자신 있게 보고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비율	80%	커뮤니티와 외부 기관의 파트너십 체결 이전 및 이후에 자체 보고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 17.3. 지침

### 17.3.1. 커뮤니티 주도 절차에 대한 지원

외부 기관은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의 자원과 헌신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아동 보호 위험 및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존의 역량과 구조 및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자원을 약화시키고 문화적으로 부적절하며 지속 불가능한 접근법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익숙지 않은 절차나 개념, 구조, 그룹 등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강제 이주가 진행되는 맥락에서 ‘커뮤니티’는 잘 규정된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혼합된 형태를 띠 수도 있다. 외부 활동 주체들의 경우, 커뮤니티의 역할과 갈등을 인식하고 고려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차원의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노력과 갈등 예방을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3.2. 커뮤니티의 참여와 주인의식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은 커뮤니티가 이를 아동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인식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기관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고 커뮤니티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우려 사항의 우선순위 설정
- 해결책 제안
- 자원 동원

국제 법률 및 인권 기준에 부합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법을 증진하도록 한다.

### 17.3.3. 아동의 참여

아동은 창의적이고, 지력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아동의 **아동의 윤리적인 참여**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뒷받침한다. 외부 기관은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둘러싼 현지의 역학을 잘 이해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참여는 차별 위험이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

### 17.3.4. 자원 투입

각종 증거 자료에 따르면 (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많은 재정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도입하면 커뮤니티의 주인의식을 약화시키고 지속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단, 합의된 책임을 이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소액의 지원(예: 휴대전화 통신비, 공책, 다과, 유니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공하고 표준화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 개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체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 17.3.5. 역량 개발

역량 강화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문화 및 발달 단계상 연령과 젠더에 적합해야 한다. 이때 아동 보호 개념에 대한 현지의 이해를 활용하고 진정한 포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권한과 영향력이 가장 강한 커뮤니티 구성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표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역량 강화에는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과 기밀유지 등 핵심 원칙과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참여와 지도, 멘토링, 다른 분야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 17.3.6. 포괄

커뮤니티와의 외부 관계는 현지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특히 차별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을 비롯해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표성과 포괄성은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에서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차별 또는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있는 대상
- 차별 또는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있는 이유



- 차별 또는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있는 대상을 안전하게 포괄하는 방법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경우—서로 다른 난민 또는 이주 커뮤니티가 하나의 캠프 내에 거주하거나 난민들이 수용 커뮤니티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모든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17.3.7. 아동 보호 시스템

상황상 적절하다면 커뮤니티가 공식적 아동 보호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식 시스템에는 경찰, 사회 복지사, 보건 종사자, 아동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 청소년 사법 제도,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내 법률과 공식 시스템이 난민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비국적자를 항상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그러한 집단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차별을 식별하고 다루며, (2) 위험에 처한 생존자나 아동을 사례 관리 서비스로 이관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Field Guide to Strengthening Community Based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Plan International and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9.
- *Wessells, M., A Toolkit for Reflective Practice in Supporting Community-led Child Protection Processes*, Child Resilience Alliance, New York,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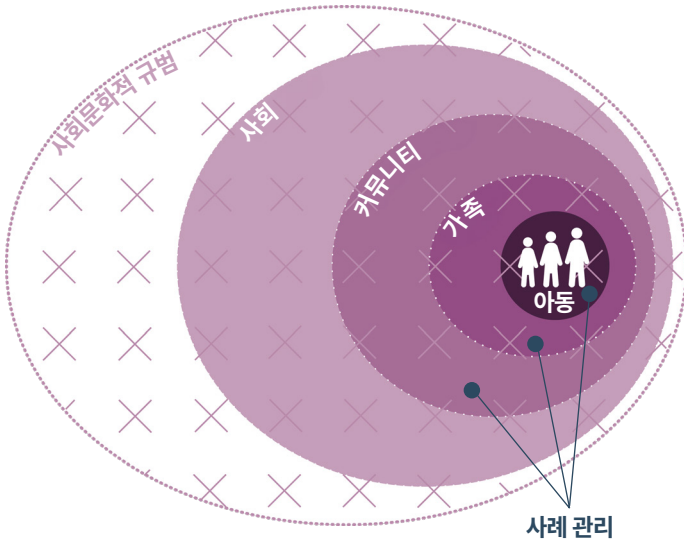
## 기준 18: 사례 관리

이번 기준은 원칙,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는 특정 사례와 관련된 모든 위험 또는 전략 기준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사례 관리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자신이 가진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 개별화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사례 관리는 피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개별 아동의 수요를 다루기 위한 접근법이다. 아동과 그들의 가족은 직접적인 지원과 이관을 통해 사례관리자로부터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사례 관리는 복잡하고 흔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동 보호 우려 사항에 대해 개별화되고 조정되어 있으며 총체적인 다분야 지원을 제공한다.

사례 관리 시스템은 아동 보호 대응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사례 관리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에서 아동, 가족/돌봄제공자, 커뮤니티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사례 관리



사례 관리 절차의 방향은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가진 견해와 결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특성(젠더, 연령, 발달 단계, 언어, 문화적 정체성 포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항상

아동의 안전감, 웰빙,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 관리에는 적절한 절차적 세이프가딩, 데이터 보호 기준, 직원 훈련,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은 기존의 사례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강화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기준

인도주의 상황에서 아동 보호 관련 우려에 직면한 아동과 가족이 식별되고, 그들의 수요가 일대일 직접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결을 포함한 개별화된 사례 관리 절차를 통해 다뤄진다.

## 18.1. 핵심 활동

### 대비

- 18.1.1. 사례 관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 사례 관리에 현재 공백이 있는지, 맥락에 적절한지 여부 조사
  - 인도주의 기관이 필요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국가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분석
  - 가장 적절한 접근법 결정 (『*사례 관리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침*』(Inter-agency Guidelines for Case Management and Child Protection) [『CPCM』 지침]에서 조사, 분석, 결정 모델 참고)
- 18.1.2. 주어진 맥락에 적절한 사례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사례 관리 절차와 도구(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사례 관리 양식, 이관 경로, 정보 공유, 데이터 보호 정책 포함)를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대응의 첫 단계에 양질의 시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도적 지원 시 사례 관리 작업반을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ase Management Task Force) 페이지 참고)
- 18.1.3. 관련 활동 주체를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계획을 실시한다.
- 상세한 업무 설명과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고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훈련 진행
  - 아동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사례 관리 절차, 데이터 보호, 기밀유지, 개인



정보보호, 관련 도구 등에 대한 사례 관리 직원의 지식과 기술 구축

- 기술적 역량과 실무, 직원의 웰빙, 효과적이고 지지적인 사례 모니터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직원을 관리감독 및 지도
- (아동, 가족,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구축해 잠재적인 사례를 안전하게 식별 및 이관

18.1.4. 아동과 가족을 위해 접근 가능하고 반응적이며 기밀이 유지되는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8.1.5. 커뮤니티 피드백을 활용하여 사례 관리 서비스를 개선한다.

## 대응

18.1.6. 단계별 접근법을 이행한다.

- 갑작스럽게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이슈(가족 분리, 군대 또는 무장 단체로부터의 석방 등 시급하고 긴급 상황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한 서비스부터 구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모든 범위의 아동 보호 이슈를 다루는 더욱 포괄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 개발
-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조정된 템플릿과 도구를 바탕으로 이관 경로와 표준운영절차(SOP)를 구축할 때 단계별 접근법 활용하되,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이 변화하고, 대응이 진전되고, 역량과 자원이 개선되고 강화되면 세부 내용 추가

18.1.7.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이행할 때 (*『CPCM』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 다음을 포함한 양질의 사례 관리 기준을 따른다.

- 아동 25명당 사례관리자 1명 확보
-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 및 관리감독 제공을 위해) 아동 5~6명당 감독관 1명 확보
- 아동과 가족을 만날 때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지원하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아동 친화적인 만남의 장소 제공
- (1) 적절한 아동 보호 및 다분야 지원 서비스로의 이관과 (2) 아동과 가족이 수행해야 할 조치를 포함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총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 사례 조정 및 사례 회의를 위한 정보 공유 프로토콜(Information Sharing Protocol, ISP)과 절차의 수립 및 업데이트
- 정보 수집, 보관, 공유를 위한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시스템 구축
- 문서화, 기록 보관(종이 기반 및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활용, 정보 공

유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ISP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기준 5, 글로벌 정보 공유 프로토콜 및 데이터 보호 정책, 『CPCM』 지침의 44쪽 참고)

18.1.8. 다음을 통해 대응 초기부터 사례 관리 활동 주체와 다분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지속적인 조정을 지원한다.

- 사례 관리에 필요한 명확한 자격과 우선순위 설정 기준 수립
- 결정을 내릴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조사하고 확정할 적절한 절차 마련
-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관 경로 수립 및 업데이트된 서비스 목록의 유지관리
- 다른 분야와 협력하여 위기 아동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식별 및 이관
- 다분야에 걸친 공통의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수립

## 18.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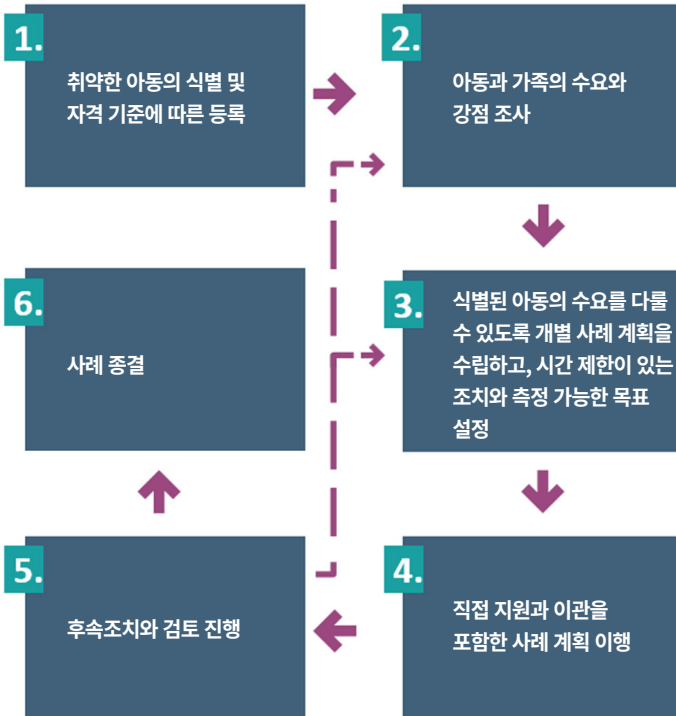
지표	목표	참고
18.2.1. CPCM에 관한 훈련과 관리감독을 받고 사례 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관리자의 비율	80%	사례관리자 코칭 및 관리감독 패키지 (Caseworker Coaching and Supervision Package)에 포함된 사례관리자 역량 조사 도구(Caseworker Capacity Assessment Tool)를 참고한다. 모든 사례관리자는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작업에는 훈련과 관리감독을 받은 사례관리자만 포함시켜야 한다.
18.2.2. 직접 제공받은 서비스와 사례 관리 절차를 통해 취해진 대응 조치에 만족한다고 보고하는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비율	90%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따로 측정한다.
18.2.3. 사례 관리 절차를 통해 시급한 아동 보호 관련 수요/위험이 다루어진 결과 웰빙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는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비율	90%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따로 측정한다.

## 18.3. 지침

### 18.3.1. 사례 관리 단계

아동 보호 사례 관리는 선형적인 절차가 아니다. 아래에 제시된 단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를 수행할 때 사례 관리 절차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이 단계들은 사례가 종결되기 전까지 수차례 반복될 수도 있다.

사례 관리 단계



### 18.3.2. 시스템 강화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은 보호 우려사항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과 구조에는 전통적인 돌봄제공 및 양육 관

행, 기존의 모든 사례 관리 시스템이 포함된다. 인도적 지원 주체의 활동을 장기적인 국내 사회 복지 서비스 인력의 활동과 조화시키고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중복 또는 유사한 사례 관리 시스템 방지
- 지속가능성 보장
- 효과적인 전환 및 출구 전략 촉진

### 18.3.3. 양질의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이미 많은 맥락에 존재하지만, 아동 보호 수요를 완전히 혹은 적절히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긴급 상황에 사례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기존의 절차와 이관 경로를 활용하고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지속성, 아동 친화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양질의 사례 관리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질의 조사 프레임워크(Quality Assessment Framew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교훈을 바탕으로 서비스 절차와 전달 방법을 꾸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다. 여기에는 적절한 지표 활용,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 아동 및 가족과의 피드백 면담, 접근 가능한 피드백과 보고 메커니즘, 관리감독 시스템이 포함된다.



### 18.3.4. 직원 역량

직원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아동-직원의 비율은 사례관리자의 능력, 아동의 수요, 그리고 여타 제약과 의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직원이 가진 기술과 지식은 채용 과정 중에 조사해야 한다. 모든 사례관리자는 (1) 표준 입문 훈련과 지속 훈련(새도입 포함), (2)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관리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아동 보호 사례 관리팀은 번아웃을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팀 내에서 직원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 18.3.5.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표준운영절차(SOP)는 인도주의 환경에서의 사례 관리에 지침이 되어 준다. 또한 SOP는 여러 기관과 분야에 걸쳐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와 접근법을 조화시키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SOP는 인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1) 맥락에 맞는 아동 보호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2) 모든 아동 보호 사례 관리 활동 주체와의 협동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인도적 대응을 시작할 때 긴급 상황용 SOP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적절한 대응을 보장하고 유사한 절차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SOP는 인도적 대응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통합해야 한다.

### 18.3.6. 위험 분석, 적격성, 우선순위 설정



맥락에 맞는 아동 보호 위험 분석은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과 침해 사항, (2) 가장 취약한 아동 등을 식별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적격성 기준에 반영될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 법적 틀, 정책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소외되어 있거나 이주를 경험한 아동은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해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염병 발생** 기간에 감염 또는 격리 중이거나 관찰 또는 치료 센터에 있는 아동은 조정된 특별한 사례 관리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적격성 기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SOP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적격성 기준은 투명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주어진 맥락과 아동 보호 위험에 관한 지식이 확보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시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즉각적인 또는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시급한 사례를 우선시해야 할 때가 많다. 어떠한 사례를 우선 시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역량, 시급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각 사례의 우선순위는 위험도 높음, 위험도 중간, 위험도 낮음 또는 위험 없음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다.

### 18.3.7. 사례 관리를 위한 정보 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for CM, IM4CM)

(기준 5 참고)

정보 관리는 사례 관리의 핵심 요소다. 정보 관리는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위험을 경감하며, 책무성을 지원한다. 정보 관리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 개별 사례를 문서화하기 위한 양식
-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
- 정보 관리 시스템

모든 직원은 사례 관리 SOP에도 참고자료로 언급되거나 부록으로 첨부되는 이와 같은 요소



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 보호는 아동 세이프가딩의 핵심 요소다. 긴급 재난이 시작된 시점에는 데이터 보호 위험을 식별하고 다루는 동시에, 사례 관리 양식과 정보 공유 프로토콜(Information Sharing Protocol,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조정해야 한다.

아동의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와 데이터 공유는 안전하고 적절한 시스템과 프로토콜 및 도구를 통해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 기관은 (1) 기밀유지를 보장하고 (2) 알아야 할 필요성 원칙에 따라 개인 식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 18.3.8. 최선의 이익 관련 절차

아동 최선의 이익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절차(최선의 이익 절차)는 국가가 수립해야 한다.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모든 활동 주체는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개별 기관은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그러한 절차가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조사하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2) 이를 모든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삼을 책임이 있다. 각 국가의 절차가 접근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UNHCR의 최선의 이익 절차가 난민 아동을 위해 활용된다.

적절한 최선의 이익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차별 없이 아동의 적절한 참여 증진
-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마땅한 가치 부여
-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장려
- 모든 관련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한 최선의 선택지 결정
- 모든 아동의 권리 충족

‘최선의 이익 조사’는 개별 아동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수행하는 조사를 가리킨다. 최선의 이익 조사는 그러한 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아동 보호 사례 관리를 통해 수행된 아동 보호 조사는 보통 최선의 이익 조사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선의 이익 결정’(Best Interests Determination)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절차적 세이프가딩을 갖춘 공식적인 절차다. 이는 사법 절차를 포함해 심각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하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ter Agency Guidelines for Case Management and Child Protection*,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4.
- *Child Protection Case Management Training for Caseworkers, Supervisors and Manager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4.
- ‘*Case Management Task Force*’,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Website: features all global templates and tools.]
- ‘*CM Supervision and Coaching Training Package Launch*’, Case Management Task Force of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8. [Website]
- *Guidelines on Assessing and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18 Provisional Release*, UNHCR, 2018.

## 기준 19: 대안적 돌봄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기준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기준 18: 사례 관리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인도적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은 다음을 포함한 많은 이유로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 긴급 상황 자체가 야기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
- 아동 또는 가족이 가족과의 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아동이 가정 내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분리가 발생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대안적 돌봄’은 생물학적 부모나 일반적인 주 돌봄제공자가 아닌 돌봄제공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을 가리킨다. 대안적 돌봄은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 ‘공식적 돌봄’은 행정 당국이나 사법 당국 혹은 공인된 기관이 승인한 돌봄이며, ‘비공식적 돌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친구,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이 제공함
- 아동, 부모, 아동의 일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함
-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음

각 맥락마다 현지의 문화적 규범, 관행, 법률,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돌봄이 존재할 수 있다. 대안적 돌봄의 여러 선택지는 가능한 한 가족 기반이어야 하며, 아동에게 야기하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 혹은 이주민인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과 같은 커뮤니티 출신이면서 새로운 수용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대안적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대안적 돌봄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 긴급 상황 돌봄
- 경유 센터
- 지도감독 하의 독립 생활

## 기준

보호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이 각자의 권리, 구체적인 수요, 희망 사항, 최선의 이익에 따라 대안적 돌봄을 받으며, 이때 가족 기반의 돌봄과 안정적인 돌봄 방식이 우선시된다.

### 19.1. 핵심 활동

#### 대비

- 19.1.1. 연관성 있는 현지와 국가 및 국제 법률과 정책, 조약, 지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19.1.2.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는 법적 체계를 옹호하고 지원한다.
- 19.1.3. 아동의 서로 다른 연령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면서 전통적인/관습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한 기존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돌봄 방식을 조사하고 매핑한다.
-  19.1.4. 장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 낙인이 찍힌 집단이나 커뮤니티 또는 문화에 속한다는 사실 등과 관련해 차별을 당하거나 배제될 위험이 있는 아동 또는 가족의 수요에 집중한다.
-  19.1.5. 사례 관리 직원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돌봄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 19.1.6. (정부를 포함한) 현지 활동 주체를 지원하고 복돋아 대안적 돌봄을 계획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며, 이행한다.

#### 예방

- 19.1.7. (1) 가족 및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에 집중하고 (2) 유연한 비상 대책 계획을 활용하여 기존의 대안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 19.1.8. 필요할 경우 정부가 공식적 및 비공식적 돌봄을 위한 법률과 기준, 최소기준을 개선하거나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9.1.9. 정부가 (1) 탈시설화 전략을 시행하고, (2) 거주형 돌봄 시설의 수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9.1.10. 가족 분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목표 대상이 뚜렷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권한 강화를 지원한다. (기준 22 참고)

19.1.11. 아동을 집에서 다른 곳으로 혹은 거주 시설로 보내는 것의 위험성과 관련해 돌봄제공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 대응

19.1.12.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사회생태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 아동의 생활 현황과 환경
- 안전한 가족 재결합 가능성
- 아동의 성별, 연령, 역량
- 기존의 지지적인 커뮤니티 구조와 시스템
- 가장 적절한 형태의 지원 또는 대안적 돌봄 (기준 4, 5, 18 참고)

19.1.13. (1)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2) **아동 최선의 이익**과 국가 법률 및 정책에 부합하는 임시적 및 장기적 돌봄 방안을 파악해 아동에게 대안적 돌봄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18 참고)



19.1.14. 아동 돌봄 계획에 다음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아동과 돌봄제공자, 기타 적절한 개인의 수요와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돌봄 조치와 기타 지원
-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19.1.15.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적 돌봄 방식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대안적 돌봄 방식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조치임
- 아동이 불필요하게 대안적 돌봄을 받지 않음
- 아동을 유기하거나 재통합을 회피하는 일에 따른 이득이 존재하지 않음

19.1.16. 맥락에 적합하고 지원을 받는 독립 생활을 비롯해,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게 적절한 대안적 돌봄 방안을 모색한다.



19.1.17.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된 아동을 돌봄제공자와 분리시키는 결정은 (1)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2) 가능하다면 국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내리도록 한다.

19.1.18. (1)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혹은 (2) 돌봄제공자에 의해 학대, 방임, 착취를 당한 아동을 위한 국가 및 국제 법적 체계와 지침에 부합하는 조정된 대안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립한다.

19.1.19. 가능하다면 국가 당국과 함께 다음을 모니터링한다.

- 대안적 돌봄을 받는 모든 아동의 등록
- 국가 및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본 돌봄의 질과 적절성

19.1.20.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안적 돌봄 방식을 영속화하지 않는다. (기준 13 참고)



## 19.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19.2.1. 임시 대안적 돌봄을 받은 아동 중 등록 후 30일 이내에 가족 또는 돌봄 환경으로 배치된 아동의 비율	70%	
19.2.2. 대안적 돌봄에 관한 훈련을 받은 직원의 비율	100%	
19.2.3. 대안적 돌봄을 받는 아동 중 다른 환경으로 배치되기 전에 합의된 사례 계획이 갖춰져 있는 아동의 비율	100%	등록 시에 동의/합의서를 수집한다.
19.2.4. 훈련과 지도감독 지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식별된 위탁 돌봄제공자/멘토의 수	100%	
19.2.5. 돌봄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거주형 돌봄 시설의 수와 비율	100%	다른 모든 시설은 폐쇄시키거나 돌봄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9.3. 지침

### 19.3.1. 가족 단위

아동의 삶에서 최초의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은 양육을 제공하는 안전한 가족이다. 아동 보호 기관은 다른 인도적 지원 주체들과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가족들이 가족 분리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준 21~28 참고)

### 19.3.2. 대안적 돌봄 방안

각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적 돌봄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음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 개별 아동의 선택과 희망 사항, 연령, 성숙도, 관계, 학교 교육, 언어, 종교, 문화
- 안전 고려사항을 포함한 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커뮤니티가 가진 돌봄 전통
- 법적 틀

- 필요성과 적합성의 원칙 (대안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합한가?)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 형제자매가 함께 함
- 3세 미만의 아동이 항상 가족 기반의 돌봄을 받음
- 나이가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을 받는 독립 생활이라는 선택이 제공됨



대안적 돌봄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는 서로 다른 유형의 돌봄 방안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 대안적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대안적 돌봄도 가족 분리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돌봄을 받는 아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보호와 웰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속 방문을 받음
-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가짐
-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보고할 수 있음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사례관리자는 아동을 가족이나 커뮤니티 또는 영구적인 대안적 돌봄 방안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 19.3.3. 가족 기반의 대안적 돌봄

가족 기반의 대안적 돌봄-반드시 아동의 원가족은 아닌 가족 내에서 받는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선호되는 방안이다. 친족 돌봄-아동과 관계가 있거나 아동이 아는 가족 내에서 받는 돌봄-은 흔히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국내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가족 기반의 돌봄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돌봄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
- 돌봄제공자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사람
- 가족 구성원이나 위탁 돌봄제공자로부터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별을 줄이고,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친족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돌봄을 고려하도록 한다. 위탁 돌봄이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유일한 대안적 돌봄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 가능한 위탁 양육의 유형은 아동의 수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긴급 임시 돌봄, 단/중기 위탁 또는 장기 위탁)을 반영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커뮤니티와 상의해야 한다. 위탁 돌봄제공자는 신중하게 모집하고, 조사하고, 훈련시키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동을 한 위탁 가정에서 다른 위탁 가정으로 옮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기반의 돌봄을 **고려할 수 없다**.

- 가족이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없는 경우
- 위탁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기존의 보호 우려사항이 아동이 돌봄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
- 아동이 신속한 재결합/추적을 위해 한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 아동의 연령, 성숙도, 희망 사항이 돌봄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
- 안보 문제로 인해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거주형 돌봄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19.3.4. 지원을 받는 독립 생활

지원을 받는 독립 생활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 특히 경우 과정 중에 있거나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일 수 있다. 이때 보호 위험 요소 및 아동의 독립 생활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원을 받는 독립 생활 중인 아동은 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커뮤니티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북돋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 19.3.5. 거주형 돌봄

거주형 돌봄은 임시 쉼터, 임시 돌봄 센터, 소규모 그룹 홈, 시설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야간 돌봄을 아우른다. 거주형 돌봄은 모든 가족 기반의 임시 돌봄 방안을 모색해 보았음에도 그러한 돌봄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거주형 돌봄 시설이 돌봄 최소기준과 아동 친화적 보호 절차를 충족할 수 있



도록 정기적인 지원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설 돌봄 시설을 건립하지 말아야 한다.

거주형 돌봄 시설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해 대안적 임시 돌봄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생물학적 가족과 연결되지 않은 위탁 양육이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문화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소규모 쉼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쉼터를 활용할 때에는 단기, 중기, 장기 대안적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른 바람직한 유형의 양육을 확립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제도화 된 문화<sup>institutional culture</sup>’를 최소화하고 다음을 제공하여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적절한 직원/아동의 비율
- 접근 가능한 시설 또는 센터
- 아동이 커뮤니티 구성원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 행동강령
- 직원에 대한 훈련
- 안전한 장소

**장애 아동**은 거주형 돌봄 시설에 배치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장애 아동이 거주형 돌봄 시설에 머무는 경우에는 아동과 가족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있는 경우 가족 기반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고 장애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9.3.6. 장기적인 대안적 돌봄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하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안적 돌봄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동을 임시 돌봄 시설에 무기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 돌봄에 관한 결정은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인증된 절차(상황상 적절한 경우 UNHCR가 주도하는 최선의 이익 결정(Best Interests Determination)도 포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의 젠더, 연령, 장애, 이용 가능한 돌봄 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입양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성공적인 추적과 재결합에 대해 합리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경우

- 추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볼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입양이 아동 또는 부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로의 배치나 가정 입양, 카팔라(kafalah)는 오로지 모든 추적 노력을 다한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 국가 간 입양은 항상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을 준수해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lternative Care in Emergencies Toolki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eparated and Unaccompanied Children, 2013.
-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UNICEF, 2017.
-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9A/64/434]]: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RES/64/14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 *Strategies for Delivering Safe and Effective Foster Care: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Those Designing and Delivering Foster Care Programmes*, Family for Every Child, 2015.
- *The Place of Foster Care in the Continuum of Care Choices: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Policymakers*, Family for Every Child, 2015.
- *Guidelines on Assessing and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18 Provisional Release*, UNHCR, 2018.



## 기준 20: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3: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 기준 6: 아동 보호 모니터링,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아동 보호 분야의 인도적 지원 주체는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활동 주체와 협력할 기회가 있다.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 전략은 (1) 공식적인 법률과 관습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2) 사법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개입을 모두 포괄한다.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는 보호적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이행 또는 확립하거나,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법 정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존의 아동 보호법의 이행 및 이에 대한 인식 강화
- 관습법, 국내법 체계, 국제법 사이의 조화 및 연결 촉진
- 아동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옹호하거나 지지

아동을 위한 사법 정의에는 사법 제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극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아동은 목격자, 피해자(생존자), 피고인, 잠재적 범법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혹은 이러한 대상들이 결합된 당사자로서 사법 제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인도적 위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아동이 법과 접촉하는 일이 더 잦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위한 돌봄 조치
- 불필요한 체포와 자유의 박탈
- 가정 및 커뮤니티 내의 폭력
- 최악의 아동 노동
- 조혼을 포함한 성적 학대나 착취, 폭력

안타깝게도 사법 제도와 이러한 접촉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법 행위자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도적 지원 주체는 그러한 위험을 낮추고 아동이 사법 제도와 상호작용할 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법 제도

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는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법과 접촉하는 아동<sup>Children contact with law</sup>의 권리 및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훈련 제공
- 사법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발달 및 연령에 적합한 방식의 아동과의 소통에 대한 훈련 제공
- 아동이 범죄자로 공식 처분되지 않고 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사법 정의 접근법 지지
- 국가와 협력하여 난민 혹은 이주민인 모든 아동의 이주 구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
-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연령 및 젠더에 따라 분리된 시설에서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해 진행
-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달 및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동과 명확하게 소통



아동 보호팀에게 있어서 위기는 변화에 저항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사회생태적 틀을 활용하여 모든 분야의 활동 주체와 협력함으로써 (1) 모든 차원의 법률 및 사법 제도가 보호를 제공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2)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개입을 개발할 수 있다.

## 기준

인도적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법 제도와 접촉하는 모든 아동이 국제 규범과 기준에 따라 아동 친화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의 대우를 받고 자신의 수요와 최선의 이익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20.1. 핵심 활동

### 대비

- 20.1.1. 공식 및 비공식 법적 틀과 사법 행위자들을 매핑한다.
- 20.1.2. 서비스를 매핑하고 공동 이관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제도와 사회 복지 시스템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 20.1.3. 아동 친화적이고, 젠더를 민감하게 고려하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과



경찰서 내부 공간을 구축 또는 강화한다.

- 20.1.4.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적이 있는 아동, 성적 착취 또는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인 아동과 관련된 사례를 비롯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법 행위자 모두 아동과 관련된 사례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 20.1.5. 공식적 및 관습적 사법 제도에 종사하는 모든 행위자를 위해 아동 친화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20.1.6. 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젠더 균형이 잡힌 인력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원한다.
- 20.1.7. 아동 범죄 피해 생존자나 목격자를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보고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20.1.8.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요구할 것을 지시한다.
- 20.1.9. 법과 접촉하는 아동 및 그들의 돌봄제공자를 위한 보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강화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20.1.10. 아동의 웰빙 회복 및 재통합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차원의 구금 대안이 채택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20.1.11. 아동 피해 생존자와 목격자를 위해 아동에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비차별적이며 아동의 재피해자화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20.1.12. 재난이나 무장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금된 이들을 위한 아동 중심의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 20.1.13.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훈련을 받은 커뮤니티 구성원 및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회복적 사법 과정<sup>Restorative Justice</sup>을 강화 또는 구축한다.
- 20.1.14. (1) 아동 이주 구금을 종식하고 (2) 가족 및 커뮤니티 수용과 돌봄 방식을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의 이주 구금에 대한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옹호한다.



## 대응

- 20.1.15. 교육,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서비스, 가족과의 연락 등을 비롯해 법과 접촉하는 아동의 가장 시급한 기본적인 수요를 식별하고, 옹호하며, 이에 대응한다.
- 20.1.16. 사법 제도 내에서 아동 권리 침해 양상을 식별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20.1.17. 사법 행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예: 법적 구제, 재활/재통합 프로그램)를 조사하고, 제공하며, 그와 관련된 역량을 구축한다.
- 20.1.18. 아동 범죄 피해 생존자/목격자 사례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분야 간 팀을 구성한다.
- 20.1.19. 국경과 수용<sup>Reception</sup>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준비가 다음과 같을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벌이고, 인식을 제고하며, 훈련을 제공한다.



- 아동에게 민감하게 대응
- 등록 및 수용에 관한 국제 기준 존중
- 구금에 대한 대안 지원

20.1.20.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의 석방을 옹호한다.

20.1.21. 법에 저촉된 아동을 구금 시설에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경우, (1) 가족이 함께 지내고 (2) 아동 범법자를 성인 범법자로부터, 여아를 남아로부터, 기소된 아동을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해결책을 옹호한다.



20.1.22. 공식적인 시스템이 붕괴한 경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비국가적인 해결책을 장려한다.

20.1.23. 법과 접촉하는 아동과 관련된 다분야 협력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긴급 상황에 적절함
- 효과적임
- 비차별적임
- 아동 친화적임

20.1.24.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적 있는 아동을 민간 아동 보호 활동 주체에게 즉시 이송하기 위한 인계<sup>handover</sup> 프로토콜의 개발과 채택 및 이행을 장려한다.

## ➔ 20.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0.2.1. 긴급 상황이 시작된 이후 사법 제도와 접촉한 아동 중 아동 친화적인 사법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아동의 비율	90%	‘사법 제도와의 접촉’과 ‘아동 친화적’의 의미를 정의하되, 이때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 친화적이라는 의미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긴급 상황이 시작된 이후’는 측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맥락에 따라 각국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구조화된 면담(사례 관리 대상인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조사), 프로그램 문서 검토(모니터링 보고서)가 있다.

## 20.3. 지침

### 20.3.1. 침해 사항 문서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1) 법과 접촉하는 아동에 대한 침해 양상과 (2) 법과 접촉하게 만드는 상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서화는 효과적인 국가 및 국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증거 기반의 옹호활동에 근거를 제공한다. (기준 3, 6 참고)

### 20.3.2. 옹호활동

옹호활동은 (1)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 시행, (2) 현재의 침해 행위 중단(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침해 사례부터 시작), (3) (법률 개혁 등을 통한) 향후 침해 행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옹호활동은 모니터링 및 문서화 활동을 통해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기준 5, 6 참고) 당국에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할 수 있다.



- 위기가 아동의 사법 제도 경험에 미치는 영향
- 보호적 법 체계의 중요성 (합법적 징집, 군대 모병, 결혼 및 동의를 위한 연령 상향, 신고 의무화)
- 아동 권리 옹호의 중요성
- 관련 당국과 활동 주체의 책무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발간하는 각국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각국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e's CRC report)*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들은 옹호활동, 역량 강화, 인식 제고 활동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주민이 된 아동과 관련된 옹호 메시지는 최소한 다음을 촉구해야 한다.



- 이민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방지
- 아동이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번역에 필요한 자원 제공
- 필요할 경우 가족 추적 및 후견인 지정 서비스 제공

### 20.3.3. 전문 분야 간 팀과 조정

위기 발생 초기부터 기존의 자원과 구조를 활용하는 전문가와 돌봄제공자(예: 사법 제도, 안보 시스템, 의료 시스템, 사회, 커뮤니티, 가족)를 위해 조정 플랫폼을 개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각 활동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는 표준운영절차(SOP)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정 플랫폼을 활용해 전문 훈련(예: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기준 1, 10 참고)

### 20.3.4. 법적 의뢰인으로서의 아동

법적 대변인은 다음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 일반적인 법적 원칙
- 아동의 권리
- 특히 기밀유지 및 최선의 이익 원칙 같은 아동 보호 원칙 (원칙 참고)
- 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국경을 넘는 구금 사건, 테러 혐의에 대한 구금, 비호 등)
- 의무 보고 요건



의무 보고가 법적으로 요구될 경우, 이를 발달상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동과 그 가족이 공식적인 법적 시스템을 통해 권리 침해 사건을 다루고 싶어 할 경우, 사례 관리 활동 주체가 동행해야 한다.

### 20.3.5. 아동 및 사회 복지 시스템

아동 범죄 피해자/생존자는 절대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며, 아동 복지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아동에게도 유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형사미성년자인 아동은 형법 시스템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 복지 시스템과만 접촉해야 한다.

### 20.3.6. 자유의 박탈

‘자유 박탈’은 모든 형태의 (1) 구금이나 투옥, (2) 공적 또는 사적 구금 시설에의 수용을 의미한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사법 행위자들은 구금에 대한 대안(예: 보호 관찰이나 커뮤니티 봉사)을 고려하면서, 아동을 대할 때 인권과 법적 프라이프가딩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 출생한 아동은-해당 영토 내에서 부여받는 지위와 관계없이-(1) 국제 기준에 따라 즉시 등록되고 (2)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는 안보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동을 구금할 때 흔히 ‘행정 구금’이 진행된다. 보통 행정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으며, 검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행정 구금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군대나 무장 단체에 연루된 적 있는 아동을 민간 아동 보호 활동 주체에 게 즉시 이송하기 위한 인계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이주 목적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특정 연령 이상의 아동에게만 이주 구금을 허용하거나, 비호를 희망하는 아동에게 이주 구금을 금지한다. 아동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법적/이주 상태와 무관하게 이주와 관련된 목적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 구금은 절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적 있는 아동이 그러한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나 기소를 당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착취의 피해 생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준 11 참고)

위기 시에는 ‘범칙(status offences)’으로 기소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범칙’에는 성인이 저지르면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체포와 구금을 당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통금 시간 위반, 가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행위 등이 있다. 범칙으로 인한 구금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며 절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pp. 30-35.
- *'Documentation by Country'*,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Human Rights Council. [Website]
- *Toolkit on Diversion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UNICEF, 2010.
- *Introducing the United Nations 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 New Tool for Policymakers, Criminal Justice Officials and Practitioners*, UNODC and UNICEF, 2015.
-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UN Approach to Justice for Children'*, United Nations, 2008.
-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Model Law and Related Commentary*, UNODC and UNICEF, 2009.
-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Child-friendly Version*, UNODC and UNICEF, Vienna, 2006.
-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he United Nations Global Study'*, UNHCR, (forthcoming). [Website]
- *Stateless Persons in Detention: A Tool for their Identification and Enhanced Protection*, UNHCR, 2017.
- *Detention Guidelines: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UNHCR, 2012.
- *Handbook on Children Recruited and Exploited by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Groups: The Role of the Justice System*, UNODC, 2018.
- *'Vancouver Principles on Peacekeeping and the Prevention of the Recruitment and Use of Child Soldiers'*, Government of Canada, 2017. [Website]
- *Beyond Detention: A Global Strategy to Support Governments to End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Refugees, 2014-2019*, UNHCR, 2014.

**기둥 4:**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



## 기둥 4 소개: 분야 간 협력 기준

### 아동 보호 및 웰빙 증진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의 중요성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긴급 상황은 피해 아동의 웰빙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은 보호를 모든 인도적 대응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동은 모든 분야와 관련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보호 위험은 다른 분야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가족의 생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조혼 또는 아동 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다분야 접근법은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연결하고 반영하고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가 아동 및 가족을 보호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아동 보호 개입은 아동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분야도 위험을 예방하고, 아동 보호 수요에 대응하며,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증진할 지식과 기술, 자원을 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는 다분야 아동 보호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보호가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자 의도적인 결과이며 모든 대비 및 대응 활동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보호 중심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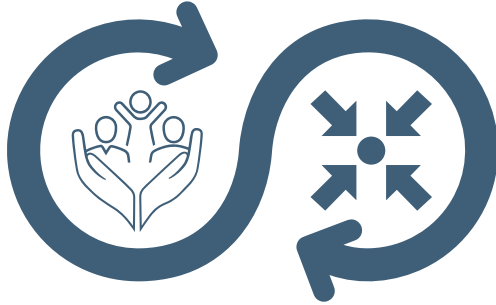
아동 보호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분야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 추가적인 피해 또는 위험 증대
-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의 감소

한편, 아동 보호 고려사항(예: 아동이 가진 특정한 위험, 취약성, 발달 단계 등)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고 다루는 다분야 프로그램은 양질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른 분야의 성과를 개선하고, 아동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촉진하며, 아동의 웰빙을 보장한다.

보호 주류화와 통합적 접근법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아래에 제시된 핵심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주류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모든 피해인구의 안전, 존엄, 접근성을 증진하여 핵심적인 인도주의 보호 원칙을 통합
-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 AAP), 피해인구의 참여 및 권한 강화 보장

인도적 지원의 모든 측면에 아동 보호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보호 주류화는 아동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영속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인도적 지원의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호 주류화는 필수이며, 모든 인도적 지원에 적용되는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을 준수하는 행위 중 하나다.

‘통합적 접근법’은 두 개 이상의 분야가 협력하여 공동의 프로그램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역량, 그리고 공동 수요 식별 및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유익한 과정과 결과물을 만든다. 아동 보호가 통합적 접근법에 포함되면 더 나은 아동 보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적용 시 의도적으로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하나 이상의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하여 다음을 달성하고자 한다.

- 아동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예방
- 양질의 서비스 보장
- 아동의 발달과 권리 및 웰빙 증진
- 다른 분야의 협력과 성과 및 영향 반영

통합적 접근법은 의도한 성과가 무엇이든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필수적인 보호 주류화와는 다르다.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분야별 접근법에서는 분야별활동 내용이 조치를 취할 때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통합적 접근법에서는 아동의 웰빙과 건강한 발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출발

점이다. 이는 협력하는 각 분야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공동 프로그램과 통합적 프로그램은 상황 분석,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아동 보호 분야 활동 주체와 다른 분야 활동 주체 간의 다양한 협력 기회는 아래 표에 표시되어 있다. 적절한 접근법이 무엇인지는 인도주의 단체와 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주어진 맥락에 따라 도출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긴급 상황의 단계(예: 안정기)
- 접근성
- 가용한 역량
- 기존의 현지 시스템
- 자금 조달 메커니즘
- 기타 요인

주류화, 공동 프로그램, 통합적 프로그램의 사례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작업 방식	분야별 영향	목표	고려사항	사례
아동 보호 주류화	분야별 조차: 특정 분야 내에서 추하는 조차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을 적용하고, 사전에 위험과 피해를 줄인다. 안전하고 풍부 있으며 보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가 미치는 영향을 개선한다.	이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지침, 그리고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 GPC)와 다른 보호 기관이 제작한 지침을 기반으로 삼고 맥락화해 보호 주체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별 아동 보호 지침을 적용한다.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 체력, 장애를 고려하여 (1) 학교에서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을 설계하고 (2) 학교 위생 관리(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HM)를 추진한다. 아무 보건 관련 모델에는 아동 보호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젠더 분야의 대응은 진을 지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거나 청소년기 여아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원한다.
공동 프로그램	각 분야는 각자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특정 측면들을 공동 계획하고 이행한다.	지원, 접근성, 운영 역량 등을 최적화하면서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보호 성과도 달성한다.	아동 보호 분야 및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분야 사이의 예측 가능한 조정과 더불어, 적당한 수준의 공동 계획(사전 계획, 비용 책정, 자원 관련 요구 사항 등)이 필요하다. 상호 작용, 이관, 공간 활용 등을 위해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공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분야에 속한 지원과 자원봉사자가 다른 분야의 목표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쪽 분야에 기본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분쟁의 영향을 받는 외부 지역에서 는 아동 보호 분야, 보건 분야, 영양 분야가 (1) 위기 아동의 식별 및 이관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와 (2) 가족, 주적, 재결합 서비스, 양육 프로그램 등 이관과 관련해 계획된 대응과 더불어 공동 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아동 보호 및 교육 활동 주체는 공동으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며,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이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된 프로그램 교섭적 개입을 한다. 보건, 정신건강, 아동 보호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보건 시설에서 일하는 아동 보호 사회 복지사나 상담사가 도움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SOP를 마련한다. (다음 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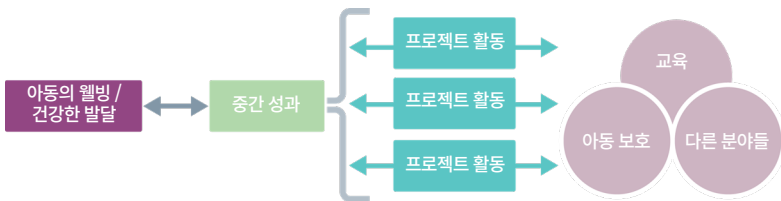
작업 방식	본아별 영향	목표	고려사항	사례
통합 (통합된 프로그램)	본아별 계획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집단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보다 선호한다. 아동의 웰빙에 대한 중재적인 이해가 조지의 출발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본아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어디 본아에 걸친 신중한 합동 조사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을 위한 공동의 성과물을 달성한다.	통합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의 고려사항은 공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의 고려사항과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성과, 최대한의 지원 활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협력하도록 한다. 공동의 목표 설정, 수요 파악 및 분석, 설계, 자원 동원, 이행,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그리고 맥락을 고려한 지속적인 상황 및 보호 분석이 필요하다.	(앞장에서 이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한 사례 조정과 이관을 위한 다분야 연계의 간소화</li> <li>• 아동 중심의 토크 개션 촉진 (예: 아동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교육)</li> <li>•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신리사회적 고통을 다룰 수 있도록 개별화된 전문 지원 제공</li> </ul> <p>프로그램은 조혼이나 가족 분리 같은 해로운 대응 기제를 줄이기 위해 심리안보, 아동 보호,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을 결합한다. 아동 보호, 현금 지원, 생계 복원, 진보에 걸친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생계 지원, 가족 강화 개입을 통해 가족 분리와 아동 집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룬다. 프로그램은 성 및 젠더기반폭력(SGBV) 아동 생존자나 군대 또는 다정단체에 징집된 자 있는 아동에 대한 중재적인 대응을 위해 사례 관리, 보건과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개입 관련 기회를 활용한다.</p>

#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는 피해를 입은 아동과 돌봄제공자, 커뮤니티 보호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 공동 프로그램과 통합된 프로그램(2개 이상 분야가 아동의 수요와 보호 위험을 다루기 위해 협력하는 프로그램)에는 (1) 전문적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아동 보호 전문가와 (2) 전문적인 분야별 개입을 실시하는 비 아동 보호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3) 두 활동 주체 모두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기타 분야 활동 주체는 분야별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면서도 아동의 웰빙과 발달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과 개입을 정의하고, 개발하고, 이행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기능한다. (아래에 제시된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의 목표 참고)

비 아동 보호 분야 전문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호 위험을 다루면서 자신이 소속된 분야에서의 개입을 통해 아동 보호 성과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동 보호 전문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 보호 전문가는 기술적 지원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입의 질과 조화를 보장한다.

플랜 인터내셔널의 통합적 접근법



## 기준에 포함된 정보는?

여기에 제시된 기준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아동 보호 및 기타 분야 활동 주체를 위해 제안하는 주류화 및 통합 관련 핵심 활동
- 핵심 지표
- 지침

그러나 이 기준들은 각 인도주의 분야에 대한 분야별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분야

별 지침은 『경제회복 최소기준』(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 MERS), 『교육을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INEE), 『Sphere 기준』처럼 각 분야와 관련된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항상 2개 (이상의) 기준이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 분야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 배분

식량 및 비식량물품(Non-food Items, NFI)을 포함한 구호 물품의 배분은 긴급 상황 대응 시 다양한 분야에서 취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 중 하나다. 모든 유형의 배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시의적절함
- 피해 집단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함
- 잘 계획되어 있음
- 접근 가능함
- 안전함

이를 위해 각 분야는 배분 시스템을 설계하고 목표 집단이 필요로 하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물품을 선정하는 작업에 여성, 남성, 여아, 남아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배분을 계획하고 이행할 때 아동 보호 및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활동 주체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아동 보호 직원은 등록 및 배분 팀에게 다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 아동 보호 위험
- 취약성 기준
- 위기 아동(예: 아동가장 가구, 주 돌봄제공자가 노인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 장애 아동)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

피해 커뮤니티는 모든 지원과 구호 물품이 무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폭력과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기밀이 유지되며 접근 가능한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폭력과 학대 제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의 등록 과정 또는 배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 배분 시간대는 등교를 포함한 여성과 아동의 일상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배분 장소에 갈 때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아동이나 가구(예: 어린 아동을 혼자 둘 수 밖에 없는 돌봄제공자)

를 위한 물품 전달 방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다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구의 모든 성인 여성을 주 수령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동가장 가구와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은 (1) 본인 명의의 배분 카드와 (2) 추가적인 분리 또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량과 비식량물품(NFI)을 배분 받아야 한다. 특정 아동 집단에 한정된 배분은 지양해야 한다. 그 대신 배분 담당 직원이 아동 보호 분야 직원과 조정하여 제한적인 배분이나 목표 대상이 한정된 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도 가장 취약한 집단에 지원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도적 지원 주체의 성적 착취와 학대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아동 세이프가딩

모든 기관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주체와 이들이 보호해야 할 아동 사이의 극도로 불균형한 권력 관계로 인해 강력한 세이프가딩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법률과 관행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인도적 지원 주체는 *성적 착취 및 학대에 관한 IASC 6가지 핵심 원칙(IASC Six Core Principles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002)*의 구속을 받는다. 아동 세이프가딩 원칙은 현금 및 바우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에 적용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딩 정책, 행동강령,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며 효과적인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에 관한 추가 정보는 **기준 2: 인적 자원**과 아래에 제시된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 참여

모든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분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사와 분석 및 개입에 적절성과 시급성을 더해 준다. 아동의 취약성은 흔히 역량의 부족보다는 권력과 지위의 부족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전체 프로그램 주기에 걸쳐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와 아동 최선의 이익,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준 3, 4, 5 참고) 다양한 아동 집단의 참여와 견해, 우려사항, 제안 등이 프로그램 설계와 이행 및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참여와 아동 세이프가딩은 (1) 가장 중요한 원칙 또는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eople)* 의무와 (2)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에 명시된 서약을 준수하는 데 기여한다.

##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은 아동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학대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설계 시 이러한 지

원이 아동 및 아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출생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지원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입,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참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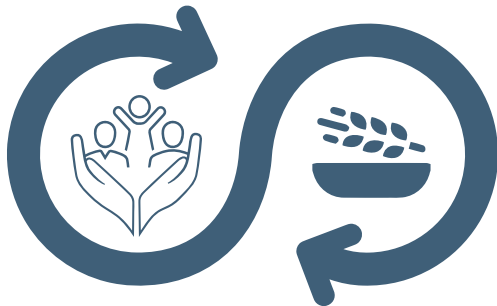
## 참고자료



- ‘Statement: The Centrality of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13.
- ‘Placing Protection at the Centre of Humanitarian Action: A Contribution to the World Humanitarian Summit’, UNHCR, 2015.
-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Section 3, Protection Principles.
- ‘Protection Mainstreaming’, Global Protection Cluster. [Website]
- ‘Brief on Protection Mainstreaming’, Global Protection Cluster.
- *Applying Basic Child Protection Mainstreaming: Training for Field Staff in Non-protection Sectors (Facilitator’s Guide)*, Child Fund International, World Vision,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Save the Children.
- ‘Introduction’, *Child Protection Mainstreaming Case Studies Serie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Centrality of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GPC 2017 Review*, Global Protection Cluster.
- *Roundtable Report: A Framework for Collaboration Between Child Protection and Education in Humanitarian Context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2019.
- ‘Keeping Children Safe’. [Website]
- *IASC Six Principles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002, IASC, 2002.
-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HS Alliance, Group URD, the Sphere Project, 2014.
- *Cash Transfer Programming in the Education and Child Protection sectors: Literature Review and Evidence Maps*, Cash Learning Partnership,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he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 기준 21: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22: 생계와 아동 보호, 기준 25: 영양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식량안보는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상당 수준 개선할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대응이다.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자신의 식이 관련 수요와 식품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식량 안보 위기는 아동 보호 위험, 그리고 방임이나 조혼, 아동 노동 같은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아동의 웰빙과 아동 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는 4가지 식량안보 요소-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활용성-로 통합되어야 한다. 본 기준은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분야 사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조정과 상보성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 기준

인도적 위기에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아동 보호 위험을 경감하고 대응하는 식량안보가 보장된 환경에 거주한다.

## 21.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식량안보 분야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1.1.1. 식량 불안 위기나 보호 우려사항을 가진 가구에 대한 공동 식별, 분석, 모니터링,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및 아동과 관련된 기존의 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와 방법론, 그리고 지표를 조정한다.
- 아동의 식량안보와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 수집
  - 보호 우려사항이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하는지 혹은 악화시키는지 여부 파악
  - 모든 모니터링 및 조사에 아동의 인식 반영
  -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 21.1.2.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공동 메커니즘이 무엇일지에 대해 합의한다.
- 21.1.3.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 분야를 식별한다.
- 21.1.4. 위기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수립한다.
- 21.1.5.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식량 불안 또는 아동 보호 문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위한 대응 개입을 시행한다.
- 
- 21.1.6.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개입을 조정한다.
- 21.1.7. 아동이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의사결정 과정과 식량안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체계에서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 AAP)*의 일환이다. (원칙 참고)
- 21.1.8. 식량안보 담당 직원과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및 식량안보 우려사항, 원칙, 접근법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이 아동 보호 및 식량안보 위기와 관련해 드러나거나 발견된 사례를 정확한 서비스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1.1.9. 아동 친화적인 다분야 아동 보호 이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하여 식량안보 활동 주체가 아동 보호 사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1.1.10. 아동 생존자, 위기 아동, 해당 아동의 가족을 위한 공동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과 기밀이 유지되는 이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21.1.11. 의도치 않은 모든 부정적 결과를 문서화하고 다루며, 다음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한다.
- 식량안보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아동 보호 개입이 가구의 식량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21.1.12. 아동 친화적인 아동 보호 메시지를 식량안보 개입에 포함시킨다.
- 21.1.13.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의 일환으로 보호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 21.1.14. 모든 식량안보 담당 직원과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훈련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에 서명하게 한다.
- 21.1.15. 아동 보호와 식량안보 사이의 연관성과 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21.1.16.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개입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옹호하거나 전략적인 대비 및 비상 대책 계획, 대응 평가, 조기 복구, 자원 할당에 반영한다.
- 21.1.17. 식량안보 활동 주체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식량안보 프로그램과 개입의 대비<sup>preparedness</sup>,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 아동 보호를 포함한다.
  - 프로그램이 위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보호적이며, 접근 가능함
  - 프로그램이 아동의 다양한 젠더와 연령, 장애, 발달 단계, 취약성, 영양 관련 수요, 가족 환경을 다룸
- 21.1.18.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을 식량안보 팀에 포함시킨다(예: 아동 보호 담당자나 아동 친화적인 헬프데스크 담당자로).
  - 위험에 처한 가구와 수혜자를 식별하는 경우
  - 식량과 물자를 배분하는 경우
  - 대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 아동 보호 분야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1.1.19. 현물,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을 포함한 식량안보 지원에 관련한 정보와 식량안보 서비스로의 이관을 아동 보호 활동에 포함시킨다.
- 21.1.20.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사회적 보호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모든 간극과 정체 현상, 장벽을 완화한다.

### 식량안보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1.1.21. 아동 보호 및 아동의 참여를 식량안보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포함시킨다.
- 21.1.22. 피해인구의 모든 하위집단을 식량안보 개입의 설계와 이행 및 모니터링에 참여시킨다.



- 21.1.23. 프로그램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 아동의 식량안보 및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 제공
  - 시장, 배분 장소, 기타 형태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물리적 안전 위험 조사
  - 문해력, 신분증 등 수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파악
  - 최적의 개입 시기 조사
  -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람 등 특정 집단이 가진 수요 판단
- 21.1.24. 모든 식량안보 활동 주체가 세이프가딩 절차, 행동강령,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정책에 서명하고 이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한다. 또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보고 및 이관 메커니즘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 21.1.25. 현물, 현금 및 바우처 등 모든 형태의 지원에 세이프가딩 원칙을 적용한다. 
- 21.1.26. 다음을 통해 피해인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현황 조사를 활용하여 식량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 식별
  - 다양한 집단이 가진 접근 장벽 식별
  -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파악 및 이행
  - 일부다처제가 시행되는 경우, 다른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성인 여성을 주요 지원 수혜자로 등록
- 21.1.27. 가구주인 아동 및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수혜자 카드를 제공하여 그들이 본인 명의로 현물, 현금, 바우처를 포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1.1.28. 다음을 위해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한다. 
  - 가족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가족 분리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
  - 아동이 절도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
  - 아동 노동을 조장하지 않도록 현금지원 취로사업(cash-for-work)을 통한 개입 시기가 생계 활동의 성수기와 겹치지 않도록 함

## 21.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1.2.1. 대상 지역 내 아동 보호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는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비율	100%	'통합적 접근법'은 아동의 웰빙과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식량안보 프로그램 설계에 통합된 아동 보호 프로그램 개입을 가리킨다.

## 21.3. 지침

### 21.3.1. 위기 아동

아동 보호 및 식량안보 활동 주체는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아동의 전체 목록은 '아동'의 의미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황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에는 전통적인 '가구' 모델이 혼자 사는 아동, 거리에서 사는 아동, 가구주인 아동 등 위험에 처한 많은 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21.3.2. 아동 보호 담당자

아동 보호 위험의 공동 식별 및 경감 활동을 지원하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식량안보 팀 내에 아동 보호 연락 담당자 배치
- 아동 보호팀 동료들과의 협력
- 기존의 커뮤니티/마을 아동 보호 위원회와의 협력

아동 보호 담당자는 협동을 지원하고, 핵심 결정과 과정에 관한 합의를 장려하고, 보호 우려 사항을 이관하며, 식량안보 개입이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보호 담당자는 아동 보호 이슈는 물론, 보호 이슈가 각 연령대, 장애와 연결되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21.3.3. 표적 지원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위기 아동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두 분야가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취약한 인구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
- 피해인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자원이 제한적일 때 공동의 옹호 메시지 개발

### 21.3.4. 식량 배분

식량안보 대응에 식량 배분이 포함될 경우, 배분 장소와 과정이 아동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여성과 아동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어두운 밤에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표시가 명확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경로에 배분 장소 설치
- 모든 배분 장소에 아동 세이프가딩,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과 보고에 관한 아동 친화적인 메시지를 눈에 잘 띄도록 게시
-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업무에 여성과 남성 모두 고용
- 배분 팀의 순환 근무
- (1)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고 (2) 실종 아동을 위한 구역이 포함된 대기 공간 설계
- 영유아를 동반한 돌봄제공자를 위해 배분 장소에 그늘이나 안전한 장소 마련
- 신체 또는 보호 관련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줄을 서 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등록소 및 배분 장소에 별도의 대기 및 입장 줄 마련
- 배분 장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인 배분 수단 마련
- 아동, 임신부 및 수유 중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특정 물품도 배분에 포함



### 21.3.5.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

아동에 대한 피해 혐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은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 메커니즘은 기밀이 유지되고, 아동 친화적이며,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고위 직원은 접수된 보고의 수와 유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응이 지연되면 생존자에 대한 학대나 착취 또는 위협이 반복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응을 취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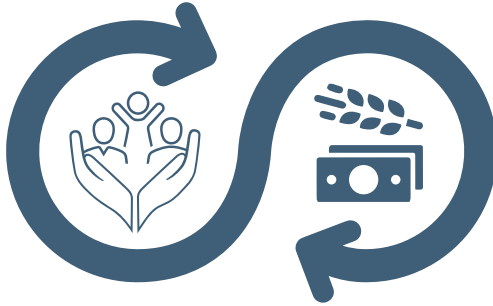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Food Security and Nutrition',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The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17.
- *'IASC Task Team on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19.
- *Protection in Practice: Food Assistance with Safety and Dignity*, World Food Programme (WFP), 2013.
- *FAO Guidance Note: Child Labour in Agriculture in Protracted Crises, Fragile and Humanitarian Contexts*, FAO, 2017.
-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Website]
- *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BM International, Bensheim, HelpAge International, London, Handicap International, Lyon, 2018.
- *Cash Transfer Briefing Package for Food Security Cluster Coordinators 2017*, Global Food Security Cluster, 2017.
- *Child Safeguarding in Cash Transfer Programming: A Practical Tool*,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Save the Children,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2. [Update Pending]
- *Cash Based Assistance: Programme Quality Toolbox*,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2018.
- *Toolkit for Optimizing Cash-based Interventions for Protection from Gender-based Violence: Mainstreaming GBV Considerations in Cash-based Initiatives and Utilizing Cash in GBV Response*,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8.
- *'Keeping Children Safe'*. [Website]



## 기준 22: 생계와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21: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기준 25: 영양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생계’는 개인, 가족, 커뮤니티가 생계를 유지(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얻는 행위)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원, 기회, 활동을 다루는 경제적 회복의 한 부분이다. 인도적 위기는 흔히 고용 부족, 열악한 기반시설, 양질의 교육 부족 등 기존의 어려움을 악화시켜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식량과 쉼터, 교육,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이 줄어들면 아동은 모든 형태의 보호 우려사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때 경제적 회복과 생계 개입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당한 아동 보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잘 계획됨
- 적절한 보호자 및 노동 가능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아동 보호 원칙에 따라 시행됨
- 『경제회복 최소기준』(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 MERS)을 바탕으로 함



### 기준

돌봄제공자와 노동 가능 연령대의 아동이 생계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생계 프로그램 활동에 통합해야 한다.

## 22.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생계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2.1.1. 생계 불안이나 보호 문제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가구를 공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계와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와 방법론, 그리고 지표를 조정한다.
  - 아동과 가족의 생계 및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 수집
  - 보호 우려사항이 생계 현황을 개선하고 있는지, 악화시키고 있는지 여부 파악
  - 모든 모니터링 및 조사 활동에 아동의 인식 반영
  -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 22.1.2.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공동 메커니즘이 무엇일지에 대해 합의한다.
- 22.1.3.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생계 분야 및 아동 보호 분야가 공유하는 공통의 관심 분야를 식별한다.
- 22.1.4. 위기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수립한다.
- 22.1.5.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생계 불안 또는 아동 보호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위한 대응 개입을 시행한다.
- 22.1.6.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개입을 조정한다.
- 22.1.7.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구조, 생계와 관련된 현장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원칙 참고)
- 22.1.8. 학대, 방임, 착취, 폭력 등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는 아동(및 가족)을 위해 공동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과 아동 친화적이고 기밀이 유지되는 다분야 아동 보호 이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22.1.9. 생계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우려사항, 원칙,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이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과 아동 보호와 관련해 공개되거나 확인된 사례를 안전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2.1.10. 의도하지 않은 모든 부정적 결과를 문서화하고 다루며, 다음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한다.
  - 생계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아동 보호 개입이 생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22.1.11. 아동 친화적인 아동 보호 메시지를 생계 개입에 포함시킨다.
- 22.1.12.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 AAP)*의 일환으로 보호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를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 22.1.13. 생계와 아동 보호 개입의 연관성이 전략적인 대비 및 비상 대책 계획, 대응 평가, 조기 복구, 자원 할당 등에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 22.1.14. 아동 보호 분야와 생계 분야의 연관성과 협력사항을 정기적으로 살펴본다.
- 22.1.15. 생계 활동 주체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조정을 통해 생계 프로그램과 개입의 대비,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 아동 보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개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위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보호적이고, 접근 가능함
  - 아동의 다양한 젠더와 연령, 장애, 발달 단계, 취약성, 영양 관련 수요, 가족 환경을 다룸
  - 학교 출석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주 돌봄제공자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육 자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제공
- 22.1.16. 아동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전용 공간을 포함해,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시설, 메커니즘, 그리고 필수 서비스의 개발과 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조정한다.
- 22.1.17. 모든 생계 담당 직원과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훈련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에 서명한다. 

##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2.1.18. 아동 보호 메시지에 아동, 돌봄제공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생계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킨다.
- 22.1.19. 다음과 같은 아동 보호 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복,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 생계 지원 서비스로의 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관된 가구의 개인 정보 보호
  - 아동과 가족의 정보 기밀 유지
- 22.1.20. 기존 사회적 보호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모든 간극과 정체 현상, 장벽을 완화한다.
- 22.1.2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을 생계 팀에(예: 아동 보호 담당자나 아동 친화적인 헬프데스크 담당으로) 포함시킨다.

- 위험에 처한 가구와 수혜자를 식별하는 경우
- 배분을 진행하는 경우
- 대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 생계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2.1.22. 아동 보호 및 아동의 참여를 생계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포함시킨다.
- 생계 개입이 보육 및 학교 출석에 미치는 영향 고려
  - 나이가 있는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착취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 배제
  - 노동 가능 연령대의 아동이 가진 젠더, 연령, 장애 관련 수요를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통합
- 22.1.23. 프로그램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 문해력, 신분증 등 생계 서비스 수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파악
  - 최적의 개입 시기 조사
  -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람 등 특정 집단의 수요 판단
- 22.1.24. 다음을 통해 피해인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현황 조사를 활용하여 생계 지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 및 가족 식별. 생계 지원에 대한 접근 장벽에는 다음이 포함됨
    - 안전상의 위험
    - 생계 기회에 대한 접근이 불공평함
    - 젠더, 장애, 가구 구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
  -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파악 및 이행
  - 일부다처제가 시행되는 경우, 다른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성인 여성을 주요 지원 수혜자로 등록
- 22.1.25. 피해인구의 모든 하위그룹을 생계 개입의 설계와 이행 및 모니터링에 참여시킨다.
- 22.1.26. 가구주인 아동 및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수혜자 카드를 제공하여 그들이 본인 명의로 현물, 현금, 바우처를 포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1) 가족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가족 분리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하고 (2) 아동이 절도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 22.1.27. 다음을 위해 아동 보호, 보호,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또는 시장 기반 프로그램 활동 주체(예: 현금 실무그룹(Cash Working Group))과 협력한다.
- 관련 기관에 대한 매핑 작업
  - 노동, 시장, 가치 사슬<sup>value chain</sup>에 대한 분석 실시
  - 아동 노동, 착취, 질 낮은 보육, 불규칙한 학교 출석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익성 있고 접근 가능하며 바람직한 생계 활동 식별
- 22.1.28. 생계 개입이 다음과 같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모든 구속력 있는 국가 및 국제 노동법과 관련 표준을 준수함
  -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임
  - 보육 및 학교 출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아동의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2.1.29. 아동 보호 및 교육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위기 아동과 가정을 적절한 생계, 교육, 직업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수 있는 공동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 22.1.30. 아동 보호 및 교육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한다.
- 돌봄제공자가 생계 개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 시설 또는 커뮤니티 보육 메커니즘 지원
  - 청소년을 위한 생활 기술, 문해 및 수해 교육
  - 청소년을 위한 견습 기회
  - 저축 습관과 가정의 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기회



## 22.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2.2.1.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이 가장인 가구에 살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지내는 아동의 돌봄제공자가 생계지원을 받은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보고한 비율	90%	주어진 맥락에서 '취약성'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도록 한다. 취약한 아동에는 노인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돌봄제공자와 살고 있는 아동,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서 석방된 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간(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2.2.2. 생계 지원을 받도록 이관된 가구 중 위험하거나 유해한 대응 기제의 사용이 감소했거나 대처 전략 감소 지수(Reduced Coping Strategy Index, RCSI) 점수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가구의 비율

90%

대처 전략 지수(Coping Strategy Index, CSI)와 대처 전략 감소 지수(RCSI)는 가구의 식량 불안을 측정하는 식량안보 측정 도구다. 이 점수는 가구가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 보호 목적을 위한 대처 전략 지수(CSI)의 활용은 식량안보 분야와 아동 보호 분야 간의 통합적 접근법과 공동 분석의 일환으로 식량안보 분야 활동 주제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CSI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resources.vam.wfp.org/node/6> 튜토리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2.3. 지침

### 22.3.1. 위기 아동

아동 보호, 경제적 회복, 생계를 지원하는 활동 주체들은 위기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위기 아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도입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현황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에는 ‘가구’가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측정 단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과 관련해 맥락화되어 있거나, 젠더화되어 있거나, 차별적인 관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집단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
- 공식적인 일자리에서 배제됨
- 착취적이고 비공식적인 노동 환경
- 학대적인 관계



특정 젠더나 집단에 적합한 노동을 둘러싼 전통적 고정관념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과 청소년 기여 및 기타 위험군은 젠더나 문화적 규범과 관련된 장벽에 직면할 때가 많다. 이러한 규범은 타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취약성도 증가시킨다. 공식적인 일자리가 없을 경우, 위기 아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비공식적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음
- 착취적인 노동 환경에 발을 들임
- 학대적인 관계에 의존하거나 종속됨

- 성적 착취를 경험함

### 22.3.2. 아동 보호 담당자

아동 보호 위험에 대한 공동 식별과 위험 경감을 지원하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생계 팀 내에 아동 보호 담당자 배치
- 아동 보호 분야의 동료와의 조정
- 상황상 적절한 경우, 기존의 커뮤니티/마을 아동 보호 위원회와의 협력

아동 보호 담당자는 협력을 지원하고, 핵심 결정과 과정에 대한 합의를 장려하고, 보호 우려 사항을 이관하며, 생계 지원이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22.3.3. 가구 및 가족의 의무 관리

피해인구 중에서 세분화한 집단과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 소득 창출과 관련된 선호도와 우선순위, 현금지원 취로사업 기회, 각 가구가 지닌 기타 수요
- 개개인의 업무량
- 전통적인 젠더 역할의 변화와 관련된 가구 내 갈등

### 22.3.4.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밀이 유지되고,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조화를 이루는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AAP)*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필요할 경우 피드백을 받고 각종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고위 직원은 접수된 보고의 수와 유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응이 지연되면 생존자에 대한 학대나 착취 또는 위험이 반복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응을 취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22.3.5.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목적 현금** 혹은 현금은 특정 상황에서 가구와 아동이 자신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다른 서비스와 결합되면 아동 노동이나 조혼과 같은 부정적 대응 기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목적 현금이 아동 보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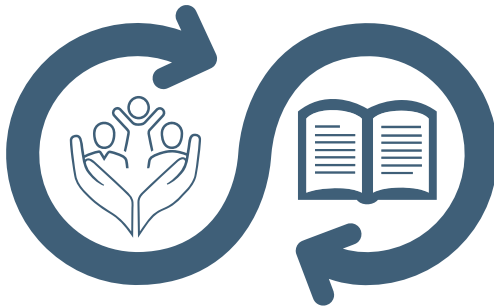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 Third Edition*, The SEEP Network, 2017.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9.
- *FAO Guidance Note: Child Labour in Agriculture in Protracted Crises, Fragile and Humanitarian Contexts*, FAO, 2017.
- *Child Safeguarding in Cash Transfer Programming: A Practical Tool*,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Save the Children,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2. [Update Pending]
- *Cash Based Assistance: Programme Quality Toolbox*,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2018.
- *Toolkit for Optimizing Cash-based Interventions for Protection from Gender-based Violence: Mainstreaming GBV Considerations in Cash-based Initiatives and Utilizing Cash in GBV Response*,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8.
- *'Keeping Children Safe'*. [Website]
-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Website]
- *Minimum Standard for Market Analysis (MISMA)*, 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 and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2018.

## 기준 23: 교육과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2: 인적 자원, 기준 10: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고통, 기준 12: 아동 노동,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6: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기준 2: 아동 보호 위협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모든 기준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아동 보호 분야와 교육 분야는 서로 많은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아동의 웰빙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더 큰 보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보호 우려사항은 아동이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교육적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비상사태 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는 양질의 교육을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며, 조정 가능한” 교육이자 다양성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교육 활동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아동의 회복력 향상
- 심리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 지원
- 보호 위협 경감
- 긍정적인 또래 관계와 사회적 결속 지원

- 아동의 역량과 자신감을 기르는 필수적인 생활 기술 촉진

본 기준은 교육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심층적인 교육 관련 지침은 『비상 사태 시 교육에 관한 최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교육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활동 주체 모두 공식적 교육 상황/학교 안팎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제시된 모든 핵심 활동은 두 분야의 활동 주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이 기준을 구성하는 구조는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의 통합적 기준 섹션에 있는 다른 기준들과 다르다.

## 기준

모든 아동이 전체 필수 활동에서 보호적이고, 포괄적이며, 존엄성과 참여를 증진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3.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교육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대비

- 23.1.1.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의 세이프가딩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한다.
- 23.1.2. 다분야 이관 경로를 개발하고, 교육 활동 주체들을 대상으로 보호 수요를 가진 아동을 안전하게 의뢰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 23.1.3. 교육과 아동 보호 직원/활동 주체가 체벌(신체적 처벌)과 기타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딩 절차와 정책에 서명하고 이에 관한 훈련을 받게 한다. (기준 2, 8 참고)
- 23.1.4. 다음 훈련을 포함하여 보다 보호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 심리적 응급처치



-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 젠더 및 장애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접근법
- 긍정적 훈육
- 참여적 방법
- 아동 보호 원칙과 우려사항 (『위기 상황에서의 INEE 교사 훈련 및 동료 코칭 패키지』(INEE Teachers in Crisis Contexts (TiCC) Training and Peer Coaching Packs),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NEE 지침과 사회정서학습』(INEE Guidance Note on Psychosocial Support (PSS) an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참고

## 수요 조사 및 분석

- 23.1.5. 다음에 초점을 맞춘 공동 교육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촉진한다.
-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
  - 젠더, 포괄성, 장애, 보호, 그리고 위기 발생 이전 맥락과 관련된 이슈
  - 교육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물리적 장벽, 커뮤니케이션 장벽, 태도 상의 장벽 포함)
  - 학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23.1.6. 학습 환경 안팎의 보호 우려사항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 아동, 가족,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의한다.
- 23.1.7. 조사 결과를 협의를 나눈 사람을 포함해 교육 담당 직원과 아동 보호 담당 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 23.1.8. 다음과 같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 시설을 매핑한다.
- 군사 집단과 가까움
  - 폭발물에 오염됨
  - 군대에 의해 공격받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음
  - 위험 요소 노출이나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임시 공동 쉼터로 사용되고 있음

## 계획

- 23.1.9.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에 합의한다.
- 23.1.10.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 커리큘럼과 접근법이 모두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 포괄적임
- 받아들여질 만함(맥락을 민감하게 고려했으며 번역이 되어 있음)
- 비차별적임
- (청각보조기기, 교육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과학기술 활용을 통해 모든 아동의 참여를 지원함)

23.1.11. 시설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기준에 따라 교육 시설을 설계한다.

-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갖추
- 안전함
- 품위를 갖추
-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음

23.1.12. 여아와 미혼모 등 특정 집단의 학업 유지와 관련된 이슈와 학교 등록을 가로막는 장벽을 다룰 수 있도록 수요 분석을 활용한다.



23.1.13. 0~5세 아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 개입을 계획한다.

-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
- 유아기 발달을 촉진함
-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지닌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해결함

23.1.14.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 그룹 활동, 임시 학습 공간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조직한다. (기준 15 참고)



23.1.15. 학교에서 진행되는 중등 교육, 속성 학습 과정<sup>accelerated learning</sup>, 직업 훈련, 생활 기술 등을 포함해 모든 수준의 청소년에게 적절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 선택지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공식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비공식적 교육을 청소년 그룹 활동에 통합한다.

23.1.16. 아동의 보호 수요를 민감하게 고려하고 인구의 다양한 구성원(예: 장애인)을 반영하는 직원 채용 및 선발 과정을 진행한다.

## 이행 및 모니터링

23.1.17. 공동 정책, 전략, 옹호활동 개요서를 작성한다.

23.1.18. 모든 정책과 옹호활동을 포함하여, 전략적 계획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공동 조정 그룹을 설립한다.

23.1.19. 아동, 돌봄제공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학교 정책, 아동 친화적인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배포한다.

23.1.20. 주 돌봄제공자, 학부모-교사 협의회, 기타 집단이 다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긍정적인 아동 돌봄
  - 괴롭힘 방지 및 차별 금지를 위한 개입
  -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타 주제
- 23.1.21. 아동 및 관련 분야와 협력하여 아동이 교육 시설(예: 적절한 위생 시설)에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23.1.22. 학교 안팎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관련된 아동 보호 및 기타 분야별 메시지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
- 위험 경감
  - 생활 기술 Life Skills
  - 성 및 재생산 건강
  - 개인위생
  - 전염병 확산 예방
- 23.1.23. *여아, 장애 아동, 난민이거나 무국적자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옹호한다.*
- 23.1.24. 유아기 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단계와 학령기에 있는 아동의 교육 데이터를 성별, 연령, 장애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를 인도적 개입에 반영하고 개선한다.
- 23.1.25. 국가 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세분화를 옹호한다.
- 23.1.26. 교육 수준별로 출석률과 학업 유지율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교육 관련 위험과 장벽 및 추세를 파악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식별된 우려를 해결한다.
- 23.1.27. 다음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 이관 경로의 활용
  - (체벌,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발생과 관련하여) 행동강령의 준수
  - 교육 시설 안팎에서의 아동 보호 상황
- 23.1.28. 교육 시설 안팎에 존재하는 (1) 접근 장벽과 (2) 아동 보호 위험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아동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한다.
- 23.1.29. 필요할 경우 교육 시설을 군사 구역과 자연 재해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먼 곳으로 이전한다.
- 23.1.30.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을 보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 당국과 함께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23.1.31. *『무력 분쟁 시 학교와 대학을 군사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otecting Schools and Universities from Military Use during Armed Conflict)*을 활용한다.



## 평가

- 23.1.32. 아동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여 (1) 양질의 교육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아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2) 아동 보호 개입이 교육의 질 및 교육상황에서의 보호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문서화한다.
- 23.1.33.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발견한 의도치 않은 모든 부정적 결과를 다룬다.

## ➔ 23.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3.2.1. 목표 지역에서 조사한 비공식적 및 공식적 학습 센터 가운데 합의된 안전 및 보편적 설계 기준을 100% 충족하는 센터의 비율	100%	'안전 기준'은 안전하고 안보가 유지되는 기반시설, 폭발물이 제거된 장소, 적절한 시설, 충분한 공간, (학습 센터 안팎에서의) 접근성, (위치, 젠더, 언어, 인종, 종교, 학습 환경 면에서) 포괄적인 환경 등을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국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보편적 설계 기준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용어집을 참고하도록 한다. 맥락에 따라 목표 달성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23.2.2. 참여적이고,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규율과 젠더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접근법에 관한 지식을 갖춘 교육 담당 직원의 비율	100%	적절한 접근법은 아동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최소기준 모두에 부합해야 하며, 국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23.2.3. 교육 활동 주체가 아동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에 이관한 횟수 및 비율	각국에서 혹은 맥락에 따라 추후에 결정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관'은 인도주의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기밀유지, 존중 및 안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23.3. 지침

자세한 내용은 『*INEE 최소기준*』 도메인 2~4(접근성 및 학습 환경, 교수 및 학습, 교사 및 기타 교육 인력)를 참고한다.

### 23.3.1. 교육 활동 주체

본 기준에서 ‘교육 활동 주체’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 직원(교사, 교장, 이사장 등)
- 행정 직원 및 지원 인력(관리자, 인사 관리자, 행정관, 정책 자문관, 미화원, 경비원 등)

교육 활동 주체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준전문가(유급 직원과 자원봉사자 포함),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인력이 포함된다. 또한 (1) 인도주의 및 개발 기관에서 근무하고 (2)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 23.3.2. 양질의 보호적인 교육

교육자는 모든 아동의 안전과 참여 및 존중을 증진하는 포괄적이고 보호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참여적인 교수법, 젠더와 장애를 민감하게 고려한 교실 관리, 긍정적 훈육과 관련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23.3.3. 행정상의 유연성

학교 운영 방식의 유연성은 학교 등록률과 학업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

학교 등록 시 아동에게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학교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은 출생 증명과 문서화를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다. 학교 입학은 모든 학습 단계를 통틀어 역량 및 능력(capacity and competency) 테스트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제반 문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아동도 입학하고 진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업 일정, 연간 시간표, 시설의 설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학교의 위치나 수업 비용, 임시 또는 영구 교육 시설과 관련된 결정은 아동, 가족, 커뮤니티,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아동이 등교를 하거나 단체로 모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식 수업 등 유연한 대안 활용이 적절할 수 있다.

### 23.3.4. 형평성 및 포괄성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피해를 야기하고 학교 중퇴율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서 형평성을 증진하려면 교육 접근성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다양한 아동들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형평성을 증진하는 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커리큘럼에 차별적 요소나 유해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 아동에게 무료 학습 자료 제공
- 월경 위생 용품 제공 및 이에 대한 인식 제고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예: 교사 보조원 또는 학교 기반의 가족 지원 인력 제공)
- 아동 보호 및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아동을 위해 형평성 및 안전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장려
  - 여아
  - 다양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 성적 특성을 가진 아동
  - 법에 저촉되는 아동
  - 주술<sup>witchcraft</sup>을 부린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동
  - 장애 아동
  - 난민이나 실향민 또는 이주민인 아동
  - 커뮤니티에 의해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모든 아동

### 23.3.5. 교육 직원의 훈련과 웰빙

교사와 교육 행정 인력의 웰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보호적인 학습 환경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교사 대상 동료 지원<sup>peer support</sup>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트라우마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교사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서비스 제공
- 학급 규모 제한
- 교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방지

### 23.3.6. 적절한 학습 시설

교육 시설은 보편적 설계 원칙을 따르고,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며, 각 학습자와 교육 분야 종사자의 안전과 웰빙 및 존엄성을 증진해야 한다. 교육 시설은 출입이 제한되거나 모니터링 되는 외부인 통제 구역이어야 하며, 월경 위생 관리(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HM)를 포함해 적절한 개인위생과 폐기물 관리를 증진하는 깨끗한 물과 공중위생 및 개인 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준 26 참고)



### 23.3.7.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안타깝게도 교육 인력이 아동을 차별하거나 심지어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기도 한다. 교육 인력은 온라인 학대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 또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보고 및 이관 경로
- 사건을 보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커뮤니티 훈련
- 교육 분야 종사자와 학생 또는 여타 사람들이 저지른 학대 사건 보고에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대응
- 적절한 행동강령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 제고



아동 보호 및 교육 분야 활동 주체, 아동, 가족, 커뮤니티는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23.3.8. 공격

교육 시설은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의한 폭력이나 아동 징집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부 맥락에서는 여아를 환영하는 교육 시설(그리고 여아 자체)이 여아 교육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교육 관련 제반 시설이 무장 세력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폭력과 공격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학교를 위한 조기 현황 조사 및 보호 전략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학교와 학습 공간 구축
- 교육 시설 접근과 관련된 위험 완화

교육 활동 주체, 아동 보호 활동 주체, 아동, 돌봄제공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해 등하굣길에 괴롭힘과 신체적 또는 성적 공격이 벌어질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감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경감에는 교육 시설을 이동시키거나 지뢰 제거 등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교육 활동 주체는 옹호활동, 모니터링, 보고를 위한 역할과 책임에 합의해야 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결의안 1612호(Resolution 1612)에 제시된 지침을 준

수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23.3.9. 메시지 전달

교육은 아동이 필수적인 학업 지식, 현실 인식, 생활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인식 제고 및 위험 경감 관련 자료는 장애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돌봄제공자와 협력하여 다음을 포함한 필수적인 보호 메시지를 파악하고 배포해야 한다.



- 가족 분리, 폭발물, 징집, 아동 노동, 조혼, 전염병, 괴롭힘, 온라인 학대 등의 위험과 기타 위험의 예방 및 경감
-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한 대피 절차와 재난 위험 경감 (기준 7 참고)
- 독립성, 시민 참여, 대인 관계를 지원하는 생활 기술
- 아동의 권리, 비판적 사고, 갈등 예방, 긍정적인 대처,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기술 등과 같은 주제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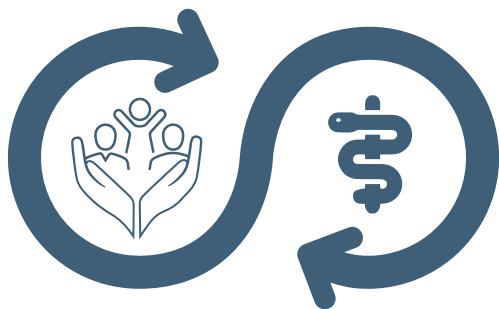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INEE, 2010.
-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Website]
- *'Education',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UNICEF, 2017.
- *'Education and Life Skills',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pp. 66–73.
- *INEE Conflict-Sensitive Education Pack*, INEE.
- *INEE Guidance Note on Psychosocial Support (PSS) an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INEE.
- *'Teachers in Crisis Contexts'*, INEE. [Website]
- *Comprehensive School Safety: A Global Framework in Support of The Global Allian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in the Education Sector and the Worldwide Initiative for Safe Schools*, GADRRRES and UNISDR, 2017.

- *'SHLS Approach', Safe Healing and Learning Spaces Toolkit*,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16.
- *Roundtable Report: A Framework for Collaboration Between Child Protection and Education in Humanitarian Context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2019.

## 기준 24: 보건과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7: 신체적 위험과 상해, 기준 9: 성 및 젠더기반폭력, 기준 18: 사례 관리, 기준 25: 영양과 아동 보호, 기준 26: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보건 프로그램과 아동 보호 프로그램은 인도적 지원에서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연관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 보건을 지원하면 아동 보호 요인이 증대되며, 아동 보호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웰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보건과 아동 보호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띤다.

- 안전함
- 보호적임
- 포괄적임
- 체계적임
- 상호보완적임
- 모든 분야에 유효함
- 아동, 가족,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음

### 기준

모든 아동이 자신의 견해와 연령, 발달상의 수요를 반영하는 양질의 보호적인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24.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보건 분야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4.1.1. 보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동 보호와 관련된 우려사항이 있는 가구를 공동 식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 방법론, 지표를 조정한다.
- 모든 모니터링 및 조사에 아동의 관점 반영
  -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 보건 및 보호 우려사항을 서로의 조사와 평가 활동에 통합
- 24.1.2. 보건과 아동 보호의 공통 관심 분야를 파악한다.
- 24.1.3. 가장 효과적인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합의한다.
- 24.1.4.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보건과 아동 보호의 연관성을 다루는 개입을 포함한다.
- 24.1.5. (1) 보건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2) 아동 보호 개입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한다.
- 24.1.6. 의도치 않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다루고,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한다.
- 24.1.7. 보호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피드백 및 보호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 24.1.8. 모든 보건과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훈련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에 서명하게 한다.
- 24.1.9. 보건 의료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우려사항과 원칙 및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그들이 아동 보호 사례를 올바르게 예방하거나 식별 또는 경감,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4.1.10.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 우려사항과 원칙 및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그들이 보건 이슈를 올바르게 예방하거나 식별 또는 경감,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4.1.11. 전염병 발생 기간에 협력을 통해 다음을 수행한다.
- 모든 대면 아동 보호 활동에 질병 관리 프로토콜 적용
  - 보건 개입이 아동 보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예방
  - 아동 보호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보건 의료 서비스로의 이관 메커니즘 훈련 실시






## 아동 보호 분야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4.1.12. 다음과 같은 아동 보호 활동에 보건 의료 서비스 정보 및 이관 서비스를 포함한다.
- 이관된 가구의 개인 정보 보호
  - 아동과 가족의 기밀 유지
- 24.1.13. 아동 보호와 보건 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고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모든 간극과 정체 현상, 장벽을 완화한다.
- 24.1.14. 피해인구와 상호작용할 때 생활 환경 및 보건 우려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상황상 적절하다면 보건 활동 주체를 공동 협의에 참여시킨다.
- 24.1.15.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과 사례 관리를 위한 다분야 조정 시스템을 통해 보건 활동 주체와 협력한다. (기준 10 참고)
- 24.1.16. 출생 등록과 재산상 건강(예: 산후 관리 및 예방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구축한다.
- 24.1.17. 보건 상황상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의뢰와 입원이 진행되는 동안 돌봄제공자와 아동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 24.1.18. 모든 아동에게 적절하고,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맞춤형인 의료와 수술, 재활, 정형외과 보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보건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4.1.19. 보건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아동 보호 및 아동의 참여를 포함한다.
- 24.1.20. 아동 보호 사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활동 주체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24.1.21. 상황상 적절하다면 보건 개입에 아동 보호 메시지를 포함시킨다.
- 24.1.22. 다음을 통해 피해인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현황 조사를 활용하여 보건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과 가족 식별
  -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아동이 직면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식별 및 이행
  - 가구주인 아동, 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모두 등록
- 24.1.23. 프로그램 설계 기간에 다음과 같은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 아동의 보건 및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 제공
  - 특정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아동 수혜자의 요구 사항 파악
  - (교육 및 기타 아동기 활동을 고려하여) 보건 개입에 가장 적절한 시기 조사

- 특정 아동 집단의 수요 판단

- 24.1.24.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적절한 보건 정보를 공유한다.
- 24.1.25.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1) 가족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별거하지 않도록 하고 (2) 아동이 절도나 착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4.1.26. 보건 및 부상 감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아동의 수, 사건을 야기한 일이나 사람, 사건 시기, 사건 장소, 사건 원인(상황) 등에 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준 7 참고)
- 24.1.27.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입원과 치료 및 퇴원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트라우마를 민감하게 고려하며,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이행한다.
- 24.1.28. 아동 보호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이관 메커니즘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24.1.29. 상황상 적절한 경우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아동의 수요 해결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사와 아동 심리학자 및 정신건강 전문가의 채용을 촉진한다.
- 24.1.30. MHPSS와 사례 관리를 위한 다분야 조정 시스템을 통해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한다. (기준 10, 18 참고) 
- 24.1.31.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모든 아동이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성과 재생산 보건으로 서비스, 물자, 그리고 다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보건으로
  - 성폭력 및 가정 폭력과 동의
  - 결혼
  - 임신
  - 육아
- 

## 24.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4.2.1. 목표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활동 주체 가운데 학대, 방임, 착취, 폭력에 영향을 받은 아동 식별 훈련을 받은 활동 주체의 수와 비율	80%	훈련에는 학대, 방임, 착취, 그리고 폭력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징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에서 시간 범위(예: '채용 후 1개월 이내')를 추가해야 한다.
24.2.2. 의료 시설 당 공식 등록된 출생 비율	100%	
24.2.3. 목표 지역에서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시설의 수와 비율	100%	보건의료 시설을 매핑할 때 아동 친화적이라고 간주되는 서비스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 24.3. 지침

### 24.3.1. 위기 아동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보건 활동 주체는 학대, 방임, 착취, 폭력 등의 위기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보건 위험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에 직면한 아동의 유형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대안적 돌봄 시설에 있는 아동, 장애 아동, 최악의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성/젠더 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LGBTI) 아동, 군대 또는 무장 단체에 연루된 아동(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CAAFAG), 조혼 당사자로 살아가는 여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황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에는 '가구'가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측정 단위가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24.3.2. 통합적인 아동 보호 및 보건 개입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아동은 개별화된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여성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하기를 선호하는(혹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할 것을 요구 받는) 아동을 위해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있어야 한다.

모든 보건 관련 시설과 서비스는 전체 아동에게 접근 가능하고, 적절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해 아동에게 적합한 응급 피임 및 사후예방처치(post-exposure prophylaxis)(질병 예방)

- 폭발물 및 기타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생존한 아동에게 적합한 응급처치 용품
-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 계획 서비스

### 24.3.3.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아동 생존자

아동은 성적 폭력 및 학대를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통해 학대를 폭로(또는 식별)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공통적인 징후와 증상 예의 주시
-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활용
- 아동의 의견 확인 및 경청
- 아동의 폭로에 대해 공감적이고, 전문적이고, 차분하며, 기밀을 유지하는 태도로 대응
- 제시된 모든 대응 행동의 목적과 잠재적 결과를 아동에게 고지

아동 보호와 MHPSS, 그리고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
- 기밀유지
- 의무 보고 요건
-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및 학대와 관련된 국가 및 국제 법률 (기준 9, 10 참고)

### 24.3.4.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개별 아동과 그 가족의 보호와 보건 및 웰빙을 적절하고,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개입을 조직하고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보건과 아동 보호의 통합적 접근법에는 두 분야의 활동 주체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이관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 18 참고)

### 24.3.5. 전염병 발생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 보건,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아동 보호 등 여러 분야 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들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사례의 세분화와 문서화 및 추적을 위한 표준 절차
-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통 프로토콜
- 아동과 관련된 전염병 발생의 경우, 아동이 가진 고유한 위험과 취약성에 관한 명확하고, 조정되어 있으며,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티 메시지 전달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아동이 맞닥뜨리는 2차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 사망, 질병, 공공 보건 조치 등의 이유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을 위해서는 안전한 대안적 돌봄(가급적 친족 돌봄)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시적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전화 통화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안정과 지지를 얻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되도록 예측 가능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편이 좋다. 아동, 가족, 커뮤니티는 위기 발생 이전과 이후에 전염병 발생과 관련된 두려움과 분리, 차별, 상실, 기타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MHPSS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관찰 대상이거나, 치료 센터에 있거나, 검역 또는 격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 24.3.6. 부상

(기준 7, 8, 9, 11, 12 참고)

신체적 부상을 당할 위험은 젠더, 연령, 장애, 위치, 사회경제적 지위, 위험 요소에 따라 다르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보건 활동 주체는 다음을 통해 아동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아동, 가족, 커뮤니티가 일상적인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
- 부상당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하고 포괄적인 응급 의료 지원, 외상 수술, 회복 서비스 및 MHPSS 제공
- 상황상 적절한 경우, 부상, 불구, 장애에 관한 익명화 및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이를 예방적 개입에 반영함. 데이터는 젠더, 연령, 장애와 더불어 부상/사망의 원인, 위치, 상황에 따라서도 세분화하는 것이 이상적

### 24.3.7. 의무 기록

의사는 보통 범죄 행위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을 사법 당국에 알릴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일부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생존자(또는 목격자나 생존자의 가족)를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인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생존자가 처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의사-환자의 기밀유지 보장
- 피해방지 원칙<sup>Do no harm</sup> 준수
- 환자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무 기록 작성
- 의무 기록을 생존자 또는 돌봄제공자에게 직접 전달
-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아동의 수요와 잠재적 개입을 조사하고 우선순위 설정

### 24.3.8. 후송 및 의료시설 입원

인도적 지원 주체, 군인, 현지 기관, 그리고 커뮤니티는 아동이나 부모 또는 돌봄제공자를 후송하거나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기 전에 다음을 실시해야 한다.

- 아동과 돌봄제공자에 관한 상세한 신원 정보(성명, 생년월일, 가까운 친척, 출신지, 현재 거주지, 후송 장소 등) 수집
- 이와 관련된 기록의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
- 돌봄제공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적절한 돌봄 방안 마련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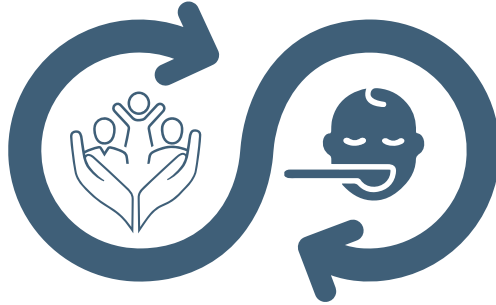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ealth’,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Manual for the Health Care of Children in Humanitarian Emergencies*, WHO, 2008.
-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CEF, 2012.
- *Inter Agency Guidelines for Case Management and Child Protection*,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4.
- *Guidance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8.
- *Clinical Care for Sexual Assault Survivors: A Multimedia Training Tool (Facilitator’s Guide)*, IRC, 2008.

## 기준 25: 영양과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21: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기준 24: 보건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영양 분야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분야 활동 주체는 특히 아동의 생후 첫 3년과 청소년기에 중요한 협력 기회를 갖는다. 가정 내에서의 영양 관련 습관과 금기 및 차별은 다양한 인구 구성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 특히 임신한 여아는 모든 형태의 영양 실조에 취약하다. 또한 장애 아동은 특히 영양실조 및 이와 관련된 손상에 취약하다. 영양 불균형은 흔히 돌봄제공자가 가족에게 식량, 수입, 보건의료 등을 제공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악화된다.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권리 및 웰빙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

### 기준

아동과 돌봄제공자, 특히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과 여아가 안전하고 충분하며 적절한 영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5.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영양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5.1.1.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동 보호 우려사항이 있는 가구를 공동 식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영양과 아동 보호와 관련된 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 방법론, 지표를 조정한다.
- 아동의 영양과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 수집
  - 모든 모니터링과 조사에 아동의 인식 반영
  -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 안전 및 자신들이 받고 있는 돌봄 상태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측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수단과 근거 포함
- 25.1.2.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다분야 메커니즘에 합의한다.
- 25.1.3.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영양 분야 및 아동 보호 활동 주체 모두의 공통 관심 분야를 파악한다.
- 25.1.4.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동 보호우려사항이 있는 아동과 가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통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수립한다.
- 25.1.5.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동 보호 우려사항이 있는 가구를 위해 프로그램 주기의 전체 단계에 걸쳐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통합적 대응 개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개입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커뮤니티 동원
  - 보건 시설 및 커뮤니티 내의 산모 자조 집단<sup>Mother-to-mother support groups</sup>
  - 영유아를 위한 심리사회적 자극 활동
  - 치료식 제공 서비스
  - 영아 수유·급식 민감화 프로그램
- 25.1.6. 보호 우려사항으로 인해 영양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하고 있는 경우, 모든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문서화하고 해결한다.
- 25.1.7.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개입을 조정한다.
- 기존의 조정 그룹 식별
  - 두 분야가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정 메커니즘 결정
- 25.1.8. 아동 보호 분야와 영양 분야 사이의 연관성과 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한다.
- 25.1.9. 영양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구조에서 아동이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원칙 참고)

25.1.10. (1) 영양 개입에는 아동 친화적인 아동 보호 메시지를, (2) 아동 보호 활동에는 영양실조 예방 메시지를 포함한다.

25.1.11. 영양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우려사항과 원칙 및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이 공개되거나 확인된 아동 보호 사례를 올바르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25.1.12. 아동 친화적인 다분야 이관 메커니즘과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하고 이행하여, 영양과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아동 보호 사례와 영양실조 사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한다. 영양실조가 사례 관리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판단하도록 한다.



25.1.13. 학대, 방임, 착취, 폭력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공동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과 기밀이 유지되는 이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25.1.14.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한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의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설계, 구축,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25.1.15. 모든 직원이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를 훈련 받고 이에 서명하게 한다.

###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25.1.16. 아동과 가족의 기밀을 유지하는 아동 보호 활동에 영양 서비스 정보와 이관 서비스(치료식 제공 서비스와 영아 수유·급식 민감화 프로그램 포함)를 포함시킨다.

25.1.17. 기존의 아동 보호 서비스를 파악하고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모든 간극과 정체 현상, 그리고 장벽을 완화한다.

25.1.18.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건의료 센터나 영양 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상을 이관한다.

- 영양실조 위험이 있는 가구와 아동
- 특히 모유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유 중인 여아와 청소년기 여아
- 장애 아동 또는 빨기와 삼킴에 문제가 있는 아동

25.1.19. 어머니가 없는 아이를 위해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나 유모(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대체 수유·급식 방안)를 식별한다.

25.1.20. 가구 내 식품 소비 및 의사결정 양상을 알아본다.




25.1.21. 식량과 물품을 배분한다.

25.1.22. 기본적인 영양 검사를 실시한다.

25.1.23. 기본적인 영양 대응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25.1.24. 등록 센터, 배분 장소 등 인도적 지원 주체가 운영하는 모든 커뮤니티 집결 장소

에서 모유 수유 중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 25.1.25. 아동 영양 실조와 보호 위험을 경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5.1.5. 참고)
- 25.1.26. 가능하다면 아동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영유아 수유·급식(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IYCF) 지원이나 보충식(supplementary feeding)을 제공한다. 
- 25.1.27. 생후 첫 6개월 동안에는 완전 모유 수유가, 그 후 생후 2년 이후까지는 지속적인 모유 수유(영양이 있고 연령에 적합한 보완 식품과 함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유 수유 관행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지원한다.
- 25.1.28. 모유가 가진 영양 및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청소년을 위한 모유 수유 수업과 또래 지지 집단을 조직한다. 
- 25.1.29. 돌봄제공자가 영양 센터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임시 돌봄 방안에 후속 조치를 취한다. 
- 25.1.30. 분쟁/재난 후 수요 조사(Post-Conflict/Disaster Needs Assessment) 등 평가 및 자원 배분 과정에서 영양 분야와 아동 보호 분야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25.1.31. 영양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여, 가구 내 모든 아동의 안전과 돌봄 현황을 파악한다.
- 25.1.32. 영양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산모 자조 영양 활동에서 유아기 발달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를 촉진한다.

## 영양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5.1.33.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영양 개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다음과 같은 아동 참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가장 취약한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보호적임
  - 아동의 다양한 젠더, 젠더 정체성, 연령, 장애, 발달 단계, 영양 수요, 가족 환경을 고려
- 25.1.34. 영양 담당 직원이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1)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부정적 대응 기제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부모를 식별하고 (2)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지원과 긍정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 25.1.35. 전체 팀은 아니더라도 각 영양 팀에서 최소 한 명의 직원이라도 아동 보호를 담당하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 25.1.36. 가능하다면 아동 보호 팀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영양 검사 기법(예: 상완위 둘레(Mid-upper arm circumference) 측정) 훈련을 실시한다.
- 25.1.37.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모든 피해인구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현황 조사를 활용하여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아동 식별

- 다양한 집단이 가진 접근 관련 장벽 식별
-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식별 및 시행
- 일부다처제가 시행되는 경우, 다른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성인 여성을 주요 지원 수혜자로 등록

25.1.38. 프로그램 설계 시 다음 사항을 조사하는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 배분처 및 시장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 위험
- 문해력, 신분증 등 생계 서비스 수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 최적의 개입 시기
-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람 등 특정 집단이 가진 수요

25.1.39. 피해인구의 모든 하위그룹, 특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영양 개입의 설계와 이행 및 모니터링에 참여시킨다.

25.1.40. 가구주인 아동 및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수혜자 카드를 제공하여 그들이 본인 명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5.1.41.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1) 가족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가족 분리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하고 (2) 아동이 절도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25.1.42. 영양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된 위기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등)을 모니터링한다.

25.1.43. 영양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이 보육 관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다룬다.

## ➔ 25.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5.2.1.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이관을 수락한 보건 시설 및 영양 급식 센터의 비율	80%	서비스 매핑을 통해 시설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시설은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확인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각국 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예: 수유·급식 서비스가 필요한 영아 또는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서비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25.2.2. 아동 보호 훈련을 받은 담당자가 최소 1명 배치되어 있는 보충식 또는 치료식 제공 센터의 비율	100%	직원 이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지표 측정 기간(예: 분기별 모니터링)은 각국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 25.3. 지침

### 25.3.1. 역량 강화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음을 수행할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 영유아 수유·급식에 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이용 가능한 영양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제시
- 여성과 아동의 영양 상태 측정
- 영양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지 못한 아동 식별
- 영양실조 아동과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식별하고 이관

이는 통합적 영양과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서 일하거나 영양 담당 직원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활동 주체, 특히 커뮤니티 차원에서 일하는 활동 주체에게 중요하다.

영양 담당 활동 주체, 특히 아동 보호 담당 직원과 접촉하지 않고 일하는 활동 주체는 다음을 수행할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 아동 보호 관련 의심 사례를 식별하고 이관
- 위기 아동에게 영양 서비스 제공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커뮤니티 영양 아웃리치 활동에서 아동 보호 증진
  - (1) 영양 관련 라디오 메시지에 셰이프가딩 정보 포함
  - (2) 영양 활동 주체<sup>promoters</sup> 채용 시 적절한 숫자의 여성 확보
- 영유아를 위한 심리사회적 자극 촉진
-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돌봄제공자를 식별하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심리사회적 응급처치 시행
-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활용

## 25.3.2. 사례관리자

영양 관련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 보호 활동 주체 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자녀가 사망한 가족 지원
- 긍정적 양육,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 회복력 프로그램 지원
- 아동 분리 등 발생 가능한 아동 보호 사례의 식별 및 조사
- 영양 서비스 이용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 지원
-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영양 직원, 사례관리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
- 아동과 가족을 적절한 다분야 서비스로 이관

## 25.3.3. 가족 차원의 위험

영양실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족 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이나 돌봄제공자는 위험한 노동 등 유급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날 수도 있다. 아동이 식량을 얻게 하기 위해 가족이 아동을 거주형 돌봄 시설에 맡길 수도 있다. 아동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때때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활동 주체는 (1) 이러한 역할 관계와 가족들이 내리는 선택을 이해하고, (2) 학교 중퇴나 가족 분리 또는 아동 노동을 조장하지 않는 영양 개입을 설계해야 한다.

## 25.3.4. 영아 수유·급식

모유 수유는 여러 가지 건강 및 발달상의 결과(예: 산모-아이 사이의 강력한 애착)에 중요한 요소다.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는 원할 경우 상담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를 가진 산모에게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두고 고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 수유·급식에 관한 전통적 및 문화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산모나 돌봄제공자 지원 그룹 역시 모유 수유를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복돋을 필요가 있다.

## 25.3.5. 영양실조/아동 보호 통합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공동 사례 관리





-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지원
- 적절한 돌봄과 양육 독려
- 치료적, 보충적, 포괄적 수유·급식 및 긍정적 양육이 결합된 공동 프로그램
- 영양 분야와 아동 보호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용도 공간

수유·급식 프로그램의 모든 대상자는 국가 및 국제 영양 프로토콜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절대 (1) 낙인을 조장하거나, (2) ‘편애’하거나, (3) 가족 또는 커뮤니티의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25.3.6. 아동 보호 주류화

통합적 접근법 채택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 보호를 영양 개입에 주류화하도록 한다. 예컨대, 또래 지원 네트워크와 어머니 그룹은 청소년 산모나 성폭력으로 임신한 청소년 산모 등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구의 식량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할머니 등 가족 내 다른 의사결정자나 아버지도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Food Security and Nutrition*’,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Food Security and Nutrition*’, *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Focusing on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IASC, 2005, pp. 49–52.
- *Women, Girls, Boys and Men: Different needs – Equal Opportunities (IASC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06, pp. 105–110.
-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in Emergencies: Operational Guidance for Emergency Relief Staff and Programme Managers Version 2.1*, IFE Core Group, 2007.
- *UNHCR Operational Guidance on the Use of Special Nutritional Products to Reduce Micronutrient Deficiencies and Malnutrition in Refugee Populations*, UNHC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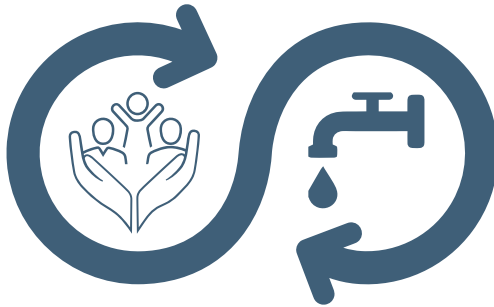
- *Guidelines for Selective Feeding: The Management of Malnutrition in Emergencies*, UNHCR and WFP, 2011.
- *'Nutrition',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UNICEF.
- *Baby Friendly Spaces: Holistic Approach for Pregnant, Lactating Women and Their Very Young Children in Emergency*, ACF International.
- *Integrat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Activities into Nutrition Programmes in Emergencies: Why, What and How*, UNICEF and WHO.



## 기준 26:

#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과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7: 신체적 위험과 상해,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기준 23: 교육과 아동 보호, 기준 24: 보건과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은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담당 직원이 아동의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적절한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관행을 제공 및 전달할 수 있도록 지침과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WASH 활동 주체는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진행해야 한다. 두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아동 보호 개입에서 WASH 서비스 제공
- WASH 시설이 (1) 접근 가능하고 아동 친화적이며, (2)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 여아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월경 위생 관리(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HM) 개입 시행

## 기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신체적 및 성적 폭력과 착취 위험을 최소화하는 WASH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26.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WASH 분야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6.1.1. WASH 관련 질병 및 감염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동 보호 우려사항이 있는 가구를 공동 식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기존의 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 방법론, 지표를 조정한다.
- 모든 모니터링과 조사에 아동의 관점 포함
  - 피해인구의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WASH 분야 최소기준* 반영
- 26.1.2. 아동의 WASH 및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를 수집한다.
- 26.1.3. 보호 우려사항이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의 WASH 상태를 개선하고 있는지,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26.1.4.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조정하고 공유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일지 합의한다.
- 26.1.5. 아동을 포함한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WASH 분야 및 아동 보호 분야의 공통의 관심 분야를 식별한다.
- 26.1.6. 위기 아동 및 가정의 공통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수립한다.
- 26.1.7.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WASH 관련 질병 및 감염 또는 아동 보호 문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
- 26.1.8. 아동이 WASH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구조에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6.1.9. 모든 개입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 고위험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보호적임
  - 아동의 젠더, 연령, 장애, 발달 단계, WASH 수요, 그리고 가구 및 돌봄 환경을 조사
- 26.1.10. WASH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보호 우려사항과 원칙 및 접근법 훈련을 실시한다.
- 26.1.11. 아동 친화적인 다분야 아동 보호 이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26.1.12. 아동 생존자, 위기 아동, 그리고 아동의 가족을 위해 공동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과 기밀유지 이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26.1.13.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준비하여 아동에게 인명 구조, 장애, 그리고 젠더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다음 정보를 전달한다.
- 적절한 위생의 중요성



- 아동 보호 위험 및 예방 전략

- 26.1.14.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 26.1.15. 모든 WASH 활동 주체(하청업체 직원 포함)와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훈련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에 서명하게 한다.
- 26.1.16. 의도치 않은 모든 부정적 결과를 문서화하고 다루며, 다음 사항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한다.
  -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아동 보호 개입이 각 가구가 WASH 관련 질병이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위험에 미치는 영향
- 26.1.17. 아동 보호와 WASH 사이의 연관성과 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WASH 분야 최소기준 4*에 따라 진척 상황을 추적한다.




###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WASH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26.1.18. 다양한 돌봄 또는 가구 구조에 속한 아동(예: 거주형 돌봄<sup>residential care</sup>, 아동가장, 길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아동 등)의 안전한 WASH 물품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다.
- 26.1.19.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WASH 개입의 예산을 수립한다.
- 26.1.20. 모든 WASH 개입 시에는 다양한 아동, 특히 고위험군 아동과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WASH 시설 주변에서의 여아의 안전
  - 여아, 특히 장애 여아의 MHM와 공급 관련 수요 (참고: 월경은 8세에도 시작될 수 있음)
  - 장애 아동의 월경 관리 및 용품 수요
  - 실금이 있는 아동의 수요
- 26.1.21. 아동 및 가족이 접근 가능한 WASH 개입 및 현안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개발 및 배포한다.
- 26.1.22. 다음정보나 지침을 WASH 활동 주체와 공유한다.
  - 모든 아동 대상 서비스 장소
  - WASH 개입이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춤화하는 방법

## WASH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6.1.23. 프로그램 설계 시 다음과 같이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 아동의 WASH 및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 제공
  - 특히 여성과 여아가 WASH 시설에 접근할 때 수반되는 신체적 안전 위험 조사
  - 문해력, 신분증 등 수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파악
  - 시설 및 개입에 적절한 최적의 시기와 위치 조사
  -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람 등 특정 집단이 가진 수요 판단
- 26.1.24. WASH 개입을 설계하고, 이행하고,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아동 보호, 젠더, 장애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26.1.25. WASH 시설을 설립할 때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우선시한다.
- 26.1.26. 아동 개인의 젠더, 연령, 장애, 체격, 발달에 적합한 안전한 집수(water collection)를 장려할 수 있도록 부모와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 26.1.27. 여성 직원 채용을 장려한다.
-  26.1.28. (1) 8세(문화적으로 적절한 경우)부터 18세까지의 여아, 그리고 (2) 장애 아동에게 맥락에 적절한 위생 용품, 존엄 유지에 필요한 용품, 월경 용품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입은 피해인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 26.1.29. WASH 키트를 배포하고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을 제공할 때, 포괄적이고 아동 친화적인 지침과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26.1.30. 다음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인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 WASH 시설 및 용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
  -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위기 아동
  - 특정 집단이 가진 접근성 장벽
  -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시행 전략
- 26.1.31.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WASH 시설을 제공한다.
- 안전함(조명이 밝고 잠금 장치가 있으며 성별에 따라 분리됨)
  - 내구성이 좋음
  -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접근 가능하고 적절함
  - 보편적 설계 원칙에 부합함

- 아동 중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 위치함
- 문화적으로 적절함

## 26.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은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6.2.1. 아동의 안전과 웰빙이 조기 위험 분석, 설계, 모니터링, 평가 프레임워크에 반영되어 있는 WASH 프로젝트의 비율	100%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WASH 동료들과의 조정을 통해 지표들을 WASH 약속 5에 맞게 조정한다(피해인구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i>WASH 분야 최소 기준</i> , WASH Cluster, 2018).
26.2.2. 위기 아동을 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최소한 한 곳 이상 알려줄 수 있다고 응답한 WASH 담당 직원의 비율	90%	

## 26.3. 지침

### 26.3.1. 역량 강화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다음을 포함해 기본적인 WASH 관행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손, 얼굴, 몸 씻기
- 안전한 물과 식품 취급
- 월경 위생 관리
- 대변과 월경 용품의 적절한 처리
- 배수 및 폐기물 관리

WASH 활동 주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아동 보호 정보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WASH 시설 주변에서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 심리사회적 응급처치

-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 아동 보호 이관 메커니즘

### 26.3.2. 메시지 전달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창의적 활동(예: 연극, 놀이, 게임)에 참여시킨다면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핵심적인 아동 보호 메시지를 WASH 메시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또한 아동과 협력하여 메시지와 형식이 모든 젠더, 연령, 장애, 기타 다양성 요소에 안전하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준 3 참고)

### 26.3.3. 안전한 WASH 시설

WASH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모니터링할 때 아동의 신체적 능력과 보호 및 안전 우려 사항을 고려한다. 아동이 집수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수용 물통이 연령과 체격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아동이 집수를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통에 ‘아동용’이라는 표시도 남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1) 아동이 걸어서 집수처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2) 아동의 학교 출석을 방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아동용 화장실을 설계할 때에는 각 칸의 내부를 어둡게 만들거나 배변용 구덩이의 구멍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아동을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개방된 물가에서의 익사 위험
- 쓰레기 구덩이에 의한 질병 위험
- 건설 현장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 위험

이러한 장소 주변에는 울타리, 덮개, 기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질식 위험 및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배분 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한다.

### 26.3.4. 연령별 개입

시설 이용 시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아동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위험하거나 유해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에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서 배변하려 하거나 화장실 사용 빈도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 26.3.4.1. 4세 미만 영유아



어린 영유아는 위생 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제공자들은 최선의 세탁 방법, 영아의 대변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일회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기저귀나 변기, 또는 기타 배변 처리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다음 사항과 관련된 방법을 숙지하여 개인위생 돌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놀이 공간 청소
- 아이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
- 아이가 오염된 흙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입에 넣지 않도록 관리
- 어린 아동이 동물이나 가축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

#### 26.3.4.2. 5~10세 아동



WASH 시설은 접근성과 안보에 적절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8세 또는 9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여아는 MHM 용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인도적 개입에서 간과될 수 있다.

#### 26.3.4.3. 10세 이상 청소년



서로 다른 젠더, 젠더 정체성, 연령, 능력, 국적, 기타 관련된 다양성 요소를 가진 청소년의 구체적인 수요(예: 월경 관리에 적합한 용품이나 적절한 WASH 시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다.

#### 26.3.5. 아동 노동

많은 국가에서 아동은 집수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한다. 이렇게 아동이 수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차별적 관행을 바탕으로 특정 단일 사회 집단에 속한 아동에게만 할당되지 않음
-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지 않음
- 학습 부진이나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음

아동 노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활동 및 그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아동이 참여하게 한다. 또한 노동 가능 최저 연령을 넘긴 아동만 적절한 WASH 관련 업무(현금지원 취로사업 프로그램 포함)에 종사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 26.3.6. 여성과 여아

(1) 화장실을 집이나 학교 등지와 가깝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2) 태양열이나 전기로 작동하는 충분한 조명 시설과 랜턴, 햇불 등을 제공하여, 여성과 아동이 폭력이나 착취에 노출될 위험을 줄인다. 상황상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공공 시설보다는 가구 수준의 시설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또한 커뮤니티 구성원, 특히 여성 및 아동과 협의하여 그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할 수 있는 급수 일정을 정하도록 한다. 여성과 여아는 내부 잠금 장치와 장소 식별을 위한 그림 문자가 갖추어진 별도의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남성용 시설 4개당 여성용 시설 6개가 갖춰져야 한다.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uidance: Safeguarding Children in 'WASH'*, Save the Children, 2019.
-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5, pp. 281-302.
- *Women, Girls, Boys and Men: Different needs – Equal Opportunities (IASC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06, pp. 105-110.
- *A Toolkit for Integrating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HM) into Humanitarian Response: The Full Guide*, Columbia University, IRC, 2017.
-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Schoolchildren in Emergencies: A Guidebook for Teachers*, UNICEF, 2011.
- *'WASH Minimum Commitments for the Safety and Dignity of Affected People'*, WASH Cluster, 2018.
- *'Accountability and Protection'*, WASH Cluster. [Website]



## 기준 27: 쉼터, 정착지와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2: 인적 자원, 기준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기준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기준 26: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과 아동 보호, 기준 28: 캠프 관리와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적절한 쉼터와 정착지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과 커뮤니티에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쉼터와 정착지는 사람들이 존엄성과 안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쉼터와 정착지 분야는 (1) 전염병 확산을 줄여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2) 아동과 가족의 안정성과 심리사회적 웰빙에 기여한다. ‘쉼터’는 일상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포함한 각 가구의 생활 공간을 가리키며, ‘정착지’는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살아가는 광범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아동 보호는 쉼터와 정착지 개입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이주 인구와 수용 커뮤니티의 가구 크기와 구성은 서로 매우 다를 수 있다. 아동은 혼자 살 수도, 새로운 또는 변경된 가족 단위 내에서 생활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쉼터는 유연성(예: 크기와 배치 측면에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가족을 추가적인 착취나 폭력,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려면 현지의 토지 및 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한 쉼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기준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가 안전, 보호, 접근성을 비롯해 자신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 주는 적절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27.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쉼터와 정착지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활동

- 27.1.1.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생활 조건이나 보호 우려사항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가구를 공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쉼터와 정착지 및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 방법론, 지표를 조정한다.
  - 아동과 가족의 안전을 각 쉼터 및 정착지 개입의 하위 목표에 포함
  - 모든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에 아동의 관점 반영
  - 최소한 젠더, 연령,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 27.1.2. 아동의 쉼터, 정착지, 보호 상태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를 수집한다.
- 27.1.3. 보호 우려사항이 쉼터나 정착지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지,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적절한 쉼터가 부족하여 과밀해진 캠프에서 더 많은 여아가 성폭력에 노출될지를 파악한다.)
- 27.1.4.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공동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합의한다.
- 27.1.5. 아동, 돌봄제공자,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쉼터와 정착지 분야 및 아동 보호 분야의 공통의 관심 분야를 파악한다.
- 27.1.6. 서로 다른 생활 환경에서 거주(예: 아동가장 가구에서 사는 아동, 거주형 돌봄 residential care)이나 위탁 가정 아동, 친족의 돌봄을 받는 아동,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하고 다양한 성/젠더, 연령, 장애를 가진 아동의 상황을 다룰 해결책을 파악한다.
- 27.1.7. 위기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수립한다.
- 27.1.8.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생활 조건이나 보호 우려사항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가구를 위해 대응 개입을 실시한다.
- 27.1.9.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개입을 조정한다.
- 27.1.10.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구조, 쉼터와 관련된 현장 거버넌

스 시스템에서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원칙 참고)

- 27.1.11. 쉼터 활동 주체가 아동 보호 사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다분야 아동 보호 이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27.1.12. 쉼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우려사항, 원칙,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그들이 공개되거나 확인된 아동 보호 사례를 올바르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7.1.13. 부적절한 쉼터에 거주할 위기에 처한 아동 및 가정을 위해 공동 데이터 보호 프로토콜과 기밀이 유지되는 이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27.1.14. 보호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 피드백 및 보고, 대응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 이를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 27.1.15. 모든 직원이 훈련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에 서명하게 한다.
- 27.1.16. 아동 친화적인 아동 보호 메시지를 쉼터와 정착지 개입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쉼터 활동 주체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쉼터를 제공할 때 아동과 돌봄제공자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서비스와 아동을 위한 활동을 알려줄 수 있다.)
- 27.1.17. 모든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문서화하고 다루며, 다음 사항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을 반복해서 실천한다.
  - 쉼터와 정착지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아동 보호 개입이 쉼터와 정착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
- 27.1.18.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쉼터 활동 주체 사이의 관계와 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7.1.19. 쉼터와 정착지 분야 활동 주체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쉼터 및 정착지 프로그램과 개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 보호를 포함시킨다.
  - 고위험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보호적임
  - 성별, 젠더 정체성, 연령, 장애, 발달 단계, 가족 환경이 서로 다른 모든 아동의 수요를 충족함
- 27.1.20. 기밀을 유지하고, 가구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쉼터와 정착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그러한 서비스로의 이관을 아동 보호 활동에 포함시킨다.
- 27.1.21. 기존의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파악하고,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모든 간극과 정책 현상, 장벽을 완화한다.
- 27.1.22. 쉼터 및 정착지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기존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 27.1.23.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쉼터 및 정착지 담당 직원과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하게 한다.
- 위험에 처한 가구와 개인 식별
  - 다양한 생활 환경에 처한 아동의 상황 파악
  - 대응 모니터링 활동 수행

### 쉼터 및 정착지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7.1.24. 쉼터 및 정착지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 아동 보호와 아동의 참여를 포함 시킨다.
- 27.1.25.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인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현황 조사를 활용해 적절한 쉼터 및 정착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 식별
  - 다양한 집단, 특히 가구주인 아동과 보호자 미동반 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식별
  -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문해력과 신분증 같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식별 및 이행
  - 일부다처제가 시행되는 경우, 다른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성인 여성을 주요 지원 수혜자로 등록
- 27.1.26. 프로그램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 쉼터 접근과 관련된 물리적 안전 위험 조사
  - 문해력을 갖춰야 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문서가 필요한 상황 등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만한 요건 식별
  - 최적의 개입 시기 조사
  -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람 등 특정 집단이 가진 수요 판단
- 27.1.27. 교육, 비공식 교육, 문화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을 포함해 아동을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공동 공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참여시킨다.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참여 하에 다음과 같은 쉼터 및 정착지 개입을 실시한다.
-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음
  - 가족 규모, 장애 여부, 쉼터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등 다양한 차이에 대응함
  - 보편적 설계 원칙을 준수함
- 27.1.28. 가구주인 아동 및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수혜자 카드를 제공하여 그들이 본인 명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1) 가족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가족 분리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하고 (2) 아동이 절도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 27.1.29. 쉼터 및 정착지 대응이 (1) 인구 과밀을 예방하고 (2)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와 이행을 검토한다.
- 27.1.30. 특히 사춘기 여아, 여성, 여성가구주 가구에 사생활 보호와 물리적 안전을 제공하는 쉼터와 정착지를 설계한다. 
- 27.1.31. 시설 내외부와 서비스에 접근 또는 출입하거나,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쉼터 대응을 설계한다.
- 27.1.32. 모든 임시 쉼터나 건축물이 사생활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 27.1.33.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쉼터와 정착지 인력의 젠더 균형을 옹호한다.

## 27.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7.2.1. 설계,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 안전 및 웰빙(가족 결합, 사생활 보호, 장애 아동의 접근성 포함)이 반영되어 있는 쉼터 및 정착지 프로젝트의 비율	100%	‘안전’과 ‘웰빙’의 의미는 각국 내에서 정의하도록 한다. 정의에는 장애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접근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27.2.2.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합의된 안전 및 사생활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쉼터의 비율	100%	‘쉼터’는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건물도 가리킨다. 아동 보호 담당 직원과 쉼터 및 정착지 담당 직원은 안전 및 사생활 보호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 27.3. 지침

### 27.3.1. 조사 및 계획

쉼터 관련 보호 수요를 파악할 때, 모든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여성 포함)과 모든 아동(여아 포함)
- 위기 아동의 돌봄제공자

특히 정착지 계획과 쉼터 물자 배포를 위한 시간 및 장소 등과 관련해서는 남성 및 남아와 별도로 여성 및 여아와 협의해야 한다. 이는 학대, 착취, 폭력 위험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 및 모니터링 팀과 통역사 구성에는 최소한 50%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근 장벽에 직면한 여성 및 집단과 체계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현장 기획자는 아동의 수 그들이 가진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학교 수와 놀이 공간, 기타 아동 활동을 위한 공간을 판단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면 전체 가구와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기획자는 건축물 또는 접근성과 관련해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위해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부지를 제공하는 등 특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27.3.2. 이행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쉼터 및 정착지 활동 주체는 가장 취약한 집단의 장단기적 쉼터 수요를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여성가주주 가구, 아동가장 가구, 노인, 장애인이 자신의 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광범위한 커뮤니티 동원
- 접근이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보호적인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쉼터 맞춤화(예: 장애 아동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거나 청소년기 여아의 사생활을 더 보호)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실내외 놀이 공간 제공
- 여아와 남아가 따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침구와 담요 제공
- 가족 분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쉼터 제공
- 요리와 목욕을 위한 전용 구역을 제공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쉼터 설계
- 아동과 돌봄제공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위험(땅에 파인 구멍, 개방된 물가 등) 해소
- 정착지 내 모든 장소(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시설 포함)에 충분한 조명 설치
- 아동이 학교와 놀이 공간을 오갈 수 있는 안전한 경로 제공
- 노동 가능 최저 연령 이상의 아동의 경우 적절한 쉼터 및 정착지 관련 일자리(현금지원 취로사업 프로그램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 선별 및 모니터링



쉼터 및 정착지 활동 주체는 항상 피해인구를 대표하는 집단과 협력하여 장벽과 위험 및 해결책을 파악해야 한다.

### 27.3.3. 다분야 접근법

쉼터와 정착지 프로젝트는 아동 보호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조정을 꾀해야 한다. 전체 프로그램 주기에 걸쳐 고려해야 할 쉼터 및 정착지 관련 이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보호 위험
- 사회적 규범
- 수용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 가용한 인적, 재정적,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자원

### 27.3.4. 역량 강화

쉼터 및 정착지 전문가가 받는 공식적인 전문 교육에 아동 보호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쉼터 및 정착지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를 모든 쉼터 및 정착지 관련 활동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쉼터 및 정착지 담당 직원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행동 강령 및 프로토콜 시행을 포함한 아동 세이프가딩 조치
-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 보호 우려사항의 식별 및 의뢰
- 쉼터 및 정착지 조사, 계획, 모니터링, 평가와 관련된 아동과의 협의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helter and Settlement',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Collective Centre Guidelines*, UNHCR and IOM, 2010.
- *'Shelter and Site Planning and Non-Food Items', 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Focusing on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IASC, 2005, pp. 5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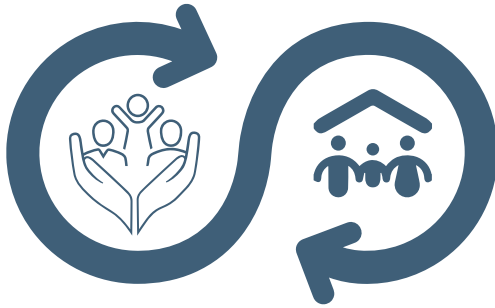


- *'Gender and Shelter in Emergencies'*, Women, Girls, Boys and Men: Different needs – Equal Opportunities (IASC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06, pp. 97–104.
- *All Under One Roof: Disability-inclusive Shelter and Settlements in Emergencies*, IFRC, Geneva, 2015.
-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oolkit*,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기준 28: 캠핑 관리와 아동 보호

이번 기준은 원칙, 기준 7: 신체적 위험과 상해, 기준 9: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기준 26: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과 아동 보호, 기준 27: 쉼터와 정착지 및 아동 보호와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캠핑 관리(또는 현장 관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임시 정착지(캠핑, 집합/대피 센터, 자발적 정착지 포함)에 거주 중인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이 인명 구조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평등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수용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주 인구의 존엄한 생활 환경을 보존/유지
- 지속 가능한 해결책 파약을 위한 옹호 및 지원

캠핑 관리 활동 주체는 국가 및 지역 당국과 파트너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협력하여 이 목적을 달성한다.

- 임시 정착지에서의 서비스 제공 조정 및 모니터링
- 거버넌스 및 대표 구조 수립
- 커뮤니티 참여 지원
-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 (및 그 이상)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보호 위험 경감을 비롯해, 현장 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
- 이주 인구에 관한 데이터 추적

- 캠프가 수용 커뮤니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모니터링 및 수용 커뮤니티와 이주 집단 모두에게 유익한 활동 증진
- 서비스 제공자, 캠프 위원회 및 당국의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 지속 가능한 해결책 식별 및 그에 대한 접근성 지원

캠프 관리와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을 아동이 직면한 위험을 경감하는 보호적이고 아동 참여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두 활동 주체 사이의 협력에는 위기 아동 및 인구 식별하기, 그들의 보호 수요 조사하기, 적절히 대응하기 등이 포함된다.

## 기준

캠프 관리 활동이 강제 이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요와 보호 우려사항을 다룬다.

### 28.1. 핵심 활동

#### 아동 보호 및 캠프 관리 활동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8.1.1. 캠프 관리 분야 및 아동 보호 분야의 공동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인도적 대응의 모든 단계에 걸쳐 아동 보호 위험을 다루기 위한 개입 전략을 조정한다.
- 28.1.2. 수집한 데이터가 보호 우려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도구를 개발한다. (데이터 수집 및 보관에 관한 추가 정보는 기준 5 참고)
- 28.1.3. 주기적인 공동 위험 또는 안전 조사에 참여해 실형 현장에서 시급한 아동 보호 위험을 식별한다.
- 28.1.4. 식별된 아동 보호 위험을 다루는 통합 및 합의된 (아동 보호 및 캠프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 28.1.5. 통합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활동이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모든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 해결
  -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행의 반복 실천
- 28.1.6. 아동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을 포함해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동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설계하고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한다.
- 28.1.7. 모든 캠프 관리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훈련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과 절차에 서명한다.



- 28.1.8.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의사결정, 캠프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시스템/조직에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충분히 포함한다.
- 28.1.9.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가 아동 보호 활동 주체에게 직접 보고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안전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채널 또는 이관 경로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수립한다.

###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8.1.10. 아동 보호 조사, 협의,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의 결과(일반적인 추세 및 특정 위치의 우려사항 포함)를 캠프 관리 활동 주체와 공유하여 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 28.1.11. 모든 아동이 필수적인 전용 서비스(예: 배분, 급수 시설, 교육 장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각종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기술 및 이행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 28.1.12. 캠프 관리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공동 조정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다.
- 28.1.13. 캠프 관리 담당 직원이 (다양한 연령, 젠더, 장애, 생활 조건을 가진) 아동, 돌봄 제공자, 커뮤니티 구성원과 함께 그들의 안전, 서비스 접근성, 캠프 관리에서의 대표성 및 참여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8.1.14. 아동과 협력하여 캠프 관리와 관련된 아동 보호 우려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캠프 관리 활동 주체와 공유한다.
- 28.1.15.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다음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1)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캠프 관리 활동 주체, (2) 국가와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보호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적절한 서비스
  - 국가 및 국제 법률 및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밀이 유지되는 사례 관리
- 28.1.16. 캠프 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원칙, 접근법, 우려사항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여 그들이 드러나거나 확인된 아동 보호 사례를 적절히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8.1.17. 캠프 관리 활동 주체가 위기 아동을 지속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식별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캠프 관리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

- 28.1.18.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계획, 이행, 모니터링을 포함한 캠프 관리 활동에서 아동 보호를 주류화한다.
- 28.1.19. 아동이 가진 수요와 관점을 통합하는 현장 기반시설과 필수 서비스의 수립을 조정한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측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접근성
  - 연령, 젠더, 장애, 기타 관련된 다양성 요소를 고려한 모든 아동의 안전과 안보
  - 놀이터, 학교, 안전한 공간 등 어린이 전용 공간

- 28.1.20. 등록 시스템이 총체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다음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 장애 아동
  - 아동가장 가구에서 지내는 아동
  - 여러 가족이 공동 생활하는 가구에서 지내는 아동
- 28.1.21.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최소한 성별, 연령, 장애에 따라 세분화한다.
- 28.1.22. 아동 보호 분야 및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필수적인 민원 서류(출생/사망 증명서, 신분증 발급 등)를 관련 당국들이 제공하도록 옹호활동을 전개한다.
- 28.1.23. 정기적인 안전 감사와 기타 접근법을 활용하여 (1) 서비스 제공 및 현장 기반 시설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벽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한다.
- 28.1.24. 캠프 내 모든 아동에게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 28.1.25. 관련 분야 및 파트너와의 조정을 바탕으로, 식별된 아동의 위험을 다루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 28.1.26. 캠프 관리 팀과 핵심 아동 보호 활동 주체 사이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 발생 이후의 이관을 지원한다.
- 28.1.27. 캠프 관리 인력의 젠더 균형을 옹호하여 모든 아동과 돌봄제공자를 더 잘 포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8.1.28.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캠프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원칙, 접근법, 우려사항, 그리고 어떠한 이슈를 접하거나 사건의 폭로를 듣게 되는 상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이 해당하는 사례를 적절히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28.1.29.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파악할 때 장애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관점을 고려한다.

## ② 28.2. 측정

아동에 관한 모든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적절한 다양성 요소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는 전반적인 기준 달성의 진척도를 측정한다. 지표와 목표는 아래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맥락화할 수 있다. 추가 지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목표	참고
28.2.1. 관리되는 현장 중에서 사건 및 보호 우려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이관 경로를 갖추고 있는 현장의 비율	100%	'사건'은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나 캠프 내 안전 및 안보 조치의 부족(예: 미흡한 조명 시설이나 외진 곳에 설치된 급수처/화장실로 인한 성폭력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가리킨다.
28.2.2. 관리되는 현장 중에서 아동의 참여를 위한 공식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현장의 비율	100%	

## 28.3. 지침

### 28.3.1. 아동의 참여

참여는 캠프 관리를 이루는 하나의 기둥이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와 캠프 관리 활동 주체는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다음을 위해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도 있다.

- 프로그램 설계, 모니터링, 조정에 대한 아동의 참여
- 아동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 아동이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채널 제공
- 아동을 의사결정 과정과 현장 거버넌스 구조에 포함
- 아동이 사회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일례로, 아동은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령, 젠더, 장애, 기타 관련된 다양성 요소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1) 캠프 관리 구조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표되고 (2)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이러한 담당자 아동이 여러 아동의 참여를 강화하게끔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다.

### 28.3.2.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참여

인도적 지원은 기존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보호 메커니즘 및 구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과 구조를 활용하면 효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의 주인 의식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 17 참고)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보호 개입이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정책과 최선의 이익 절차를 개발 및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인도적 위기는 기존의 긍정적 구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28.3.3. 동등한 접근권

모든 아동은 자신의 개별적 수요를 충족해 주는 교육 시설과 보건 의료 서비스, 심리 사회적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기회, 종교 활동 등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캠프 관리 활동 주체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세분화된 데이터를 분석해 캠프 서비스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

### 28.3.4. 현장 계획 및 현장 개선

캠프 관리 활동 주체와 아동 보호 활동 주체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학습 및 놀이 공간에 대한 아동의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공동으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현장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캠프 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적절한 계획 수립은 아동 전용 공간이 위험한 곳(예: 캠프의 경계, 혹은 아동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거나 토지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을 막아 준다.

### 28.3.5. 안전

캠프 관리 시에는 성 및 젠더 기반 폭력(SGBV), 납치, 신체적 공격, 아동 노동, 기타 위험(예: 폭발물, 익사, 화재) 같은 안보 문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동 보호 활동 주체는 캠프 관리 활동 주체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접근성 및 안전에 대한 감사 실시
- 구체적인 아동 보호 위험과 수요에 대한 개요 작성
- 안보 계획을 통한 식별된 위험 및 수요 관리

일반적인 위험 완화 활동에는 여성과 아동(여아 및 남아 포함)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에 적절한 조명 설치하기, 땀감 수집 경로 순찰하기, 통학로 모니터링하기, 폭발물에 의해 오염된 구역 표시하기, 개방된 물가에 울타리 설치하기 등이 포함된다.

---

## 참고자료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amp Management Toolk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and UN Refugee Agency (UNHCR), 2015.
- *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BM International, Bensheim, HelpAge International, London, Handicap International, Lyon, 2018.
-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5.
- *'Shelter and Settlement',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Site Planning: Guidance to Reduce the Risk of Gender-based Violence, Third Edition*, Global Shelter Cluster, 2018.
- *O'Kane, Claire, Guidelines for Children's Participation in Humanitarian Programming*, Save the Children, 2013.





## 부록

## 부록 1: 용어

보다 상세한 정의와 전체 용어 목록은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온라인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

#### 학대(Abuse)

아동의 안전, 웰빙, 존엄, 발달에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책임과 신뢰, 권력이 결부된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다.

#### 접근(Access)

어떠한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가리킨다.

#### 접근성(Accessibility)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행위를 수반한다. 이러한 장벽과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장애, 연령, 질병, 문해력 수준, 언어 구사 상태,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책임성(Accountability)

책임감 있게 권력을 행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그러한 권력의 행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주로 고려하며, 그들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품질** 정의를 참고하도록 한다.

#### 적절한 돌봄(Adequate care)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수요가 해당 아동의 돌봄제공자에 의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 청소년(Adolescents)

일반적으로 9~19세로 정의된다. 『인도적 지원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CPMS)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아동 정의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9~17세를 청소년으로 칭한다.

청소년은 청소년 전기(9~10세), 청소년 초기(10~14세), 청소년 중기(15~17세), 청소년 후기(18~19세)로 세분화할 수 있다.

## 대안적 돌봄(Alternative care)

평상시의 주 돌봄제공자가 아닌 돌봄제공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을 가리킨다. **친족 돌봄**과 **위탁 돌봄**을 참고하도록 한다. **시설 돌봄**과 **거주형 돌봄**에 관한 내용은 『CPMS』 온라인 버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 구금 또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detention or to deprivation of liberty)

형사 사법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아동과 이주민 아동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구금 예방을 목적으로 한 조치(법률, 정책 또는 관행)를 가리킨다. 구금에 대한 대안은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지 않는다.

## 동의(Assent)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참고한다.

## 조사(Assessment)

수요, 위험, 역량, 해결책을 포함하여 위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아동 보호 조사의 유형에 관한 정보는 프로그램 주기 관리의 **기준 4**를 참고한다.

## 위험에 처한 집단 / 개인(At-risk groups / individuals)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아동을 가리킨다. **위험 및 취약성**을 참고하도록 한다.

## B

###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어떠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이 가진 최선의 이익을 조사 대상이자 주요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게끔 하는 아동의 권리를 가리킨다. 이는 아동의 웰빙을 의미하며 다양한 개별 상황(연령, 성숙도, 부모의 유무, 아동이 처한 환경,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 4를 참고하도록 한다.

### 최선의 이익 결정(Best Interests Determination, BI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적 세이프가딩을 갖추어 만들어진 공식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이 과정은 차별 없이 아동의 적절한 참여를 촉진하고, 적절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결정자를 동반하며, 모든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지를 식별하고 권고해야 한다. (UNHCR 『최선의 이익 결정 핸드북』(Best Interests Determination Handbook) 2011, p.110)

## 최선의 이익 절차(Best Interests Procedure, BIP)

개별 아동의 우려사항을 다룸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 원칙(유엔 CRC 제3조에 제시)이 존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UNHCR의 개별 사례 관리 절차를 가리킨다. 이는 식별, 조사, 사례 조치 계획, 이행, 후속 조치, 사례 종결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다단계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절차적 요소, 즉 최선의 이익 조사(Best Interests Assessment, BIA)와 최선의 이익 결정(BID)이 포함된다. 국가 및 기타 활동 주체들도 어떠한 결정이 개별 아동이나 아동 집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아동이나 아동 집단의 최선의 이익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공식 절차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CRC) 일반 논평 14호 참고)

## C

### 돌봄제공자(Caregiver)

아동의 웰빙에 대해 (관습 또는 법률에 따라) 명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커뮤니티, 기관(국가 포함)을 가리킨다. 돌봄제공자는 대부분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아동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돌봄 환경(Caregiving environment)

아동이 생활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및 인적 환경으로, 모든 아동은 저마다 고유한 돌봄 환경에 놓여 있다.

###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관을 통해 적절하고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개별 아동과 그 가족의 수요를 다루는 접근법을 가리킨다.

### 사례관리자(Caseworker)

사례 식별부터 사례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례 관리 접근법을 통해 아동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례 관리 담당 직원을 가리킨다. 다른 사회 복지서비스 실무자(예: 사회 복지사)나 심지어 전문가(예: 보건 의료 활동 주체)도 사례관리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이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 보호 중심성(Centrality of Protection)

위기에 영향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가 인도주의적 의사결정과 대응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리키며, 이에는 국가 및 비국가 분쟁 당사자와의 협력이 포함된다. 보호는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자 의도하는 결과로 인식되며, 즉각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비 노력의 중심에 놓여야 하며, 이는 인도적 대응 기간과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 아동(Child)

18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 아동 친화적(Child-friendly)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아동의 연령과 능력 발달, 다양성, 역량을 고려하는 작업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이 배우고, 말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과 아동의 자신감을 증진한다. 또한 이 방식을 통해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정보 및 자료가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전달된다. 직원과 어른들은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아동을 존중하며, 아동의 말이나 행동에 잘 반응해야 한다.

## 아동 친화 공간(Child-friendly spaces, CFS)

커뮤니티(및 인도적 지원 주체)가 아동이 자유롭게 체계적인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여가, 학습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 놓은 안전한 공간을 가리킨다.

기준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을 참고한다.

## 아동가장 가구(Child-headed household)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아동(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이 가사를 처리하고, 가구 구성원들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등 일상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가구를 가리킨다.

## 사법 제도와 접촉하는 아동(Child in contact with the justice system)

피해자/생존자, 목격자, 법에 저촉되는 아동으로서 청소년 사법 제도나 형사 사법 제도와 접촉하는 모든 아동이나, 민사 또는 행정 사법 제도와 접촉하는 모든 아동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법에 저촉되는 아동’보다 범위가 넓다.

## 아동 노동(Child labour)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해를 끼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노동을 가리킨다. 아동 노동은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아동이 학업과 노동이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만든다. 기준 12: 아동 노동과 최악의 아동 노동(Worst Forms of Child Labour)을 참고한다.

## 아동의 참여(Child participation)

모든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 그러한 견해가 충분히 고려될 권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변화를 이끌어 낼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아동의 참여는 가장 소외된 아동 그리고 서로 다른 연령과 젠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칙 3을 참고한다.

##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HA)

인도적 지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 착취,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 아동 세이프가딩(Child safeguarding)

인도주의 기관이 소속 직원과 기관의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이는 아동이 인도주의 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정책과 절차 및 관행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할 때 그에 대응하고 피해를 조사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 아동의 웰빙(Child well-being)

아동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역동적이고,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함
- 생존과 발달을 비롯한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됨
- 주 돌봄제공자와 연결되고 그들로부터 돌봄을 받음
- 친척, 동료, 교사, 커뮤니티 구성원, 그리고 사회 전반과 지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역량 발달에 따라 주체성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요소를 가짐

## 조혼(Child marriage)

조혼은 당사자 중 한 명 혹은 양 당사자가 18세 미만일 때 이루어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결합을 의미한다. 아동은 결혼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조혼은 강제 결혼으로 간주된다.

## 시민사회(Civil society)

공동의 이익과 집단 활동으로 연결된 시민을 가리킨다. 단 영리 목적의 민간 분야 조직은 제외된다. 시민사회는 비공식 조직일 수 있으며,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또는 기타 협회의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기관에 고용되거나 기관에서 종사할 때 어떠한 행동이나 관습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가리킨다.

## 커뮤니티 주도의 아동 보호(Community-led child protection)

비정부기구(NGO)나 유엔 기구, 기타 외부 활동 주체가 아닌 집단적이고 커뮤니티 주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접근법을 가리킨다.

##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Community-level approaches)

커뮤니티 구성원이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가리킨다.

##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개인 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가리킨다. 아동에 대한 기밀유지와 관련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고 의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맥락화(Contextualisation)

각 기준을 맥락에 맞게 해석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자, 주어진 현지 상황에 따라 글로벌 지침의 의미를 토론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또한 아동 보호 최소 기준의 의미와 지침을 국가(또는 지역)의 맥락에 맞게 ‘번역’해 그러한 기준의 내용이 주어진 환경에 적절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위기(Crisis)

**인도적 위기**와 **인도적 지원**을 참고한다.

## 동의(Consent)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참고한다.

## D

## 위험(Danger)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피해나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 존엄성(Dignity)

스스로 신중한 선택을 내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킨다. 이는 개인의 완전성(integrity)을 반영하며 모든 인권의 뿌리를 이룬다.

## 장애(Disability)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입은 개인, 그리고 그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태도와 환경이라는 장벽 간의 상호작용

의 결과를 가리킨다.

###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d data)

특정 기준에 따라 분리한 통계를 가리킨다. 『CPMS』는 최소한의 데이터 세분화 수준으로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를 제한한다.

### 재난(Disaster)

인도적 위기를 참고한다.

###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

원인과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재난 위험을 경감한다는 개념과 실천을 가리킨다. 재난위험경감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 경감, 인명 및 재산의 취약성 감소, 토지와 환경에 대한 현명한 관리, 부작용에 대한 대비 개선이 포함된다.

### 피해방지 원칙Do no harm

인도주의 기관이 피해인구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커뮤니티의 평화 구축 및 재건 역량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을 가리킨다.

### 의무 이행자(Duty bearers)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충족시켜 줄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 E

### 유아기(Early childhood)

유아기는 0~8세의 모든 아동을 가리킨다. 유아기는 다음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영유아: 0~2세
- 취학 전 연령: 3~5세
- 취학 초기 연령: 6~8세

### 유아기 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태아기부터 8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가리킨다.

### 조기 복구(Early recovery)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발달 기회를 장려하는 개발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다면적 복구 과정을 가리킨다.



## 경제 회복(Economic recovery)

시장 개발, 신규 및 기존의 사업체 강화, 민간 분야 및 공공 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 긴급 상황(Emergency)

인도적 위기를 참고한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maltreatment)

아동의 심리적 및 정서적 웰빙에 피해를 입히는 학대를 가리킨다.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유행(Epidemic)

전염병이 많은 사람에게 신속히 확산할 때 발생한다. 전염병 발생을 참고한다.

## 착취(Exploitation)

권력을 쥐고 있거나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개인이 사적인 혜택이나 이득, 만족, 이익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이 얻고자 하는 사적인 혜택은 신체적, 성적, 재정적, 물질적,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 혜택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F

### 피드백 및 보고 메커니즘(Feedback and reporting mechanism)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경우에 따라 위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인구도 포함)들이 각자가 경험한 인도주의의 기관 또는 광범위한 인도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가리킨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인도적 대응의 일부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 조치 시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위탁 돌봄(Foster care)

아동이 가족 외부에 존재하는 가구 내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위탁은 보통 임시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경우 친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계속 보유한다. 위탁 돌봄은 관할 당국에 의해 관리되며, 이에 따라 위탁 돌봄 가정으로 선정되어 준비를 마치고 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가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가구의 가정 환경 내에서 해당 아동이 돌봄을 받는다. **임시 또는 비공식 위탁과 자발적 위탁, 계획적 위탁**에 관한 정의는 온라인에 게재된 용어를 참고하도록 한다.

## G

### 젠더(Gender)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과 기회, 그리고 여성, 남성, 여아, 남아의 관계를 가리킨다. 젠더는 생물학적 해부학에 따라 대부분 출생 시점에 결정되는 성(sex)과는 다르다. 논바

이너리(non-binary) 젠더 정체성은 여성/남성, 여아/남아라는 이분법에 맞지 않는 모든 젠더 정체성이나 표현을 가리킨다.

###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차이(즉 젠더)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모든 유해한 행위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다. 젠더기반폭력에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상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가하겠다는 위협, 그리고 여타 자유의 박탈이 포함된다. **성폭력과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을 참고하도록 한다.

### 젠더 변혁적 접근법(Gender-transformative approach)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의 근본 원인을 다룸으로써 젠더화된 권력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입을 가리킨다.

## H

### 유해한 관행(Harmful practices)

아동에게 고통을 가하고,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와 ‘신체 훼손’을 야기하는 전통적 및 비전통적 관행을 가리킨다. 많은 사회에서 이와 같은 관행은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되며 전통, 종교, 미신 등을 이유로 가해자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해 옹호된다. 여성성기훼손과 조혼 등 주로 여아에게 가해지는 유해한 관행도 젠더기반폭력(GBV)의 한 형태다.

### 위험 요소(Hazard)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사건이나 자연 현상 또는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며, 이는 인명 손실, 부상, 기타 건강상의 영향, 재산 피해, 생계와 서비스의 상실, 사회적 및 경제적 혼란, 환경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는 예측할 수는 있으나 피할 수는 없는 위험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 위험한 작업(Hazardous work)

작업의 성격상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 및 도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일반적인 노동 가능 최저 연령 이상인 아동도 포함)에게 금지되어야 하는 일을 가리킨다.

### 인권 / 아동의 권리(Human rights / child rights)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권과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아동은 18세 미만의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CRC (1989)에 명시된-보통 아동의 권리라고도 하는-특별

한 인권을 가진다.

###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ction)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인위적인 위기와 재난이 발생하는 기간과 그 이후에 인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인류애,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적 대응**을 참고한다.

### 인도적 지원 주체/주체 (Humanitarian actors)

인도적 지원이 그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소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다양한 당국과 커뮤니티, 조직, 기관,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유엔 기구, 국제적 십자/적십자사 운동, 현지와 국가 및 국제 차원에 존재하는 NGO, 현지 국가 기관, 공여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관의 활동은 인류애,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핵심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커뮤니티나 사회의 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결과, 피해 커뮤니티나 사회가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인적, 물질, 경제적, 환경적 손실과 영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 인도적 대응(Humanitarian response)

인도적 지원의 한 측면이다. 인도적 대응은 인명 구조,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감소, 공공의 안전 보장, 인간의 존엄성 유지, 피해인구의 기본적인 생계 필요 충족 등을 위해 특정한 긴급 상황 발생 기간과 그 직후에 서비스와 공공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다. 인도적 대응은 핵심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I

### 손상(Impairment)

신체 기능이나 구조상의 심각한 탈구나 상실을 가리킨다. 손상은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으며, 사람마다 여러 가지 손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 포괄(Inclusion)

배제될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과 이행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리 기반의 접근법을 가리킨다.

## 전염병 발생(Infectious disease outbreak)

어떠한 커뮤니티나 지역 내부에서 또는 특정 계절에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의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한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국가로 확산될 수도 있다.

## 비공식적 사법 제도(Informal justice system)

공식적 사법 제도에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된 현지 선거구 내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성과 안정성, 정당성을 지니는 형태의 사법 집행 및 분쟁 해결 방식을 가리킨다. 이를 관습적 사법 제도라고도 한다.

## 고지에 입각한 합의(Informed assent)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지에 입각한 합의는 그 성격상 또는 법률상 동의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합의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구하는 의사 표현이다. 실무자들은 고지에 입각한 합의를 구할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선택지, 잠재적 위험과 혜택, 수집될 개인 정보와 그러한 정보의 사용처, 기밀유지 원칙과 그 한계 등에 관한 정보를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유해야 한다.

##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자신이 동의하도록 요청받는 내용을 이해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가리킨다. 실무자들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선택지, 잠재적 위험과 혜택, 수집될 개인 정보와 그러한 정보의 사용처, 기밀유지 원칙과 그 한계 등에 관한 정보를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유해야 한다. 보통 15세 미만 아동에게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고지에 입각한 합의**도 참고하도록 한다.

##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es)

통합적 접근법은 두 개 이상의 분야가 역량 및 공동의 수요 식별과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의 프로그램 성과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거나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는 과정과 성과를 촉진한다.

기둥 4: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을 참고한다.

##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피해 달아나거나 떠날 것을 강요받았거나 그해야만 했으며, 이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을 넘지 않은 개인 혹은 집단을 가리킨다.

##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일련의 국제 조약과 확립된

법적 규칙(국제관습법 포함)을 가리킨다.

###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무력분쟁 상황에는 국제 인권법 조항 외에 국제인도법도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은 해당 분쟁의 성격이 국제적인지 비국제적(내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

첫째로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둘째로 관련 제도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일련의 규칙과 절차를 가리킨다.

## K

### 친족 돌봄(Kinship care)

부모가 아니지만 아동과 가족 관계 또는 중요한 과거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동을 전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 L

### L3 긴급 상황(L3 Emergency)

기관 간 상임위원회가 규정하는 가장 심각한 대규모의 인도적 위기를 가리킨다. L3 긴급 상황 시에는 인도적 대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동원해야 한다.

### 생활 기술(Life skills)

개개인이 일상 생활에서의 요구와 과제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주는 긍정적인 행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리킨다. 생활 기술은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참여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생계(Livelihood)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산, 기회, 활동을 가리킨다. 자산에는 재정적, 자연적,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이 포함된다.

## M

### 학대(Maltreatment)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하는 모든 행동(아동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가리킨다. 학대는 보통 학대(abuse)와 방임(neglect)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심리사회적 웰빙을 보호 또는 증진하고 정신건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현지 또는 외부 지원을 가리킨다.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MHPSS) 프로그램은 (1)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며 (2) 역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3) 아동과 가족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웰빙과 아동의 웰빙**을 참고한다.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인도적 지원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명시한다.

### 경감(Mitigation)

유해한 영향이나 결과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에서 이는 물리적 기반시설과 관련된 조치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생계수단 강화, 대중의 지식 및 인식 증진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인도적 대응**을 참고하도록 한다.

### 모니터링(Monitoring)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은 투입물(inputs)과 산출물(outputs)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내부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을 가리킨다. 조정 차원에서 상황과 대응 모두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긴급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영향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준 6: 아동 보호 모니터링**을 참고하도록 한다.

## N

### 방임(Neglect)

개인, 커뮤니티, 기관(국가 포함) 등 관습이나 법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진 돌봄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음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 (1) 아동의 안전과 웰빙, 존엄, 발달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피해로부터의 아동 보호
- (2)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생존, 발달, 웰빙에 대한 아동의 권리 충족

### 비차별(Non-discrimination)

연령, 성, 젠더, 인종, 피부색, 민족성,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성적 지향,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여부, 언어, 신원 증명 서류, 종교, 장애, 건강 상태,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기타 신분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원칙 2를 참고한다.

## P

### 참여(Participation)

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과 활동을 가리킨다. 참여는 하나의 권리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참여 및 원칙 3**을 참고한다.

### 대비(Preparedness)

위기 발생 전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인명과 자산을 위협 지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시키는 등 위험 요소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과 조치를 가리킨다.

### 예방(Prevention)

1차 예방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 폭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구(또는 그 일부) 내에 존재하는 아동 보호 위험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예방은 아동이나 가족 또는 환경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학대나 방임, 착취, 폭력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식별된 아동에 대해 해당 아동이 가진 취약성이나 구체적인 위협의 원인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3차 예방은 위험의 장기적인 영향을 경감하고 이미 학대나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은 아동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에서 제시한 정보 각색)

### 1차 데이터(Primary data)

데이터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 출처를 통해 직접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가리킨다. **2차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한다.

### 보호(Protection)

연령, 성, 젠더, 민족성, 사회적 또는 정치적 소속, 종교적 신념, 기타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의 권리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유엔 및 NGO 커뮤니티가 인도적 지원 제공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와 군인, 정부 공무원 등 소속 직원과 관계자들에 의한 성적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완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용어다.

### 보호 주류화(Protection mainstreaming)

인도적 지원에서 보호 원칙을 통합하고 의미 있는 접근과 안전, 존엄성을 증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 심리사회적 고통(Psychosocial distress)

개인의 기능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쾌한 감정이나 정서를 가리킨다. 슬픔, 불안, 주의 산만, 타인과의 관계 단절, 여타 정신 질환의 증상 등은 심리사회적 고통의 징후다.

###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사회적 측면(예: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규범, 사회적 역할, 커뮤니티 생활, 종교 생활)과 심리적 측면(예: 정서, 생각, 행동, 지식, 대처 전략)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 심리사회적 장애(Psychosocial disabilities)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는 ‘정신건강 질환’이라는 의학적 용어로 알려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 Q

### 질적 데이터(Qualitative data)

설명, 경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사례 연구, 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 품질(Quality)

인도주의 분야에서 품질이란 인도적 대응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효과성(영향), 효율성(적시성과 비용), 적절성(권리, 수요, 문화, 연령, 젠더, 장애, 맥락 고려), 형평성(비차별, 동등한 접근)을 의미한다.

### 양적 데이터(Quantitative data)

수치와 통계에 중점을 둔 데이터를 가리킨다.

## R

### 이관(Referral)

아동이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현재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 아동이나 가족을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 난민(Refugee)

1951년 난민 협약에 명시된 이유 중 하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상황, 혹은 분쟁이나 일반화된 폭력,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여타 상황으



로 인해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 회복력(Resilience)

고난의 해로운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건강, 발달, 웰빙을 실현할 방법을 찾는 아동의 적응력을 가리킨다. 더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맥락에서의 회복력은 개인, 커뮤니티, 사회, 국가가 자연 재해나 위기 등의 고난을 예상하고 견디며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원칙 10을 참고하도록 한다.

### 대응(Response)

인도적 대응을 참고한다.

### 위험(Risk)

인도적 지원에서 위험은 위험 요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생명, 생계, 자산, 서비스의 잠재적 손실을 가리킨다. 이는 개인의 취약성과 결합하여 외부 및 내부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위험이란 아동의 권리 침해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해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위험 요소**를 참고한다.

### 위험 조사(Risk assessment)

위험 요소 및 위험 요소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위험의 발생 확률과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론을 가리킨다.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와 기존의 취약한 상태를 고려하여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험 조사가 활용된다.

## S

### 안전한 공간(Safe spaces)

안전한 환경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인도주의 기관이 활용하는 개입을 가리킨다. 예컨대, 안전한 공간에는 아동 친화 공간(Child-Friendly Spaces)과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omen and Girls Safe Spaces)이 포함된다.

### 2차 데이터(Secondary data)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 2차 트라우마 또는 고통(Secondary trauma or stress)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보거나 들은 실무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

적, 신체적, 정신적 웰빙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 실무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 분리된 아동(Separated children)

부모 또는 과거의 법적 또는 관습적 주 돌봄제공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가리킨다. 단, 이러한 아동이 반드시 다른 친척과도 분리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분리된 아동에는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을 동반한 아동도 포함될 수 있다.

### 성(Sex)

개인의 생물학적 속성으로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다. **젠더**를 참고하도록 한다.

### 성적 학대(Sexual abuse)

강압에 의해 또는 불평등하거나 강압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성격의 실제적인 또는 위협적인 신체적 침입을 가리킨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참고한다.

### 성 및 젠더기반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젠더 규범과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자행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폭력에 대한 위협과 강압도 포함된다. 성 및 젠더기반폭력(SGBV)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 성격을 떨 수 있으며, 자원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 같은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는 여성, 여아, 남성, 남아에게 해를 입힌다.

###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성적 목적을 위해 취약성, 권력, 신뢰 등을 이용해 지위를 남용하는 실제적인 또는 위협적인 행위로, 타인에 대한 성적 착취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아동에 대한 성폭력(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성인 또는 다른 아동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동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를 가리킨다. 성폭력에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행위와 성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고도 불린다.)

###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주어진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거나 지지받는 행동 규칙을 가리킨다. 폭력, 학대, 방임, 착취는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을 통해 예방될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 있는 ‘권리’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에 의해 유지될 수도 있다.

## 이해관계자(Stakeholder)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 기관을 가리킨다.

##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상태를 가리킨다.

## U

### 보호자 미동반 아동(Unaccompanied children)

부모 및 기타 친척과 분리되어 있는 아동과 법률 또는 관습에 따라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가리킨다.

### 불발탄(Unexploded ordnance)

무력분쟁에서 장전, 폭발, 무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었거나, 여타 방식으로 사용 준비가 완료되어 사용된 폭발물을 가리킨다. 불발탄은 발포되거나 투하되거나 발사되거나 투척된 후 폭발해야 했으나 폭발하지 못한 폭발물이다.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조정이나 특수한 설계 없이도 상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 도시 맥락(Urban contexts)

‘도시’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도시는 행정적 기준 또는 정치적 경계(예: 지자체나 시의회의 관할 구역), 임계 인구 규모, 인구 밀도, 경제적 기능, 도시적 특성의 유무(예: 포장 도로, 전기 조명 설비, 하수도)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 V

### 아동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children)

아동 또는 아동 집단에 대한 의도적인 권력 남용, 실제적인 언어적 또는 물리적 힘의 행사, 그러한 힘의 행사에 대한 위협 등을 수반하는 행위로, 아동 및 아동의 건강, 웰빙, 존엄성, 발달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이나 분쟁에 의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원 메커니즘이 붕괴된 결과,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받는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준의 영향을 가리킨다.

아동 보호에서 취약성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위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개인, 가족, 커뮤니티, 사회의 특성을 가리킨다.

## W

### 웰빙(Well-being)

아동의 웰빙을 참고한다.

### 최악의 아동 노동(Worst forms of child labour)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호에 정의된 용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아동 노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대해 금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이 포함된다.

아동 매매 및 인신매매, 채무로 인한 구속(debt bondage), 농노제,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등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성매매, 음란물 제작, 음란물을 위한 연기 등에 아동을 이용하거나, 끌어들이거나, 제공하는 행위

불법 활동, 특히 관련 국제 조약에 정의된 마약의 생산과 밀매를 위해 아동을 이용하거나, 끌어들이거나, 제공하는 행위

작업의 성격상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 및 도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노동. **위험한 작업**을 참고한다.

### Ws -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누구를 위해) (Ws - Who does what, where and when (and for whom))

4Ws는 어떤 기관(누가, Who)이 어떤 활동을(무엇을, What) 어느 위치(어디에서, Where) 어느 기간에(언제, When) 수행하는지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조정 도구다. 이 정보는 아동 보호 및 기타 분야의 조정관과 기관이 각자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인도적 수요가 간극이나 중복 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5Ws는 4Ws에 ‘누구를 위해’(for Whom)라는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 부록 2: 관련 법률 문서

---

### 일반적인 인권 문서 및 관련 연성법

#### 국제: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Articles 2, 26)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 (Paragraph 23)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006)
-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 (2015)
- 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2018)

#### 지역:

-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1948)
-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3)
- European Social Charter (1961)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 Protocol No. 7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84)

-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1988)
-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4)

## 아동 관련 인권 문서 및 관련 연성법

### 국제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0)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0)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 procedure (2011)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29 May 2013, CRC /C/GC/14.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6 December 2016, UN Doc. CRC/C/GC/20, para. 76.
- ILO Convention No. 138 on the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and work (1973)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1985)
-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The Havana Rules’) (1990)
-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1990)
- ECOSOC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997)
- ILO Convention No. 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 Pari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and Armed Groups (2007)
- Paris Commitments to Protect Children from Unlawful Recruitment or Use by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2007) (the ‘Paris Commitments’)
- Safe Schools Declaration (2015)

## 지역

- European Convention on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s (1996)
-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1999)
-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007)

## 국제 인권법 및 관련 연성법

### 국제

- First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1864)
- Second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1906)
- Third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1929)
- Fourth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1949)
- Protocol I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1977)
- Protocol II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1977)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1983)
- Amended Protocol II to the 1980 Convention: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1996); and Protocol V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2006)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1999)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2010)

## 국제난민법 및 관련 연성법

### 국제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1954)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1961)

- 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2016)
- Global Compact on Refugees (2018)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Children at risk, 22 February 2007, EC/58/SC/CRP.7,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9997afa27.html>

## 지역

- Bangkok Principles on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adopted at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in 1966)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1969)
- European Union's Council Directive on minimum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and status of third country nationals and stateless persons as refugees or as persons who otherwise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2004)



## 부록 3: 범분야 이슈를 위한 핵심 자료

---

아래 추가 자료 링크는 [https://alliancecpa.org/en/CPMS\\_refs](https://alliancecpa.org/en/CPMS_ref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소년

- *A Time of Transition: Adolescents in Humanitarian Settings*, Plan International, 2016.
- *'Adolescent Girls'*, Women's Refugee Commission. [Website]
- *Girl-Centered Program Design: A Toolkit to Develop, Strengthen and Expand Adolescent Girls Programs*, Population Council, 2010.
- *'I'm Here: Adolescent Girls in Emergencies'*,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8. [Website]
- *'Gender-Age Marker Toolkit'*, ECHO, 2014.

### 유아기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Technical Note*, Plan International and UNICEF, 2016.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hild Protection Brief for Emergencies*, Plan International and UNICEF, 2016.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Resource Pack*, UNICEF.
- *Care for Child Development Package*, UNICEF, 2012.
- *Excessive Stress Disrupts the Architecture of the Developing Brain: Working Paper 3*,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5/2014.
- *A Good Start: Advance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arly Childhood Matters*, Bernard van Leer Foundation, 2015(24).

### 장애 아동

- *'Child Protection',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UNICEF, 2017.
- *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BM International, Bensheim, HelpAge International, London, Handicap International, Lyon, 2018.
- *IASC Guidelines on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 2019.
-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 Toolkit for Child Protection Actors*, Child Fund, 2016.

- *Individual Case Management: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raining Tools]*,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3.

## 젠더

- *Promoting Gender Equality Through UNICEF-Supported Programming in Child Protection: Operational Guidance*, UNICEF, 2011.
- *Child Protection: Thematic Area Guide for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5.
- *The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IASC, 2017.
- *Transforming Inequalities, Transforming Lives: Save the Children Principles for Gender Equality*, Save the Children, 2014.
- *Engendering Transformational Change: Save the Children Gender Equality Program Guidance & Toolkit*, Save the Children, 2014.
-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CEF, 2012.

## 아동의 참여

- *Interagency Study on Child-Friendly Feedback and Complaint Mechanisms Within NGO Programmes*, Educo,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UK, War Child UK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5.
- Bennouna, Cyril, Hani Mansourian and Lindsay Stark, 'Ethical considerations for Children's Participation in data collection activities during humanitarian emergencies: A Delphi review', *Conflict and Health*, 2017 (11:5).
- *Children's MIRA: Listening to Children During Emergencies (A Tool for Conducting Multi-Cluster Initial Rapid Assessments with Children)*, Save the Children, 2016.
-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World Humanitarian Summit, 2016.
-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An Essential Approach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 Vision, 2017.
- *Childre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hy Do It, When to Do It, How to Do I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 (IAWGCP), 2007.
-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A Resource Guide o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2*, Save the Children Fund, 2011.
- *Guidelines for Children's Participation in Humanitarian Programming*, Save the

Children, 2013.

- *A Toolkit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Children's Participation*, Save the Children, 2014.
- *Children's Right to be Heard and Effective Child Protection: A Guide for Governments and Children's Rights Advocates in Invol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ding all Forms of Violence*, Save the Children Sweden, 2010.
- *Take Us Seriously! Engag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s Affecting Their Lives*, UNICEF, 2013.

### 환경 관련 고려사항

- *The Neglected Link: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on Child Labour*, Terre des hommes, 2017.
- *'UN Environment/OCHA Joint Unit: Environment Marker'*, UNEP and UNOCHA, 2014.
- *Danger in the Air: How Air Pollution May Be Affecting the Brai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round the World*, UNICEF, 2017.
- *Unless We Act Now: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hildren*, UNICEF, 2015.
-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Children on the Front Line*, UNICEF, 2014.

###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 환경

- *Inter-agency Guiding Principles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Inter-Agency, 2004.
- *Field Handbook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IAWG UASC and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Bhabha, Jacqueline and Mike Dottridge, *Child Rights in the Global Compacts: Recommendations for Protecting, Promoting and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on the Move in the Proposed Global Compacts (Working Document)*, 2017.
- *Guidelines on Assessing and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18 Provisional Release*, UNHCR, 2018.
- *A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2.
- *'The 10-Point Plan in Action'*,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6. [Website]
- *'Recommended Principles to Guide Actions Concerning Children on the Move and Other Children Affected by Migration'*, 2016, OHCHR.
- *Children on the Move*, IOM, 2013

- *IFRC Position Paper: Protection and Assistance for Children on the Move*, IFRC, 2017.
- *Manual on Smart Practices for Working with Migrant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in the Europe Region*, IFRC, Geneva, 2017.
- ‘*Joint General Comment No. 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2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CMW/C/CG/3-CRC/C/GC/22)*’,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2017.
- ‘*Joint General Comment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CMW/C/GC/4-CRC/C/GC/2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2017

### 전염병 발생

- *Guidance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8.
-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 West African Ebola Virus Disease Epidemic: Lessons Learned for Future Public Health Emergencies*, UNICEF, 2016.

### 도시 맥락

-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3 December 2016: 71/256. New Urban Agenda (A/RES/71/25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7.
-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2: Children in an Urban World*, UNICEF, 2012
- *Making Sense of the City: Developing Evidence Through Action Research and Learning (Revised Edition)*,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6.
- *Violence in the Ci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Drivers of Violence Against Displaced Populations in Urban Crisis and Post-crisis Settings*, IRC, 2017.
- *Child-centred Urban Resilience Framework: A Holistic, Systematic and Action-based Framework for Making Cities More Resilient for Children and Youth, Girls and Boys*, Plan International, Australian Aid, the Government of Sweden and

and ARUP, 2016.

### 이동식 프로그램 설계

-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CPiE) Mobile Teams’, Child Protection Sub-Cluster Iraq, 2017.
- ‘Emergency Mobile Teams: Gender-based Violence (GBV)’, GBV Sub-Cluster Iraq.
- ‘Mobile SGBV Prevention and Response Services: Lebanon’, Gender Equality Promising Practices: Syrian Refuge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UNHCR, 2017.

###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 Thompson, H., *Cash and Child Protection: How Cash Transfer Programming can Protect Children from Abuse, Neglect, Exploitation, and Violence*, Save the Children Fund, 2012.
- *Child Safeguarding in Cash Transfer Programming: A Practical Tool*,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Save the Children,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2. [Update Pending]
- *Safer Cash Toolkit*, IRC, 2019.
- *Child Safeguarding for Cash and Voucher Assistance Guidance*, Save the Children, 2019.
- *Cash Transfer Programming in the Education and Child Protection sectors: Literature Review and Evidence Maps*, Cash Learning Partnership,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he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 Mishra, Anjini and Francesca Battistin, *Child Outcomes of Cash Transfer Programming: A Synthesis of Evidence Around Survival, Education, an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nd Non-humanitarian Contexts*, Save the Children, 2018.
- *Cash Based Assistance: Programme Quality Toolbox*,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2018.
- *Guide for Protection in Cash-based Interventions: Improving Cash-based Interventions, Multipurpose Cash Grants and Protection (Enhanced Response Capacity Project 2014-2015)*, UNHCR, 2015.
- ‘Appendix: Delivering Assistance Through Markets’,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Association, 2018.

## 시스템 강화

- *'Adapting to learn, learning to adapt': Overview of and Considerations for Child Protection Systems Strengthening in Emergencies*,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6.
- *A Better Way to Protect ALL Childre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hild Protection Systems (Conference Report)*, UNICEF, UNHCR, Save the Children and World Vision, 2013.
-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HS Alliance, Group URD, the Sphere Project, 2014.

## 아동 인신매매

- *The World's Stateless*, Institute on Statelessness and Inclusion, 2014.
- *Birth Registration in Emergencies Toolkit*, Plan International, 2017.
- *Harrowing Journeys: Children and Youth on the Move Across the Mediterranean Sea, at Risk of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IOM and UNICEF, 2017.
- *'New Data From the World's First Data Portal to Include Human Trafficking Data Contributed by Multiple Agencies'*, Counter-trafficking Data Collaborative (CTDC), 2017.
-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in Times of Crisis: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Action to Protect Vulnerable and Mobile Populations (December 2015)*, IOM, 2015.
- *Caring for Trafficked Persons: Guidance for Health Providers*, IOM, 2009.
- *The IOM Handbook on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IOM, 2007.
-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UNICEF Technical Notes*, UNICEF, 2006.



# 인도적 지원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 인정, 존엄성, 권리

## 공평한 지원에 대한 접근

## 회복 지원

### 생존 및 발달

양질의 아동 보호 대응을 보장하는 기준
1. 조정
2. 인적 자원
3. 커뮤니티케이션 및 옹호활동
4. 프로그램 주기 관리
5. 정보 관리
6. 아동 보호 모니터링

아동 보호 위험에 관한 기준
7. 신체적 위험과 상해
8. 신체-정서적 학대
9. 성 및 젠더기반폭력(SGBV)
10.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통
11.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
12. 아동 노동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적절한 치료 개발을 위한 기준
14.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회생태학적 접근법 적용
15. 아동의 웰빙을 위한 그룹 활동
16. 가족 및 돌봄 환경 강화
17.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법
18. 사례 관리
19. 대인적 돌봄
20. 아동을 위한 정의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기준
21. 식량안보와 아동 보호
22. 생계와 아동 보호
23. 교육과 아동 보호
24. 보건과 아동 보호
25. 영양과 아동 보호
26. 군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ASH)과 아동 보호
27. 웰터, 정착지와 아동 보호
28. 캠프 관리와 아동 보호

###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의 회복력 강화

###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 권리 행사에 대한 지원

### 아동의 안전

### 리차터널